

연구보고 R450 / 2002. 12.

벤처농기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 동 필 연 구 위 원
김 중 선 전문연구원
전 일 송 2급 관리원

연구담당

이 동 필	연구위원	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6장, 제7장 집필
김 중 선	전문연구원	자료분석, 제3장, 제4장, 제5장 집필
전 일 송	2급관리원	자료수집

머 리 말

벤처농기업의 육성은 농업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다양한 2·3차 산업의 개발을 통해 농업의 효율성 제고와 부가가치 증대, 그리고 농외소득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의 벤처농업은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대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농산물의 가공·유통, 농용 자재 등 농업관련산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관련정책, 그리고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벤처농기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된 우리 농업에 있어서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농업관련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분명 새로운 희망이자 도전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을 전문경영체 형태의 지식산업으로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벤처농기업이 무엇이고, 우리 농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벤처농기업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200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정책 대상을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차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벤처농기업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농업관련산업의 전 분야를 포함하며, 창업초기에 있는 신생(新生)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되 농가나 농업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과 기타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벤처농기업은 사업형태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증 받은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유형 I)과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유형 II), 그리고 기업체가 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벤처농업(유형 III)의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482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입지, 기술인력, 조세, 판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유사 지원정책이 중복 추진되고, 시책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지출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IT, BT산업, 신소재개발 등 첨단기술개발분야에 치중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서울과 수도권, 기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농기업 분야의 창업희망자가 기술경영지도나 창업 관련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업부문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부는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1998)과 농업투자전문조합결성(2001) 등 별도의 사업을 유형(I)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목표나, 정책대상, 그리고 정책수단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02년 6월 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10,182개 중 농업의 범위를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관련산업분야로 확대할 경우 304개(3.0%) 업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나타나듯이 농업관련산업 분야가 벤처기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관련산업의 벤처기업들은 IMF 이후 창업한 업체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21.7%, 읍·면 지역 39.5% 등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이 연구에서 벤처농기업체의 경영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계획단계》의 경우 창업관련정보와 기업경영전문지식 부족을,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 창업자금조달, 판매망구축 등의 어려움을, 그리고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부족과 판로확대 문제, 지나친 행정규제 등을 당면문제로 들고 있다.

벤처농기업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농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농정차원의 정책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형(I)에 대해서는 신지식농업인 지정,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한 연구개발, 창업보육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유형(II)에 대해서는 벤처농기업체로 인증하여 농정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부담이 큰 신규창업업체 등 벤처농기업은 창업단계별로 당면한 문제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책수단이 달라져야 한다. 즉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기술 및 경영능력 훈련을 하고,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설비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며,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확보 및 시장정보제공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방안으로는 ① 아이디어의 발굴과 구체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② 사업자를 벤처기업가 정신을 갖춘 전문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③ 창업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④ 농촌지역의 특징을 살린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창업보육사업의 확대, ⑤ 벤처농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⑥ 자금과 판로부족 등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및 기존의 농정차원의 유사사업과 연계성 강화, 그리고 ⑦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농업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관련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벤처농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그 의미

1. 벤처기업육성의 필요성 8
2.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유형 10
3. 벤처농기업 육성의 의미 19

제3장 벤처농기업의 실태

1. 벤처농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체계 30
2.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현황 31
3. 벤처농기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40

제4장 벤처농기업의 성공요인 및 애로사항 분석

1. 벤처농기업의 종류와 성격 68
2. 벤처농기업의 성공요인 72
3. 벤처농기업의 애로사항 80

제5장 벤처농기업 관련제도 및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

1. 벤처기업 관련제도 및 정책 87
2. 농림부의 벤처농기업 육성사업 99

3. 벤처농기업 관련 정책의 문제	115
제6장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방안	
1. 벤처농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22
2. 벤처농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28
3. 벤처농기업 활성화 방안	132
제7장 요약 및 결론	146
부 록	
부록 1. 농림부의 벤처농업 유사사업 지원요건	153
부록 2. 벤처농업 사례업체 내역	162
부록 3. 벤처창업 절차 및 벤처기업확인 방법	165
부록 4. 농산업관련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현황	182
ABSTRACT	184
참고문헌	188

표 목 차

제2장

표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기준 ..	11
표 2-2. 신지식농업인의 사업유형별 사례	15
표 2-3. 매일경제신문이 소개한 벤처농업의 사례	17
표 2-4. 벤처농(기)업의 개념구분에 따른 대상과 성격	18
표 2-5. 농가소득의 구성과 변화추세	20
표 2-6. 한국·일본·대만의 농외소득 비중	22
표 2-7. 경지규모 및 경영주 연령별 농가분포	24

제3장

표 3-1.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중소기업청)	32
표 3-2. 농업관련산업분야 벤처기업의 업종별 실태	33
표 3-3. 농업관련산업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시기	35
표 3-4.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확인유형	36
표 3-5.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지역별 분포	38
표 3-6. 농업관련산업 및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 특성 비교 ..	39
표 3-7. 벤처농기업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업체 수	40
표 3-8. 조사대상 벤처농기업체의 일반적인 특성	42
표 3-9. 업종별, 소재지별 창업자본금 현황	44
표 3-10. 업종별 업체형태	44
표 3-11. 벤처농기업의 업종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45
표 3-12. 벤처농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45

표 3-13. 연구개발투자비용별 경영성과	46
표 3-14. 업종별 경영성과	47
표 3-15. 설립연도별 및 벤처기업 인증여부별 경영성과	47
표 3-16. 창업자의 창업당시 연령 및 학력분포	48
표 3-17. 연령별 벤처농기업 창업자의 특성 비교	49
표 3-18. 학력별 벤처농기업 창업자의 특성 비교	50
표 3-19. 업종별 벤처농기업의 경쟁전략	51
표 3-20. 소재지별 벤처농기업의 경쟁전략	52
표 3-21. 매출액별 벤처농기업의 경쟁전략	53
표 3-22. 업종별 벤처농기업의 자금동원능력 및 기술력	54
표 3-23. 소재지별 벤처농기업의 자금동원능력 및 기술력	55
표 3-24. 매출액별 벤처농기업의 자금동원능력	56
표 3-25. 매출액 규모별 벤처농기업의 특성 차이	57
표 3-26. 소재지별 벤처농기업의 특성 차이	57
표 3-27. 사업계획 수립단계의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	60
표 3-28. 벤처농기업이 사업계획수립 시 정보수집방법	61
표 3-29. 창업단계의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	62
표 3-30. 벤처농기업의 창업자금 조달방법	63
표 3-31. 벤처농기업의 기업활동에 따른 당면문제	64
표 3-32. 벤처농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수혜 여부	65
표 3-33. 벤처농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 여부	66
표 3-34. 정부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문제점	67

제4장

표 4-1. 벤처농기업의 유형별 성공 사례분석 대상	73
표 4-2. 한아름농장의 창업 성공요인	75
표 4-3. e-사이버팜의 성공요인	77

표 4-4. 장생도라지의 성공요인	79
--------------------------	----

제5장

표 5-1.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중소기업청)	89
표 5-2.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실적	90
표 5-3.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현황	91
표 5-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창업투자조합 출자 실적 ..	93
표 5-5. 정부부처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2002년)	94
표 5-6.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	94
표 5-7.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96
표 5-8.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배정 현황	97
표 5-9.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99
표 5-10.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101
표 5-11.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지원실적	101
표 5-12. 농업전문투자조합 구성 현황	102
표 5-13. 농업전문투자조합 투자대상분야	103
표 5-14. 농업관련 창업보육센터 현황	105
표 5-15. 농업벤처투자박람회 참가업체 현황	106
표 5-16.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참가 아이템	107
표 5-17. 농림부의 농기업육성 관련사업 추진실태	109
표 5-18. 연도 및 연령별 귀농 실태	111
표 5-19. 농업법인사업체의 운영실태	113
표 5-20.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과 평가분야	116
표 5-21. 연도별·권역별 창업보육센터 지정 현황(중소기업청) ..	117
표 5-22. 다산벤처의 업종별 투자실적(2001년 9월말)	118
표 5-23.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 활용실적(2002년 4월 기준) ..	119

제6장

표 6-1. 벤처농기업의 창업단계별 당면문제	124
표 6-2. 벤처농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126
표 6-3. 벤처농기업체의 사업주체 및 새로운 사업영역	129
표 6-4. 관련기관의 벤처창업교실 운영 현황	137
표 6-5. 농림부의 주요 농업관련산업 지원 시책	141

그 립 목 차

제2장

- 그림 2-1. 현대농업에 있어서 농업관련산업의 연계성 26
- 그림 2-2.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발전전략 28

제3장

- 그림 3-1. 벤처농기업 실태분석 체계 30
- 그림 3-2. 벤처농기업의 성장·발전단계 진입시기 43
- 그림 3-3. 벤처농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 59

제4장

- 그림 4-1. e-사이버팜의 사업개요도 76

제5장

- 그림 5-1. 벤처기업관련제도와 주요 지원정책 88

제6장

- 그림 6-1. 벤처기업, 벤처농기업 및 신지식농업인의 관계 130
- 그림 6-2. 벤처농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틀 133
- 그림 6-3. 한산모시를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화 사례 .. 13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벤처농업 또는 벤처농기업이란 무엇이며, 벤처기업과는 어떻게 다른가? 벤처농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무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벤처농업의 육성이 우리나라 농업발전이나 농가경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벤처농업의 활성화가 한국농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벤처농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일까?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창의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 및 보육이 한국경제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대책으로써, 그리고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벤처기업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으로, 정부는 1997년 8

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482호)’을 제정하고 다양한 벤처기업육성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구조개선과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농가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간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농가경제와 농촌지역사회를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8년 말에는 전통적인 농업분야에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정보 및 기술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생산비를 절감하는 ‘신지식농업인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벤처농업’은 “농업분야에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해 보자”는 취지 하에 신지식농업인 등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2001년 말에서야 농림부에 의해 정책사업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벤처농업의 활성화는 농업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가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벤처농업은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농업생산, 가공 및 유통은 물론 종자·비료·농약·농기계·기타 농용자재 등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의 총체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이용형 전통농업을 기술과 자본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분야에서 벤처기업이 가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벤처기업에 대한 개념은 그 구분이 모호하고 정책대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농업관련산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지원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더구나 정책지

원 대상이 IT(information technology) 및 BT(bio-technology)산업, 신소재 개발 등 첨단기술개발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서 농산물·식품가공·농용자재 등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사업들은 벤처기업의 정책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탈 지원·각종 세제 혜택 등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농림부에서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과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한 기술개발지원, 그리고 벤처농업창업보육사업지원 등 벤처농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농업의 개념이나 정책목표, 사업범위와 수단 등 농정차원에서 종합적인 벤처농업육성정책이 없이 시장질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농업은 자연에 의존도가 높고, 투자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어 그 동안 대부분의 농림사업에 저리융자나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벤처농업육성정책에서는 이를 벤처투자자로 대체한다고 할 경우 과연 얼마만한 투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창업보육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서 농업관련산업분야 벤처기업 창업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 볼 때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벤처농업 또는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국내·외 관련정책, 그리고 벤처농기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벤처농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벤처농업 및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과 정책

대상을 정립하고, 벤처농기업육성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중소기업청·농림부 등 정부부처의 벤처농기업 관련제도와 정책의 추진실태 및 문제를 파악하고, 셋째, 벤처농기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기존문헌이나 통계자료 등 2차 자료를 통한 분석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국내외 벤처관련 제도 및 정책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특히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농기업체 실태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벤처기업 현황자료(www.venture.net)’ 중에서 농업관련산업분야를 재분류하고, 일반업체와 비교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책대상으로서 벤처농기업이 가진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 조사한 ‘벤처농기업의 실태’에는 실제 농업관련산업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업체나 농업계에서 흔히들 ‘벤처농업’이라고 부르는 업체의 상당부분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와 ‘벤처농업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업체를 사례조사하여 창업과정의 애로사항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먼저, 농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농업관련산업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980년대 이후 개방농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동안 이중곡가제(二重穀價制) 실시 등 쌀값지지정책을 통한 소득증대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소득원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1983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법률 제3689호)’의 제정으로 농공단지와 농어촌특산단지, 농산물가공사업, 그리고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¹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이나 사업의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이거나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거나 농업관련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농기업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종자·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자재산업과 농산물가공,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물류센터 등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벤처농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면서 벤처기업의 특성이나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장우 등(1998)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이나 성장조건 등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박수철(2000)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영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배광선 등(1999)과 백낙기 등(1999)은 중소·벤처기업의 발전비전이나 육성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주현 등(2001)은 지방

¹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년사(1999. 12)’ 참조.

벤처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주현(2002)은 현실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정책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 ‘벤처농업’이 농업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각종 벤처농업관련 포럼이나 언론 등에서 벤처농업에 대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김경덕 등(1998)과 정기환(2000)의 연구, 벤처농업포럼(2000)에서는 각기 ‘벤처농업’의 개념을 제시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나 법령 등과 연계하여 제도를 정비하거나 구체적인 벤처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계라 하겠다. 김경덕 등, 벤처농업포럼, 민승규(2000)는 벤처농업의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벤처농업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한 부분, 또는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벤처농업의 개념과 대상이 불분명하여, 중소기업청의 기존 통계자료를 통해 벤처농업의 규모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² 농수축산신문(2000)의 벤처농업설명회, 벤처농업포럼, 매일경제신문(2001) 등에 사례로 소개된 벤처농업은 업종·사업주체·사업규모·사업형태 등 선정기준이 없어 이들이 주장하는 벤처농업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이동필 등(2001)은 농업부문에서 지식기반사회구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통농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농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의 개념과 범위를 ‘농업관련산업’ 또는 ‘농기업’

² 중소기업청에서는 1999년부터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전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³ 구체적으로 벤처농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벤처농기업은 이제 막 농정차원의 정책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자나 정책입안자, 혹은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마다 각기 나름대로 상이한 정책목표와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분야의 연구가 규명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³ 이동필 외, 『농업, 가축 및 농용시설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정비 방안』, 2001. 참조.

제 2 장

벤처농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그 의미

벤처농기업이란 무엇이며, 벤처기업 또는 벤처농업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왜 벤처농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들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먼저 일반적인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에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정책적 의미를 논의해 보았다.

1.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

벤처기업육성의 필요성은 벤처기업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벤처기업은 흔히 “신기술 또는 경영의 노하우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고위험 - 고수익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신생기업”으로 정의되는데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신규창업의 개념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벤처기업의 육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첫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란 측면이다. 즉 중화학공

업위주의 산업구조를 지식·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소규모 기업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은 지식과 기술을 무기로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기능 활성화로 투자위주의 선진금융시장을 형성하고, 탄력성 있는 기업조직과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하여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둘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역동적인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이자 21세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차세대 산업군으로 3C(computer, communication, control)와 3S(system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service engineering) 등 최근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 분야를 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형 벤처기업의 창업은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생활양식을 확산해야 하는 바 벤처기업은 지식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를 통해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벤처기업의 가장 큰 속성인 ‘도전과 혁신’ 정신의 발현으로 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제공하는데, 특히 청년세대에게 성공을 위한 미래의 비전과 꿈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IMF 이후 암울했던 우리 경제에 돌파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넷째, 지식과 정보를 중시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벤처기업의 성장거점으로 지방

대학·연구소와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이 상호 연계된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유형

벤처농업 또는 벤처농기업이란 무엇인가? 벤처농업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그 모태가 되는 벤처기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흔히 ‘벤처(venture)기업’이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이 투자하는 기업으로 신기술 또는 경영의 노하우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이라고 정의된다(김경덕 외 1998, 5). 하지만 개인 또는 국가에 따라 고위험·고수익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투자인 벤처캐피탈을 강조하는가 하면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고,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등 관점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⁴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서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즉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표 2-1>의 기준에 해당하는 ① 벤처캐피탈투자기업, ② 연구개발투자기업, ③ 신기술개발기업, ④ 기술평

⁴ 미국은 Venture Business를 “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을 특징으로 하는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이 투자한 기업”으로, 일본(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은 “창업후 5년 이내(제조업, 인쇄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업)특정 중소기업자로 전년도 R&D비율이 매출액의 3%를 초과하는 업체”를, 대만(청년창업보조법)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제조업분야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각기 정의

표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창업후 7년 이내에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다산벤처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총액이 -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 -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10%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5%~10%로 차등, 농업은 기타로 5%) 정한 비율 이상인 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 특허권·실용신안권(출원중인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서)에 의해 생산된 제품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신기술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 또는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이전 받은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 대비 25%이상인 기업
기술평가 기업	• 평가기관이 기술성이나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 - 창업중인 기업이거나 자체개발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의장권(출원중인 기술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것 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 - 권리, 신기술, 지식 등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3호의 신기술개발기업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가 기업을 포함하는데 대체로 벤처캐피탈의 투자 여부와 새로운 기술력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벤처기업정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킨 업체로써 <표 2-1>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 중의 한 가지 기준에 적합한 벤처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의 인증 시 음식·숙박업 등⁵ 몇몇 업종을

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5조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업종 등 사치향락을 조장하거나 비생산적인 업종'을 벤처기업의

제외하고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이나 농업관련산업도 당연히 벤처기업의 인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02년 6월 현재 27개 업체가 농림어업 및 광업분야에서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중소기업청, 벤처넷, 2002).

이와는 달리 1990년대 말 우리나라를 휩쓴 벤처기업 열풍의 영향으로 농업계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움직임을 ‘벤처농업’이란 용어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벤처기업 중 농림업분야’와는 다른 소위 ‘전통농업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 강조된 것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개념과 대상범위가 모호하고, ‘신지식농업인’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⁶

‘벤처농업’이란 용어는 1997년 ‘새농민 10월호(황의식)’와 이듬해 농민신문사에서 발간한 ‘틈새농업과 벤처농업(김양식)’, 그리고 ‘벤처농업포럼(민승규)’ 등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다가 2001년부터 농림부에 의해 정책대상으로 채택되었다. 당초 이 개념은 ‘농업부문의 벤처기업(농경과원에 1997; 김정덕 외 1998)’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0년에는 김양식, 김재호, 민승규 등에 의해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위, 벤처농업’이란 개념으로⁷ 발전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⁶ 농림부는 ‘신지식농업인’을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개선·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정의하고있음(농림부,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 2001.4)

⁷ 김양식(2000)에 의하면 “벤처농업이란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재호(2000)는 벤처농업을 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농업, ② 새로운 아이디어로 색다른 분야

하였다. 농림부의 경우 2001년까지는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이란 의미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으나,⁸ 그 후 2002년 초부터는 ‘벤처농업’이란 확장된 개념, 즉 기업성은 다소 완화된 반면 사업의 범위를 넓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농림부(2002)는 벤처농업을 “기존의 관행적인 농업형태와는 달리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가공·농기계와 농용자재류·유용유전자원의 생산·농업 및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보서비스업 분야의 사업을 포괄하는 기업 군과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벤처농업의 개념에는 업종이나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농업생산을 포함한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에 종사하는 일체의 사업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나 사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에 도전하는 사업, ③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장래의 성공에 도전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승규(2000)는 농지, 시설 등의 하드기반 위에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을 벤처형 농업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⁸ 이는 1998년부터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벤처형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에 ①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제품기술개발, ② 지속가능농업기술개발, ③ 비용절감형 농업기술개발, ④ 농작업의 생력자동화시스템개발, ⑤ 환경정화용 생물 및 신소재기술개발, ⑥ 생산공정자동화시스템 및 산업화기술개발 등을 포함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한다든지, 2001년 12월 20일 결성한 ‘농업전문투자조합’의 지원대상에 농업분야(생명공학분야, 농업투입재분야, 식품분야, 수의분야)와 기타 바이오분야(의학, 의약분야, 환경생물공학분야, 농산물유통분야, 생물화학공업분야, 생명공학지원사업분야)등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대상으로써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이란 전통농업에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접목한 소위 ‘벤처농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상 농업의 범위에는 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가공, 유통 등 농업관련산업을 포함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벤처농기업’이란 200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창업보육사업의 시작과 함께 이동필 등이 도입한 개념으로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농업’의 개념을 농업관련산업을 포함한 ‘농기업’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벤처농업’에 비해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주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틈새시장을 공략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에서 정의한 ‘벤처농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벤처농기업은 벤처농업을 사업화하는 농기업(사업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벤처농업 관련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농림업 및 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I)과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은 받지 못한 농업관련산업체(II), 그리고 비록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농가(신지식농업인의 개념과 유사함)나 사업자를 포함하는 사전적 의미의 벤처농업(III)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의 개념은 법으로 정의한 ‘벤처기업’에 속하되 단지 업종에 있어서 농림업이나 관련산업분야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II)의 개념은 농업이나 관련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얻는 농가로 아직까지 사업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III)의 개념은 (II)의 단계를 지나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아직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제도적으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지식농업인과 벤처농업(Ⅲ)의 개념은 다르지 않다. 즉 신지식농업인이란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개선·혁신하여 높은

표 2-2. 신지식농업인의 사업유형별 사례

유 형	신 지 식 농 업 인 사 례
새로운 품종의 개발 또는 육종	- 오리엔탈계통 백합구근을 자체 번식한 전재학씨(칠곡) - 20여 년간 500여종의 선인장을 개발한 이동운씨(고양) - 부귀란의 조직배양으로 대량생산한 박태은씨(대전)
재배방법의 개량	- 국내최초로 고추비가림재배한 이종민씨(음성) - 국내최초로 상황버섯을 인공재배한 유충현씨(안동) - 야산에 더덕씨앗을 파종한 조덕상씨(양평) - 20년 이상 된 도라지를 재배한 이성호씨(진주)
새로운 기계나 장치의 고안	- 인삼포에 스프링쿨러 관수시설을 한 이재진씨(영암) - 법씨를 파종하는 기계를 개발한 이진규씨(당진)
새로운 기술개발	- 인삼이 안터지게 찌는 기술을 개발한 송화수씨(진안)
특수사료의 개발 및 이용	- 중금속흡착력이 큰 흑운모편마암을 사료첨가제로 사용하여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는 서정철씨(고성) - 황토를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예방과 육질을 향상하는 류광렬씨(익산)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거래	- 빼에 좋은 홍화씨앗을 전자직거래한 배문렬씨(칠곡) - 주문량만큼 매일 쌀을 도정해 주는 이종우씨(천안)
농산물가공 참여	- 다양한 매실가공품을 생산하는 홍쌍리씨(광양) - 상품성이 낮은 과일로 포도즙과 포도주를 생산한 정창용씨(영동) - 단감식초, 단감잼, 단감술, 단감고추장을 개발한 박동하(창원)
유희자원의 생산적 활용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만든 이상천씨(괴산)

자료: 농림부, 『새 천년을 이끌어 갈 신지식 농업인』(2000.1)에서 재정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어서,⁹ “지식의 활용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벤처농업(Ⅲ)의 개념과 그 성격을 같이하고 있다.¹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지식농업인은 경영주체에 초점을 맞춘 반면 벤처농업(Ⅲ)은 사업형태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신지식농업인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① 농업 생산에 있어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나 육종, 재배방법의 개량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사를 짓는 유형, ② 새로운 기계나 기술 등을 개발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유형, ③ 특수사료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의 개발과 차별적 유통을 하는 유형, ④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거래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유형, 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식품으로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유형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표 2-2>.

이와 같은 신지식농업인을 사업형태란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 벤처농업(Ⅲ)이다. 2002년 매일경제신문이 선정, 소개한 ‘벤처농업’에는 <표 2-3>의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개념적으로는 중소기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은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앞에서 구분한 개념(Ⅱ)의 벤처농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벤처농업, 또는 벤처농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 즉 (Ⅰ)의 범주에 속하는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이 가진 특성(유기적 생산, 토지 및 기후의존, 영세성, 가계

⁹ 농림부,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 2001.4

¹⁰ 이는 신지식농업인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성호씨나 홍쌍리씨의 장생도라지 및 청매실농원이 바로 벤처농업의 성공사례이다.

와 경영의 미 분리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체로 발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농림업 및 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I)으로 등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표 2-3. 매일경제신문이 소개한 벤처농업의 사례

업 체 명	사 업 모 형	비 고
사이버 팜	인터넷으로 농장(쌀, 채소)분양 - 안전농산물직거래 및 체험학습 기회	사업추진중
풍년 농산	저농약쌀과 기능성쌀 전자직거래 - IT와 BT(이온쌀)접목	자본금 6억3천만원, 매출액 156억원
본 정	용기에 담은 인삼초콜릿 개발·판매	자본금 5억원
장생도라지	20년 이상 도라지 가공제품 생산·판매 - 생약제, 한방차 등 가공제품	종업원 23명, 매출액 35억원
가야곡왕주	전통민속주 생산·판매	1990년 착수, 매출액 50억원
꽃샘종합식품	별꼴을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판매 - 36년간 양봉	1986년 착수, 매출액 52억원
(주)대관령	산송이 생산·판매 - 혼시메지버섯에 자연송이를 접종	석탄산업지원자금 35억원 수혜
월출 농원	자연농법으로 생산한 배 판매	1995년 착수, 농민 30명 공동참여
통영 관상 조류농원	조류사육 및 임대·관리업	매출액 2억원
한우리영농 조 합	팽이버섯 생산·판매 - 액체종균재배법 개발	매출액 21억원
정우 농장	돼지 사육 및 판매	1968년 사업착수, 매출출 30억원
세림 현미	현미식용유 생산·판매	1996년 사업인수, 매출액 47억원
e - 고향	고향포털사이트(사이버커뮤니티) 구축	농림수산정보센터
진주상황버섯	상황버섯 생산·판매(공중재배법개발)	

자료: 매일경제, “벤처농업 미래가 보인다,” 2001. 10. 31부터 연재.

표 2-4. 벤처농(기)업의 개념구분에 따른 대상과 성격

구 분	벤처농기업(I)	벤처농기업(II)	벤처농업(III)
업 종	애그리비지니스	좌동	좌동
비즈니스모델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	좌동	좌동
사업 주체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사업자등록	등록	등록	미등록
규모·형태	중소기업(주식회사 등)	중소기업(주식회사 등)	개별농가, 영농법인
창업 시기	창업후 3~5년 이상	창업후 3년 내	신규사업
사 례	국순당, 하림, 장생도라지	청매실농원, 본정	고추비가림재배

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벤처농기업에 관해서는 농업 분야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준비하는 농기업체, 그리고 새로운 기술, 지식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벤처기업을 지향하지만 아직도 기업화하지 못한 농가 및 개별사업자의 세 가지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자 등록여부나 기업형태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벤처농기업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개념이 공통으로 내포하고 있는 사실은 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고수익-고부가가치에 도전”한다는 점, ②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농업관련산업의 전 분야를 포함한다는 점, ③ 창업연도나 기업규모에 있어서 창업초기에 있는 신생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되 농가나 영농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④ 사업주체에 있어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 농업인과 기타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벤처농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¹¹

¹¹ 여기서 ‘벤처농기업’이란 사업주체나 업종, 사업규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농림부가 사용하고 있는

하지만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나 비록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업체라도 벤처인증을 받지 못하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회사형태를 갖추지 않고 개인 또는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더구나 정책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벤처농기업의 성격이나 창업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벤처농기업이 있을 수 있으며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점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벤처농기업 육성의 의미

우리 농업에 있어서 벤처농기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벤처농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관련산업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상업적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기업형태의 신규창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농(離農)과 고령화로 급격히 줄어드는 농가를 전문경영체로 대체하고, 농업생산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다양한 관련산업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경제와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벤처농기업 육성의 의미를 농외소득개발,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경영체 양성, 농업관련산업 개발, 그리고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벤처농업’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벤처농기업’이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로 고수익을 높이는 농가는 물론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용어로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1. 다양한 농외사업 및 농외취업 기회창출로 농외소득 개발

벤처농기업에는 농업, 농촌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즉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도전정신 등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림사업에 비해 사업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농가의 겸업, 또는 취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所得源)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그리고 이전수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IMF의 영향과 비농업 부문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모두 정체현상을 보임으로써 2001년 농가소득(23,907천 원)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75%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농업소득의 경우 1995년 10,469천 원에서 2000년에는 11,267천 원으로 미세한 증가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농업소득의 정체는 농업조수

표 2-5. 농가소득의 구성과 변화추세

단위: 천원

연도	농가 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 수입	농외 소득비 (%)	가계비	농가 부채	도시 가구 소득
		계	조수입	경영비	계	겸업 소득	사업외 소득					
1985	5,736	3,699	5,477	1,778	1,060	214	846	977	18.5	4,691	2,024	5,086
1990	11,026	6,264	9,078	2,814	2,841	589	2,252	1,921	25.8	8,227	4,734	11,320
1995	21,803	10,469	16,012	5,543	6,931	1,527	5,404	4,403	31.8	14,782	9,163	22,933
2000	23,072	10,897	19,514	8,617	7,432	1,435	5,997	4,743	32.2	18,003	20,207	28,643
2001	23,907	11,267	20,193	8,927	7,829	1,491	6,886	4,811	32.7	18,458	20,376	31,501

자료: 농림부, 2001 농가경제통계 및 농림업주요통계, 2002.

입에 비해 자재비, 임차료, 수리비 등 경영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결과로 이해된다(농업 조수입 중 경영비의 비중이 1995년의 34.6%에서 2001년에는 44.2%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농외소득은 1995년의 6,931천 원에서 2000년에는 7,432천 원으로 늘어났으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소득의 비중은 여전히 3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구원에 의한 겸업소득은 겨우 20% 내외에 그치고 있다.

농가소득에 비해 가계비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가계비(18,458천 원)가 농가소득의 77.2%까지 늘어남으로써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의 61.0% 밖에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가 별도의 농외소득원(農外所得源)이 없으면 가계를 꾸려 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농가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01년에는 호당 평균 부채가 20,376천 원으로 당해 연도 농가소득의 85.2%에 달하고 있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외에도 농가구원의 취업이나 농업이외의 사업 참여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농외소득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농외소득 비율은 52.8% 수준(이전수입 포함)으로 우리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86.9%)이나 대만(8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외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다. 이와 같이 농외소득률이 낮은 이유는 농촌지역에 비농업 부문의 취업기회가 적거나 아니면 농가구원의 취업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의 근대화과정에서 대도시와 일부 거점지역에 편향된 공업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였으나 일본과 대만은 일찍부터 농촌공업화와 공업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 재촌탈농(在村脫農)과 겸업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가구원의 농외취업이 더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2-6. 한국·일본·대만의 농외소득 비중

단위: %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I	II	I	II	I	II
1970	15.6	24.2	55.6	67.9	51.3	51.3
1980	20.6	34.8	63.7	83.0	70.5	75.1
1990	25.8	43.2	64.7	86.2	71.1	79.9
2000	32.2	52.8	60.1	86.9	63.0	82.4

주: 농외소득의 개념에 I은 이전수입 제외, II는 포함.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1.

2000년의 경우 전업농은 902,149(65.2%)호이고 겸업농은 481,319(34.8%)호로 구성되어 있는데,¹²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농가의 겸업화가 촉진되고 있다. 즉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전업농가 비율은 76.2%에서 65.2%로 감소한 반면, 겸업농가 중 ‘2종 겸업농가’(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미만)는 10.1%에서 18.6%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벤처농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다수의 농가와 농기업이 농산물가공과 유통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관련산업에 취업 또는 겸업형태로 참여함으로써 농외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전통적인 농가를 기업적 마인드를 갖춘 독립된 전문경영체로 양성

우리나라의 농가 수는 1980년의 2,156천 호에서 2000년의 1,384천 호로 연평균 39천 호씩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농가가 영

¹² 이 중 ‘1종겸업농’이 16.2%, ‘2종겸업농’이 18.6%를 차지하고 있다.

리를 추구하는 전문경영체로 보기에 경영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고 경영주가 노령화되어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980년의 1.02ha에서 1990년에는 1.19ha, 2000년에는 1.37ha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이 정도 경영규모에서 얻어지는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업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ha이상 경지를 소유한 농가는 1970년의 37천 호에서 1990년에는 44천 호, 그리고 2000년에는 63천 호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혀 경지가 없거나 1ha미만의 소규모 농경지를 가진 농가가 무려 전체 농가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가 경영주의 32.7%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향후 10년 이내에 이들 고령경영자의 대부분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영체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 참고로 농가의 경영주가 65세미만으로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면서 1ha이상의 농경지를 보유한 농가는 427,177호로 농가의 30.9%에 불과하다. 또한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150,453호로 전체 농가의 10.9%에 불과한데 농가유형별로는 겸업농(兼業農)의 경우 14.6%가 후계자가 있으나 전업농(專業農)은 겨우 8.9%만이 영농후계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머지않아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된다.

농가 경영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졸업이 33,901호, 3년제 이하 대학졸업이 17,420호로 대학졸업자가 전체 경영주의 3.7%에 불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한 경우가 585,813호(42.3%)이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도 280,805호(20.3%)나 되어 교육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³

¹³ 고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은 각기 16.8%와 1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경지규모 및 경영주 연령별 농가분포

단위: 호

연령	경지 없음	0.5ha 미만	0.5 ~ 1.0ha	1.0 ~ 2.0ha	2.0 ~ 3.0ha	3.0 ~ 5.0ha	5.0ha 이상	계
25세 미만	33	338	189	177	65	35	17	855
25~49세	7,251	92,223	76,685	79,289	34,765	25,625	12,560	328,398
50~64세	5,009	161,357	161,447	175,781	60,179	29,312	9,372	602,457
65~69세	943	76,040	70,926	59,292	12,673	4,130	1,091	225,095
70세 이상	933	110,647	69,408	36,995	6,108	1,966	606	226,663
합 계	14,170	440,605	378,655	351,534	113,790	61,068	23,646	1,383,468

자료: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전국편, 2002. 3.

이와 같이 각종 영농의사를 결정하는 경영주들의 낮은 교육수준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수용이나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전통농업을 지식산업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가의 상당부분이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주가 고령화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가 생계 유지형 농업을 하고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된 전문경영체, 또는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농가)가 대부분이다.

농축산물판매액 규모별로 농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혀 판매를 하지 않거나 연간 100만원 미만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농가가 304,880 호로 전체 농가의 22.0%를 차지하고 있다. 채소·특작·논벼 재배농가 중 연간 100만 원 미만의 판매를 하는 농가가 각기 25.5%, 21.5%, 20.3%를 차지하여 이들 품목은 대체로 자급형 농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훼와 축산의 경우 1억 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이 각기

3.3% 및 6.9%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품목에 있어서 상업적 영농을 하는 농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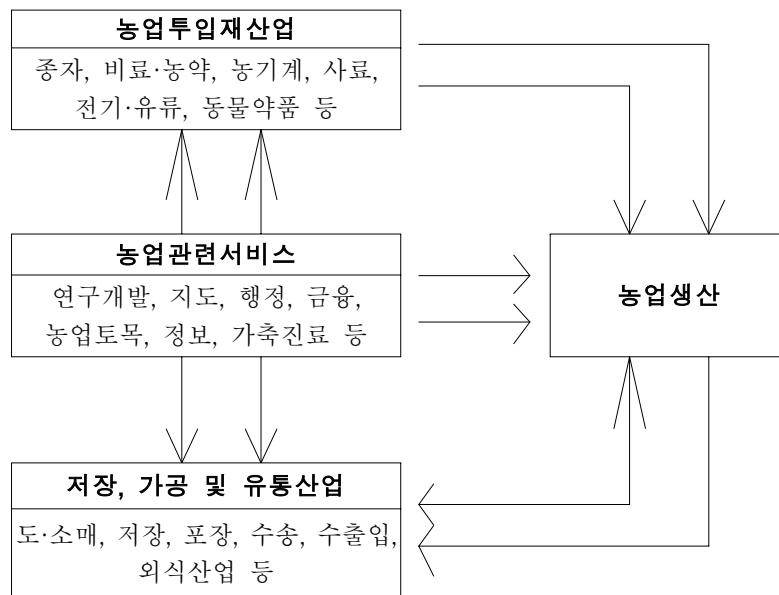
기존의 전통적 농가를 독립된 전문경영체로 대체, 또는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여 틈새시장에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벤처농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벤처농기업을 통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

‘농기업’이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은 ‘농업’을 가축이나 농작물의 생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생산을 포함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수출입은 물론 비료·농약·농기계·사료·종자 등 농자재산업까지 포함한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농업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작물생산업과 축산업, 임업에 대한 정의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법에서 규정한 ‘관련산업’을 배제하고 있어서 농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여 전통농업은 농업생산(1차 산업)과 농산물유통(2차 산업), 그리고 농산물유통 및 관광농업 등 (3차 산업)을 결합한 종합문화산업(6차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가의 개념을 확장하여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농용자재의 생산 및 유통은 물론 농산물가공·유통·수출입·외식산업·관광 및 서비스업까지 포함한 농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일체의 농업관련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과 범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⁴

그림 2-1. 현대농업에 있어서 농업관련산업의 연계성



자료: 이동필,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997.

농업을 단순한 농작물 생산업에서 일체의 ‘농업관련산업’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림 2-1>과 같이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생산업은 물론 농업투입재산업, 농업관련서비스업, 저장·가공 및 유통산업 상호 간의 전·후방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 중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 농업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통합시스템을 통해 최종소비자들의 요구를 생산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만들어진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¹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농업, 가축 및 농용시설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방안(이동필 외, 200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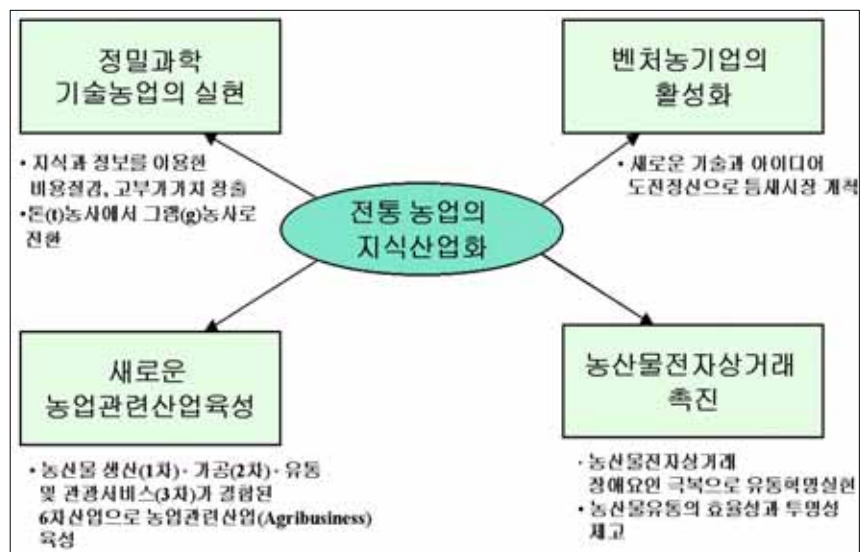
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소위 '고객 지향적 생산'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집, 저장, 가공, 도·소매 등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포된 경영주체간에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vertical & horizontal integration)에 의한 위험분산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된다.

3.4.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벤처농기업은 그동안의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양적인 구조개선'에 머물게 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자재-생산-가공-유통-소비까지의 농업관련산업 전반에 걸쳐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소위 '질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증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의 물량위주의 '톤(t)농사'에서 품질 및 가치위주의 고부가가치 '그램(g)농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전략적 경쟁요소인 만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존의 외연적 경영규모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정보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위,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가 필요하다.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해서는 <그림 2-2>와 같이 먼저 종자나 사료, 농약을 개량하거나 재배방법이나 사육방법을 개선하고, 가공이나 유통방법을 바꾸는 등 소위 IT(information technology)와 BT(bio technology) 등 정밀과학기술을 농업의 생산 및 유통과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농업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상공간이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기반의 확충에 따른 농산물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도전정신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벤처농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림 2-2.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발전전략



자료: 이동필,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벤처농업 특강자료집, 2002.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는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제 3 장

벤처농기업의 실태

벤처농기업의 실태는 어떠한가? 벤처농기업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개념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농기업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유형(I)과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일반 중소기업 유형(II),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벤처농업 유형(III)이 혼재되어 있다. 더구나 창업단계로 볼 때 특정한 사업형태가 없이 아직까지 창업준비를 하는 개인 또는 농가도 정책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여기서는 중소기업청의 인증을 받은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2차 자료를 분석하고, 벤처농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에는 농업관련산업분야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는 물론 장차 벤처농기업으로 발전할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중소기업과 신지식농업인, 그리고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업체들을 포함하였다.

1. 벤처농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체계

벤처농기업에 대한 실태, 특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 형태의 벤처농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을 택하였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벤처농기업 실태분석 체계

구 분	대 상	분석방법	분석내용
농업관련 벤처기업 현황분석	중소기업청 인증 벤처기업 중 농림업 및 농업관련 산업 벤처기업(I)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현황자료 분석 (venture net, 2002.6)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현황 분석(3장 2절)
벤처농기업 체 실태와 문제 분석	벤처인증기업(I)	42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벤처농기업의 특성 및 발전단계별 문제점 분석 (3장 3절)
	벤처농기업(II) 일반적인 벤처농업(III)	농경연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사례분석	창업 및 사업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분석 (4장 3절)
성공사례 분석	벤처농기업 (I, II, III)	농림부, 각종 심포지엄, 매일경제신문 등의 성공사례업체	사례 및 성공요인 (경영전략 등) 분석(4장 2절)

우선 제3장 2절에서는 중소기업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 중 농업생산 및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실태와 이들이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에 비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2차 자료로 벤처농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3장 3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벤처농기업체 42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경영특성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¹⁵

벤처농기업의 애로사항과 성공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제4장 2절에서는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에 참가한 업체와 매일경제신문, 각종 심포지엄 등에서 성공한 사례로 알려진 업체를 대상으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경영전략 등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4장 3절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사례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2.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현황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벤처기업현황(2002년 6월말 기준)’에 의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10,182개 업체 중 제조업 분야와 정보처리 및 S/W 분야는 각각 63.0%와 29.7%를 차지하는 반면, 농림어업 및 광업 분야의 벤처기업은 불과 0.2%(27개 업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¹⁵ 벤처기업에 관한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극복하기 위해 개념적으로 벤처농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응답률이 저조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표 3-1.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중소기업청)

단위: 업체수, %

연 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 소매업	농·어·임 광 업	기타	계
2002. 6	6,391 (63.0)	3,026 (29.7)	319 (3.0)	193 (2.0)	112 (1.0)	27 (0.2)	114 (1.0)	10,182 (100.0)
2001. 12	6,889 (60.5)	3,715 (32.6)	333 (2.9)	206 (1.8)	116 (1.0)	28 (0.3)	105 (0.9)	11,392 (100.0)
2000. 11	5,798 (62.1)	3,033 (32.5)	204 (2.2)	146 (1.6)	74 (0.8)	32 (0.3)	44 (0.5)	9,331 (100.0)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넷(www.venture.net), 벤처기업현황, 각 연도.

이러한 현상은 ‘벤처기업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모험적인 신생기업’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을 평가 선정하고 있어서,¹⁶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시장이 협소한 농림어업분야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부록Ⅲ - 벤처기업확인방법 참조).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벤처기업의 업종을 구분하면서 농업분야에 농업생산만 포함하여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활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벤처인증기업 중에서 농업생산분야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의 전·후방산업인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분야의 벤처기업을 재분류하여 창업시기, 벤처기업 확인방법, 지역분포 등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에 비해 달리 갖게 되는 특성을 파악하였

¹⁶ 중소기업청의 ‘200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결과(2001.8)’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60.3%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57.9%가 10억 원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벤처인증업체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하여 실태파악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2.1.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분류

중소기업청의 벤처인증기업 10,182개 업체(2002년 6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농림기술분류체계(농림기술관리센터, 2002)를 근거로 구분한 결과 <표 3-2>와 같이 304개(3.0%) 업체를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으로 재분류하였다.¹⁷

표 3-2. 농업관련산업분야 벤처기업의 업종별 실태

단위: 업체수, %

연 도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업종										전 체 벤처기업
	식품 가공	농기 계농 자재	환 경	생명 공학	유통	종자 종묘	임산 가공	경영 정보	기타	계	
2002년	121 (39.8)	51 (16.8)	51 (16.8)	50 (16.4)	11 (3.6)	8 (2.6)	6 (2.0)	4 (1.3)	2 (0.7)	304 (100.0)	10,182
2000년*	38 (25.3)	76 (50.7)	5 (3.3)	13 (8.7)	1 (0.7)	3 (2.0)	12 (8.0)	2 (1.3)	-	150 (100.0)	4,832

* 2000년의 경우 (정기환, 2000)의 연구결과임.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넷(www.venture.net), 벤처기업 명단』, 2002. 6.

¹⁷ 농업관련산업을 ① 식품가공 : 김치, 과일즙, 주스 등 음식료와 기능성 식품, ② 농기계·농자재 : 곡물건조기, 원예축산자재 등, ③ 생명공학 : 생물농약 등 미생물제제, 미생물종균류 등 배양체, 조직배양, 유전자조작 등, ④ 환경 : 비료, 사료, 환경정화제 등, ⑤ 유통 :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교역, ⑥ 종자·종묘 :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 ⑦ 임산가공 : 합성목제품, 목제타일, 숯 등, ⑧ 경영정보 : 농업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 컨설팅 등, ⑨ 기타 : 교육용, 실험용 곤충 및 동물생산 등으로 분류(정기환, 2000.4의 분류체계 참조)

이 결과를 2000년의 선행연구(정기환 2000)와 비교해 보면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체 수는 150개에서 304개로 2년 동안 2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벤처기업의 양적 팽창으로 농업관련산업체의 비중은 각각 3.0%, 3.1%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품가공분야(39.8%), 환경분야(16.8%), 생명공학분야(16.4%)의 벤처기업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식생활에 대한 소비패턴이 다양화, 고급화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져 이들 분야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식품가공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농가나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개발 결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쉽게 사업화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2.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시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1980년대 후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코스닥시장이 개설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8.27)’이 제정되면서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기업환경,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자금조달의 원활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성공사례, 그리고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벤처기업의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¹⁸

이러한 사실은 <표 3-3>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2001.8) 전체 벤처기업체의 14.0%가 1990년 이전에 창업되었으며, 53.5%가 1998년 이후에 창업된 것으로 나타났다.

¹⁸ 이동필,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경북 벤처농업특강자료집, 2002. 4. 8.

표 3-3. 농업관련산업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시기

단위: 업체수, %

창업시기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업종										전체 벤처기업 주
	식품 가공	농기계, 농자재	생명 공학	환경	유통	종자, 종묘	임산 가공	경영 정보	기 타	계	
1990년 이전	6 (5.0)	6 (11.8)	1 (2.0)	2 (3.9)	0 (0.0)	0 (0.0)	0 (0.0)	0 (0.0)	0 (0.0)	15 (4.9)	1,078 (14.0)
1990~1997	29 (24.0)	11 (21.6)	3 (6.0)	9 (17.6)	3 (27.3)	2 (25.0)	3 (50.0)	0 (0.0)	1 (50.0)	61 (20.1)	2,518 (32.5)
1998~2002	86 (71.1)	34 (66.7)	46 (92.0)	40 (78.4)	8 (72.7)	6 (75.0)	3 (50.0)	4 (100.0)	1 (50.0)	228 (75.0)	4,144 (53.5)
합 계	121 (100.0)	51 (100.0)	50 (100.0)	51 (100.0)	11 (100.0)	8 (100.0)	6 (100.0)	4 (100.0)	2 (100.0)	304 (100.0)	7,740 (100.0)

주: '전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2001.8) 조사결과 벤처기업 수입.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벤처기업에 비해 최근에 창업된 업체의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즉,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75%가 1998년 이후에 창업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 이르러 이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분야별로 창업시기를 보면, 생명공학분야 및 환경분야 업체의 92% 및 78.4%가 1998년 이후에 창업되었으며, 농업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이나 컨설팅을 담당하는 경영정보분야 업체의 경우 모두 최근에 창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투자,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분야의 창업열기가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3.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벤처기업 확인유형

벤처기업의 확인유형을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으로 구분한 결과,¹⁹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과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의 50% 이상이 '기술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13개의 기술평가기관에 의해 기술성이나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평가기관 중에는 농업관련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농업관련기관이 제외되어 있어,²⁰ 이 분야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다.

표 3-4.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확인유형

단위: 업체수, %

유 형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업종										타산업 벤처기업 주
	식품 가공	농기계, 농자재	생명 공학	환경	유통	종자, 종묘	임산 가공	경영 정보	기타	계	
연구개발 투자기업	3 (2.5)	1 (2.0)	5 (10.0)	2 (3.9)	1 (9.1)	0 (0.0)	0 (0.0)	0 (0.0)	0 (0.0)	12 (3.9)	1,253 (12.7)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10 (8.3)	0 (0.0)	7 (14.0)	8 (15.7)	5 (45.5)	2 (25.0)	0 (0.0)	0 (0.0)	0 (0.0)	32 (10.5)	1,269 (12.8)
신기술 개발기업	34 (28.1)	41 (80.4)	2 (4.0)	21 (41.2)	1 (9.1)	2 (25.0)	5 (83.3)	0 (0.0)	0 (0.0)	106 (34.9)	2,224 (22.5)
기술평가 기업	74 (61.2)	9 (17.6)	36 (72.0)	20 (39.2)	4 (36.4)	4 (50.0)	1 (16.7)	4 (100.0)	2 (100.0)	154 (50.7)	5,132 (52.0)
합 계	121 (100.0)	51 (100.0)	50 (100.0)	51 (100.0)	11 (100.0)	8 (100.0)	6 (100.0)	4 (100.0)	2 (100.0)	304 (100.0)	9,878 (100.0)

주: 타 산업 벤처기업 수는 전체 벤처기업 10,182업체(2002년 6월말기준) 중 농업관련산업업체를 제외한 수임.

¹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증하는 4가지 유형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2-1> 참조.

²⁰ 2002년 6월 현재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3개나 되지만 농업분야의 평가기관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농업분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토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허나 실용신안권 등에 의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50% 이상)이나 수출액의 비중(25% 이상)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신기술개발기업’의 경우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34.9%)이 타 산업분야 벤처기업(22.5%)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농업관련산업분야(특히 농기계·농자재, 환경, 임산가공, 식품가공분야)가 타 산업분야에 비해 특허 등 신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가능영역이 넓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이 ‘연구개발투자기업’이나 ‘벤처캐피탈투자기업’으로 확인된 것은 각각 3.9%와 10.5%로 타 산업분야의 12.7% 및 12.8%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농업관련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부진하며, 특히 농업관련산업분야가 벤처캐피탈 투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지역분포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보다 농촌지역(읍·면 지역)에 많이 분포(39.5%)되어 있다. 특히 식품가공분야나 농기계·농자재분야, 임산가공 분야의 경우 각각 47.9%, 47.1%, 83.3%의 업체가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산업분야 벤처기업의 경우 73.6%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은 오히려 58.2%가 비수도권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체는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나 전문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3-5.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지역별 분포

단위: 업체수, %

지역구분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업종									타 산업 벤처기업 ^주
		식품 가공	농기계, 농자재	생명 공학	환경	유통	종자, 종묘	임산 가공	경영 정보	계	
구 분 별	대도시 (광역시)	39 (32.2)	17 (33.3)	24 (48.0)	22 (43.1)	9 (81.8)	3 (37.5)	1 (16.7)	2 (50.0)	118 (38.8)	-
	중소도시	24 (19.8)	10 (19.6)	15 (30.0)	12 (23.5)	0 (0.0)	2 (25.0)	0 (0.0)	2 (50.0)	66 (21.7)	-
	읍면 (농촌지역)	58 (47.9)	24 (47.1)	11 (22.0)	17 (33.3)	2 (18.2)	3 (37.5)	5 (83.3)	0 (0.0)	120 (39.5)	-
권 역 별	수도권	48 (39.7)	18 (35.3)	24 (48.0)	19 (37.3)	8 (72.7)	5 (62.5)	1 (16.7)	3 (75.0)	127 (41.8)	7,275 (73.6)
	비수도권	73 (60.3)	33 (64.7)	26 (52.0)	32 (62.7)	3 (27.3)	3 (37.5)	5 (83.3)	1 (25.0)	177 (58.2)	2,603 (26.4)
합 계		121 (100.0)	51 (100.0)	50 (100.0)	51 (100.0)	11 (100.0)	8 (100.0)	6 (100.0)	4 (100.0)	304 (100.0)	9,878 (100.0)

1) 타 산업 벤처기업 수는 전체 벤처기업 10,182업체(2002년 6월말기준) 중 농업관련산업업체를 제외한 수입.

2)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계에는 업종분류가 곤란한 기타업종 포함.

2.5.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특성

이상에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중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304개 업체의 창업시기, 벤처기업확인유형, 지역분포 현황을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파악한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은 타 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에 비해 최근에 창업된 신생업체가 많다. 또한 1998년 이후에 창업된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 228개 중 75.4%가 식품가공분야, 생명공학분야, 환경분야, 경영정보분야의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표 3-6. 농업관련산업 및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 특성 비교

구 분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시기	• 75%가 1998년 이후 창업 - 이 중 식품가공, 생명공학, 환경 분야의 업체가 74.5%를 차지	• 53.5%가 1998년 이후 창업
벤처기업 확인유형	• 대부분 신기술개발·기술평가 기업 - 연구개발·벤처캐피탈투자 기업 14.4%에 불과	• 연구개발·벤처캐피탈 투자기업 25.5%
업체의 지역 분포	• 비수도권 및 농촌지역에 분포	• 수도권지역에 집중

즉 최근에 이르러 농업관련산업분야 특히 식품가공, 생명공학, 환경분야의 사업화 성공가능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농업관련산업 벤처기업의 85% 이상이 ‘기술평가기업’이거나, ‘신기술개발기업’이다. 즉,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은 연구개발투자(3.9%)나 벤처캐피탈투자(10.5%)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 분야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 할 수 있다.

셋째,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반면, 농업관련산업분야 벤처기업의 60% 정도가 비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40% 정도는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어 농촌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벤처캐피탈 투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타 산업분야의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농림부

역시 전체적인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농업부문의 특성을 살린 농정차원의 벤처농기업육성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벤처농기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일반현황이나 경영특성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농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전체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벤처농업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벤처농기업체에 대한 실태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농기업의 경영특성과 사업발전단계별로 갖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신지식농업인 등 잠재적 창업자는 물론, 벤처농업관련 업체(농업관련산업의 벤처인증기업 포함)와 농림기술개발사업 지원업체 등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에는 업체의 창업 연도, 창업자본금, 종업원 수 등에 관한

표 3-7. 벤처농기업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업체 수

단위: 업체수, %

구 분	조사대상 업체수	응답 업체수(응답률)
신지식농업인	40	6(15.0)
벤처농업관련 업체	40	29(72.5)
농림기술개발사업 지원 업체	40	7(17.5)
합 계	120	42(35.0)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과 투자비용 및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등 연구개발투자실태, 경영성과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창업주(또는 경영주)의 경영마인드나 마케팅 및 제품차별화 전략, 자금동원 능력이나 기술력 등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밖에도 사업계획단계, 창업단계 및 사업단계 등 사업발전 단계별로 당면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유효응답 업체 수는 42개(응답률 35.0%)이며, 이들 중 19개 업체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3개 업체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3.1. 벤처농기업 운영실태

3.1.1. 일반현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42개 업체의 설립 연도, 창업자본금, 소재지, 업체형태, 주 업종 등 일반적인 특성은 <표 3-8>과 같다.

즉, 응답업체의 69.2%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벤처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시기인 1998년 이후에 창업되었다. 창업자금의 규모별로는 이들 업체의 41.2%가 1억 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창업하였으며, 5억 원 이상의 창업자본금을 가진 업체는 10.5%에 불과하였다.²¹

또한 조사업체의 50%가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69%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벤처인증업체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업형태별로는 56.4%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고, 농업법인체가 10.2%를 차지하고 있다.

²¹ 중소기업청(2001년)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1억 원 미만의 창업자본금을 가진 벤처인증업체는 11.5%에 지나지 않으나 60.2%는 5억 원 이상의 창업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로는 농산물가공 및 유통업이 52.4%, 농업생산과 농업투입재산업이 각각 23.8% 및 2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 3-4> 및 <표 3-5>의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에서 업종별 분포와 다소 차이가

표 3-8. 조사대상 벤처농기업체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업체수, %

구 분		농경연 조사결과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주1)}
설립연도	1990년 이전	5(12.8)	1,078(13.9)
	1990 ~ 1997년	7(18.0)	2,518(32.5)
	1998년 ~ 2001년	27(69.2)	4,144(53.5)
	계	39(100.0)	7,740(100.0)
창업 자본금	5천만원 미만	5(12.8)	845(11.5)
	5천만원 ~ 1억원 미만	11(28.2)	
	1억원 ~ 3억원	14(35.9)	2,068(28.2)
	3억원 ~ 5억원	4(10.3)	
	5억원 이상	5(12.8)	4,415(60.3)
	계	39(100.0)	7,328(100.0)
업 체 소재지	대도시(광역시)	11(26.2)	na
	중·소도시	10(23.8)	na
	읍·면	21(50.0)	na
	소 계	42(100.0)	na
업체형태	개인사업체	12(30.8)	na
	주식회사	22(56.4)	na
	농업법인체	4(10.2)	na
	기타 법인체	1(2.6)	na
	소 계	39(100.0)	na
업 종	농업생산 ^{주2)}	10(23.8)	na
	농업투입재산업	9(21.4)	na
	가공 및 유통산업	22(52.4)	na
	농업관련 서비스	1(2.4)	na
	소 계	42(100.0)	na

1) 중소기업청,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 2001. 8.

2) 농업생산부문에 창업 예정 업체(3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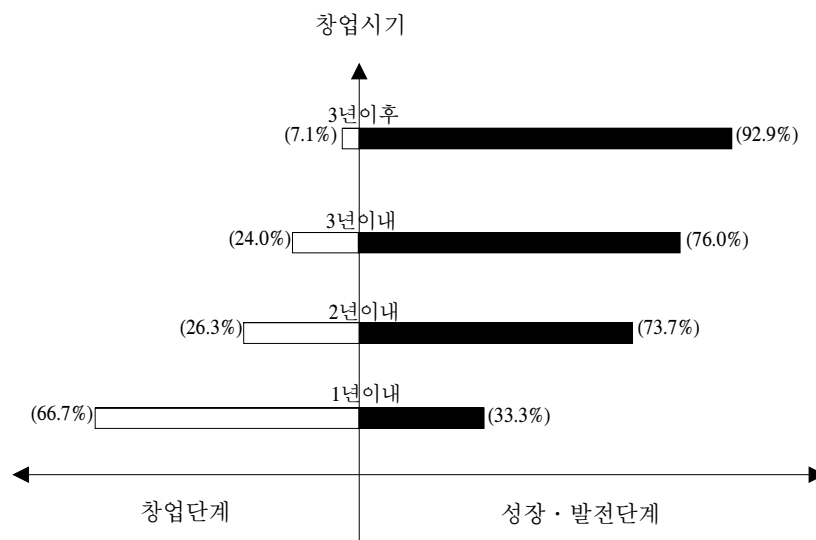
있는데 농업생산 부문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가. 창업유형

벤처농기업이 창업 후 성장·발전단계에 접어든 시기를 보면, 창업 후 3년이 지난 업체의 92.9%, 창업 후 3년 이내 업체의 76%, 창업 후 2년 이내 업체의 73.7%, 창업 후 1년 이내 업체의 33.3%가 성장·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벤처농기업의 본격적인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창업 후 3년 전·후임을 알 수 있다.

벤처농기업의 창업자본금 현황을 보면, 농업투입재산업분야 업체의 55.6%가 1억 원 미만의 창업자본금을 보유한 반면, 가공 및 유통산업분야 업체의 68.2%가 1억 원 이상의 창업자본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두 업종간의 창업자본금 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 벤처농기업의 성장·발전단계 진입시기



한편,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의 54.5%가 1억 원 미만의 창업자본금을 보유한 반면,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의 66.6%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업종별, 소재지별 창업자본금 현황

단위: 업체수, %

구 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 ~ 3억원 미만	3억원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계
업종별	농업생산	2(28.6)	2(28.6)	2(28.6)	1(14.2)	0(0.0)	7(100.0)
	농업투입재 산업	1(11.1)	4(44.5)	2(22.2)	1(11.1)	1(11.1)	9(100.0)
	가공 및 유통산업	2(9.1)	5(22.7)	10(45.5)	1(4.5)	4(18.2)	22(100.0)
	농업관련 서비스	0(0.0)	0(0.0)	0(0.0)	1(100.0)	0(0.0)	1(100.0)
소재지별	대도시 (광역시)	2(18.2)	4(36.3)	3(27.3)	2(18.2)	0(0.0)	11(100.0)
	중·소도시	0(0.0)	4(40.0)	3(30.0)	1(10.0)	2(20.0)	10(100.0)
	읍·면	3(16.7)	3(16.7)	8(44.4)	1(5.5)	3(16.7)	18(100.0)
합 계		5(12.8)	11(28.2)	14(35.9)	4(10.3)	5(12.8)	39(100.0)

표 3-10. 업종별 업체형태

단위: 업체수, %

구 분	개인 사업체	주식회사	영농조합 법인	기타 법인체	계
농업생산	4(57.1)	1(14.3)	2(28.6)	0(0.0)	7(100.0)
농업투입재 산업	1(11.1)	8(88.9)	0(0.0)	0(0.0)	9(100.0)
가공 및 유통산업	7(31.8)	12(54.6)	2(9.1)	1(4.5)	22(100.0)
농업관련 서비스	0(0.0)	1(100.0)	0(0.0)	0(0.0)	1(100.0)
합 계	12(30.8)	22(56.4)	4(10.3)	1(2.5)	39(100.0)

표 3-11. 벤처농기업의 업종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건수

구 분		농업생산	농업투입재 산업	가공 및 유통산업	농업관련 서비스
연구개발인력(평균)		2.6	3.7	2.5	4.0
연구개발투자비용(평균)		83.3	486.1	183.5	304
지적재산권 보유(평균)	특허권	1.3	3.0	1.7	3.0
	실용신안	0.7	0.3	0.3	0.0
	의장권	0.4	0.7	0.7	0.0
	기 타	0.3	3.1	0.4	0.0

표 3-12. 벤처농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건수

구 분		2억원 미만	2억원 ~ 5억원 미만	5억원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연구개발인력(평균)		2.0	2.3	2.0	4.0
연구개발투자비용(평균)		217.3	216.8	73.8	378.2
지적재산권 보유(평균)	특허권	1.3	2.9	1.0	2.3
	실용신안	0.3	0.2	0.7	0.5
	의장권	0.4	0.1	0.0	1.5
	기 타	0.1	0.3	0.7	2.0

농업생산분야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체로 창업(57.1%)하였으며, 농업투입재산업분야나 농산물가공 및 유통산업분야의 경우 각각 88.9%와 54.6%가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였다.

나. 연구개발투자 현황

벤처농기업의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를 보면, 농업투입재분야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분야의 업체가 가장 적은 투자를 하고 있다.

농업투입재산업의 경우 평균 3.7명의 연구개발인력과 4억8천여 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3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분야의 경우 평균 2.6명의 연구개발 인력과 8천여 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1건 이상의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의 경우 가장 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4명)하고,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3억 8천여 만원)하여, 특허권·의장권·기타 지적재산권을 각각 2건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영성과

벤처농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를 연구개발투자비용별, 업종별, 설립연도별, 벤처기업인증여부별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5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업체의 평균 매출액(2002년 전망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99백만 원과 391백만 원으로 나타나 연구개발투자비가 높을수록 매출액과 순이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 벤처농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농업투입재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971백만 원과 370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공 및 유통산업의 경우 각각 728백만 원과 79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 농업관련서비스업의 경우 1개 업체

표 3-13. 연구개발투자비용별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매출액(2002년 전망액)	963.9	962.5	524.8	3,598.8
당기순이익 (2002년 전망액)	102.1	156.5	43.7	391.3

표 3-14. 업종별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 분	농업생산	농업투입재 산업	가공 및 유통산업	농업관련 서비스
매출액(2002년 전망액)	1,755.7	2,971.1	728.2	30.0
당기순이익 (2002년 전망액)	211.9	370.1	78.6	-149.0

표 3-15. 설립연도별 및 벤처기업 인증여부별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설 립 연 도			벤처기업 인증여부	
	1990 이전	1990~1997	1998~2001	인증받음	받지못함
매출액 (2002년 전망액)	7,966.7	1,430.7	730.1	2,069.7	877.2
당기순이익 (2002년 전망액)	1,000.0	201.0	66.9	251.8	91.1

만이 조사되어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990년도 이전에 설립된 벤처농기업의 경우 모든 업체가 성장 및 발전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설립된 벤처농기업의 경우 아직 성장단계에 이르지 못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일반기업 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조세 및 금융지원 등 혜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3.2. 벤처농기업의 경영적 특성

벤처농기업의 경영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정하고 이들이 업종별, 소재지별, 매출액 규모별로 갖는 특성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²² 창업주의 경영마인드(확고한 비전, 도전정신, 전문지식, 종업원과의 유대관계 등), 경쟁전략(시장선택, 원가절감, 마케팅 및 차별화 전략 등), 자원 및 기술력(자금동원능력, 기술력)을 벤처농기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3.2.1. 창업자의 특성

벤처농기업의 창업자(경영주)의 창업당시 연령과 학력수준을 중소기업청의 조사(2001)한 일반 벤처기업과 비교한 결과 벤처농기업체의 경우 일반 벤처기업에 비해 비교적 연령층은 높았으며, 학력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6. 창업자의 창업당시 연령 및 학력분포

단위: 명,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농경영조사	4(9.8)	13(31.7)	16(39.0)	7(17.1)	1(2.4)	41(100.0)
중기청조사	(5.9)	(48.5)	(35.5)	(8.7)	(1.3)	(100.0)
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석사	박사	계
농경영조사	7(16.7)	10(23.8)	14(33.8)	2(4.8)	9(21.4)	42(100.0)
중기업조사	(16.2)		(50.0)	(20.2)	(13.6)	(100.0)

²² 이장우 외(1998), 박수철(2000)은 벤처기업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창업자특성, 산업환경, 전략, 자원과 능력, 조직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Sandberg & Hofer(1987)는 창업자특성, 산업구조, 전략을, Baum(1995)은 경영주의 사업능력 및 성공에 대한 확신, 혁신과 품질, 인적마케팅전략을 각기 벤처기업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벤처농기업의 창업당시 창업자(경영주)의 연령이 30대 미만인 경우가 41.9%이며 50대 이상인 경우가 19.5%인 반면, 일반 벤처기업의 경우 30대 미만은 54.4%, 50대 이상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농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40.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 벤처기업의 경우 16.2%에 지나지 않아 학력 수준에서 있어서도 일반 벤처기업이 벤처농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벤처농기업의 창업자(경영주)의 심리적 특성(도전정신, 위험감수성향)과 전문성(전문지식이나 노하우 등), 행위적 특성(전문가와 접촉빈도, 종업원과의 유대관계) 등을 연령과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17> 및 <표 3-18>과 같다.

40대 창업자(경영주)의 경우, 심리적 특성(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도전정신)과 행위적 특성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위험감수성향은 낮은 경향이 있으며, 60대 이상의 창업자의 경우는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 등 전문성 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이나 행위적 특성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7. 연령별 벤처농기업 창업자의 특성 비교

특 성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확고한 비전과 도전정신	4.29(0.49)	4.68(0.48)	4.62(0.51)	3.50(0.71)
위험감수 성향	3.71(0.95)	3.58(1.12)	3.46(1.27)	4.00(0.00)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4.14(0.90)	4.21(0.71)	4.00(1.08)	4.50(0.71)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	3.71(0.49)	3.79(0.98)	3.38(1.12)	4.00(1.41)
투자자나 외부전문가와의 접촉빈도	3.57(0.53)	3.68(1.11)	3.00(1.22)	3.00(0.00)
종업원과의 유대관계	4.00(0.58)	4.26(0.73)	4.23(0.73)	3.50(0.71)

1)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설문결과 평균값 임(1점: 매우 낮음(적음), 3점: 보통, 5점: 매우 높음(많음)).

2) () 안은 표준편차.

표 3-18. 학력별 벤처농기업 창업자의 특성 비교

특 성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석사	박사
확고한 비전과 도전정신	4.00 (0.58)	4.70 (0.48)	4.71 (0.47)	4.00 (0.00)	4.67 (0.50)
위험감수성향	3.14 (1.07)	3.60 (1.26)	3.71 (1.14)	2.50 (0.71)	4.11 (0.78)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4.14 (0.69)	3.80 (1.23)	4.07 (0.92)	3.50 (0.71)	4.56 (0.53)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	3.71 (1.11)	3.40 (1.26)	3.79 (0.97)	3.00 (0.00)	3.56 (1.01)
투자자나 외부전문가와의 접촉빈도	2.71 (1.11)	3.50 (1.27)	3.50 (1.02)	2.50 (0.71)	3.78 (0.83)
종업원과의 유대관계	3.71 (0.76)	4.40 (0.70)	4.07 (0.62)	3.50 (0.71)	4.44 (0.73)

1)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설문결과 평균값 임(1점: 매우 낮음(적음), 3점: 보통, 5점: 매우 높음(많음)).

2) () 안은 표준편차.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창업자는 도전정신과 기업경영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 등은 매우 풍부하며, 박사 학위를 가진 창업자(경영주)는 위험감수성향과 창업자의 행위적 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사 학위를 가진 창업자는 모든 면에서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본수가 적어(전체의 4.8%에 지나지 않음) 설명력이 크게 떨어진다.

3.2.2. 경쟁전략

벤처농기업의 경영주가 기업의 경쟁전략 수립 시 시장선택전략, 원가절감전략, 마케팅 및 제품차별화전략 등을 얼마나 많이 고려하고 있는지를 통해 업종별, 소재지별 및 매출액별로 벤처농기업의

표 3-19. 업종별 벤처농기업의 경쟁전략

경쟁 전략		농업생산	농업투입재 산업	가공 및 유통산업
시장선택 전략	소비자 선호도	4.86(0.38)	4.89(0.33)	4.59(0.67)
	시장 규모	4.71(0.49)	4.67(0.50)	4.18(0.96)
	접근성	3.83(0.98)	3.67(0.71)	3.90(1.00)
	경쟁업체의 점유율	4.14(0.90)	3.33(1.00)	3.64(1.05)
	소 계(평균)	4.39(0.43)	4.14(0.33)	4.08(0.68)
원가절감 전략	효율적 재고관리	4.43(0.98)	4.11(0.93)	3.91(1.06)
	원재료 구입방식	5.00(0.00)	4.11(0.93)	4.00(1.07)
	생산원가 절감	4.86(0.38)	4.33(0.87)	3.91(1.02)
	효율적 유통방식	4.57(0.53)	4.22(0.97)	4.32(0.78)
	소 계(평균)	4.71(0.37)	4.19(0.84)	4.03(0.83)
마케팅 및 제품차별화 전략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	4.86(0.38)	4.67(0.50)	4.55(0.60)
	신제품 개발	4.86(0.38)	4.78(0.44)	4.43(0.75)
	홍보의 집중도	4.29(0.76)	4.56(0.73)	4.27(0.77)
	소 계(평균)	4.67(0.33)	4.67(0.37)	4.41(0.48)

1) 경쟁전략 수립에 대한 설문결과 평균값 임(1점: 전혀 고려하지 않음, 3점: 보통, 5점: 매우 중요시 함).

2) 농업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우 표본 수(1개 업체)가 적어 제외시켰음.

3) () 안은 표준편차.

경쟁전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우선 <표 3-19>에서 업종별로 경쟁전략을 살펴보면, 농업생산분야의 업체들은 경쟁전략 수립 시 시장선택전략, 원가절감전략 및 마케팅전략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농산물가공 및 유통산업 분야의 업체들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경쟁전략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다. 농업투입재산업은 농업생산업과 가공 및 유통업의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벤처농기업의 소재지별로 경쟁전략을 보면, 대도시(광역시)

와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중·소도시에 입지한 업체들과는 달리 시장선택전략을 크게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원가절감전략이나 마케팅 및 제품차별화전략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나 시장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 지역의 업체들의 경우 시장선택전략 수립 시 ‘접근성’을 타 지역의 업체들에 비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0. 소재지별 벤처농기업의 경쟁전략

경쟁전략		대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시장선택 전략	소비자 선호도	4.82(0.60)	4.40(0.70)	4.81(0.40)
	시장 규모	4.64(0.67)	4.00(1.05)	4.52(0.68)
	접근성	3.82(0.87)	3.67(0.71)	3.90(1.02)
	경쟁업체의 점유율	3.60(1.26)	3.50(0.53)	3.76(1.14)
	소 계(평균)	4.25(0.63)	3.90(0.56)	4.25(0.53)
원가절감 전략	효율적 재고관리	4.36(0.81)	3.80(0.92)	4.10(1.09)
	원재료 구입방식	4.45(0.82)	3.70(0.82)	4.35(1.04)
	생산원가 절감	4.45(0.82)	3.80(0.92)	4.25(0.97)
	효율적 유통방식	4.60(0.84)	3.90(0.88)	4.48(0.60)
	소 계(평균)	4.45(0.80)	3.80(0.79)	4.31(0.71)
마케팅 및 제품차별화 전략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	4.82(0.60)	4.30(0.48)	4.71(0.46)
	신제품 개발	4.82(0.40)	4.56(0.53)	4.33(1.06)
	홍보의 집중도	4.55(0.69)	4.00(0.94)	4.43(0.60)
	소 계(평균)	4.73(0.33)	4.27(0.54)	4.49(0.43)

1) 경쟁전략 수립에 대한 설문결과 평균값 임(1점: 전혀 고려하지 않음, 3점: 보통, 5점: 매우 중요시 함).

2) () 안은 표준편차.

매출액 규모별로 벤처농기업의 경쟁전략을 분석한 결과는 <표 3-21>과 같다. 즉,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시장선택전략을, 매출액이 5억 원~1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원가절감 전략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2억 원 미만의 업체들은 대부분이 창업한지 2년~3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기업들로서 브랜드 차별화, 신제품개발, 홍보 등 마케팅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표 3-21. 매출액별 벤처농기업의 경쟁전략

경쟁전략		2억원 미만	2억원 ~ 5억원 미만	5억원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시장선택 전략	소비자 선호도	5.00(0.00)	4.60(0.70)	4.83(0.41)	4.77(0.44)
	시장 규모	4.71(0.49)	4.00(1.15)	4.50(0.84)	4.62(0.51)
	접근성	3.71(0.95)	3.30(0.67)	4.20(0.84)	4.15(0.99)
	경쟁업체의 점유율	3.50(1.52)	3.40(1.17)	3.67(0.82)	3.82(0.80)
	소 계(평균)	4.29(0.62)	3.83(0.65)	4.29(0.60)	4.35(0.39)
원가절감 전략	효율적 재고관리	4.43(0.79)	3.50(1.18)	4.67(0.82)	4.00(0.91)
	원재료 구입방식	4.57(0.79)	3.80(1.32)	4.67(0.82)	4.15(0.80)
	생산원가 절감	4.43(0.79)	3.80(1.32)	4.67(0.82)	4.31(0.63)
	효율적 유통방식	4.50(0.84)	4.30(0.95)	4.50(0.84)	4.31(0.75)
	소 계(평균)	4.46(0.77)	3.85(1.04)	4.63(0.80)	4.19(0.49)
마케팅 및 제품차별화 전략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	5.00(0.00)	4.50(0.71)	4.83(0.41)	4.54(0.52)
	신제품 개발	4.86(0.38)	4.70(0.48)	4.50(0.55)	4.46(0.88)
	홍보의 집중도	4.57(0.79)	4.60(0.70)	4.33(0.82)	4.15(0.69)
	소 계(평균)	4.81(0.26)	4.60(0.49)	4.56(0.54)	4.38(0.33)

1) 경쟁전략 수립에 대한 설문결과 평균값 임(1점: 전혀 고려하지 않음, 3점: 보통, 5점: 매우 중요시 함).

2) () 안은 표준편차.

3.2.3. 자금동원 및 기술력

벤처농기업의 업종별, 소재지별, 매출액별로 담보제공능력, 자금원천, 투자유치능력 등 자금동원능력을 비교하였으며, 기술개발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전문기술인 확보 및 활용 능력을 통해 기술력을 비교하였다.

업종별 자금동원능력을 보면, 농업생산분야의 경우 담보제공 능력은 미약한 수준(2.71)이지만, 자금원천의 다양성이나 투자유치능력(3.14)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술력에 있어서는 농업투입재산업분야의 벤처농기업이 4.3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생산분야의 경우 3.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22. 업종별 벤처농기업의 자금동원능력 및 기술력

자 원 및 기 술 력		농업생산	농업 투입재산업	가공 및 유통산업
자금동원 능력	담보제공 능력	2.71(0.95)	2.78(1.20)	3.00(1.15)
	자금원천의 다양성	3.14(0.69)	2.78(1.09)	2.95(0.79)
	투자유치 능력	3.14(1.07)	3.00(1.00)	2.71(1.15)
	소 계(평균)	3.00(0.61)	2.85(0.96)	2.91(0.90)
기술력	기술개발 능력	3.71(1.11)	4.56(0.73)	4.18(1.01)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4.00(1.00)	4.44(0.73)	4.00(1.02)
	전문기술인 확보 및 활용 능력	3.57(0.98)	3.89(0.78)	3.59(1.05)
	소 계(평균)	3.76(0.88)	4.30(0.63)	3.92(0.98)

1) 자금동원능력 및 기술력에 대한 설문결과 평균값 임(1점: 매우 뒤떨어짐, 3점: 보통, 5점: 매우 우수함).

2) 농업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우 표본 수(1개 업체)가 적어 제외시켰음.

3) () 안은 표준편차.

벤처농기업의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지역 업체들의 자금동원 능력이 2.70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읍면 지역 업체들이 3.5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벤처농기업체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타 산업분야의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동원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술력에 있어서는 대도시 지역의 업체가 읍·면 지역의 업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이나 전문기술인 확보 및 활용 능력에 있어서는 각각 0.92와 0.8 만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갖는 업체들의 자금동원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출액 규모가 2억 원 미만인 벤처농기업의 경우 담보제공 능력(2.00), 수시로

표 3-23. 소재지별 벤처농기업의 자금동원능력 및 기술력

자 원 및 기 술 력		대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자금동원 능력	담보제공 능력	2.45(1.44)	3.10(0.57)	2.95(1.07)
	자금원천의 다양성	2.73(1.01)	3.00(0.67)	2.90(0.91)
	투자유치 능력	2.91(1.14)	3.22(1.09)	2.70(1.03)
	소 계(평균)	2.70(0.92)	3.13(0.59)	3.56(0.93)
기술력	기술개발 능력	4.45(0.93)	4.40(0.70)	3.81(1.12)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4.55(0.52)	4.20(0.79)	3.62(1.12)
	전문기술인 확보 및 활용 능력	4.09(0.70)	3.90(0.88)	3.24(0.94)
	소 계(평균)	4.36(0.60)	4.17(0.72)	3.56(0.98)

- 1) 자금동원능력 및 기술력에 대한 설문결과 평균값 임(1점: 매우 뒤떨어짐, 3점: 보통, 5점: 매우 우수함).
- 2) () 안은 표준편차.

표 3-24. 매출액별 벤처농기업의 자금동원능력

자 금 동 원 능 력		2억원 미만	2억원 ~ 5억원 미만	5억원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자금동원 능 력	담보제공 능력	2.00(0.82)	2.40(1.26)	3.67(1.03)	3.31(0.75)
	자금원천의 다양성	2.14(0.90)	2.70(0.82)	3.50(0.84)	3.15(0.55)
	투자유치 능력	2.71(1.11)	2.30(1.16)	3.33(1.21)	3.31(0.63)
	소 계(평균)	2.29(0.80)	2.47(0.85)	3.50(0.84)	3.26(0.43)

1) 자금동원능력 및 기술력에 대한 설문결과 평균값 임(1점: 매우 뒤떨어짐, 3점: 보통, 5점: 매우 우수함).

2) () 안은 표준편차.

조달 가능한 자금원천의 다양성(2.14) 등 자금동원 능력이 2.29로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창업 후 성장·발전단계에 있는 신생기업들의 자금동원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2.4. 매출액규모별 및 소재지별 벤처농기업의 특성 차이

이상에 살펴 본 벤처농기업의 경영적 특성을 매출액규모별, 소재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5>를 보면,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의 업체의 경우 창업자의 경영마인드, 마케팅전략, 기술력이 각각 4.10, 4.81,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자금의 동원능력이나 시장선택 전략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자금동원 능력이나, 시장선택전략 등은 매출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규모별로 벤처농기업의 특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벤처농기업이 높은 기술력이나 확고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창업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금동원 능력이나 판로확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기업체가 위치한 소재지별로 벤처농기업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대도시지역 업체와 농촌지역 업체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도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자금동원 능력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특성에서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원가절감전략(4.45)이나 마케팅전략(4.73), 기술력(4.36)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읍·면)의 업체들보다 경영전문가나 전문기술인 등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25. 매출액 규모별 벤처농기업의 특성 차이

기 업 특 성		2억원 미만	2억원 ~ 5억원 미만	5억원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창업자의 경영마인드		4.10	3.85	3.89	3.94
경쟁 전략	시장선택전략	4.29	3.83	4.29	4.35
	원가절감전략	4.46	3.85	4.63	4.19
	마케팅전략	4.81	4.60	4.56	4.38
자원 및 기술력	자금동원능력	2.29	2.47	3.50	3.26
	기술력	4.52	3.60	4.06	3.97

표 3-26. 소재지별 벤처농기업의 특성 차이

기 업 특 성		대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창업자의 경영마인드		4.03	4.04	3.82
경쟁전략	시장선택전략	4.25	3.90	4.25
	원가절감전략	4.45	3.80	4.31
	마케팅전략	4.73	4.27	4.49
자원 및 기술력	자금동원능력	2.70	3.13	3.56
	기술력	4.36	4.17	3.56

3.3. 벤처농기업의 당면문제

벤처농기업정책의 경우 농업관련산업분야 기존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신규 벤처농기업의 창업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²³

기업체도 유기체와 같이 생성에서 소멸까지 생애주기(life cycle)를 가지는데 개념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계획단계》,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창업단계》,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성장·발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3 참조).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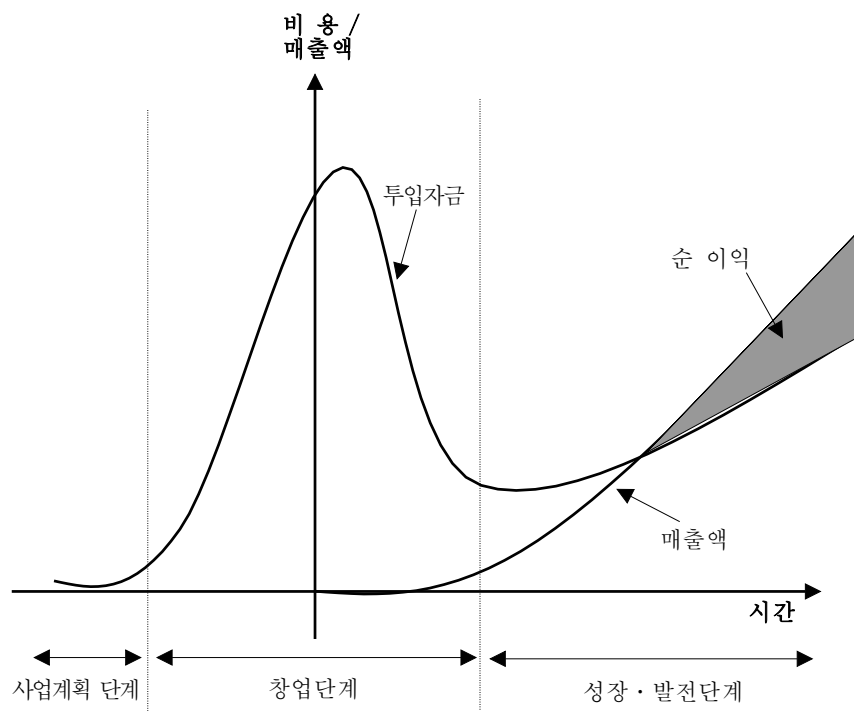
²³ 산업연구원의 '성장단계별 애로요인'에 대해 일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1999.9)에 따르면, 창업준비기에는 자금조달(50.7%), 행정절차(1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창업후 시간이 흐를수록 판로개척과 인력확보에 애로요인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배광선 등, 2000)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요인’

	창업준비기	창업후 3년 미만	창업후 3~5년	창업후 5년 이후
행정절차	17.6	2.8	2.1	1.1
자금조달	50.7	41.3	28.2	27.6
기술개발	12.3	20.0	23.9	21.8
인력확보	6.7	11.9	17.5	18.0
판로개척	11.9	23.0	27.0	30.7

²⁴ 벤처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① Webster 모형(모험사업준비단계, 조직단계, 재정적 위기단계, 제품도입단계, 결과단계), ② Kazanjian 모형(개념화와 개발단계, 상업화단계,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③ Ruhnka & Young 모형(씨앗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확장단계, 회수단계), ④ 일반적인 분류방법(연구개발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확장단계, 성숙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김이태 등, 벤처창업 경영론, 2000.3).

그림 3-3. 벤처농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



3.3.1. 《사업계획단계》의 당면문제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연구개발을 통해 구체화, 권리화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자금조달이나 인력확보 방안, 시장분석, 사업전략 등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그리고 사업아이템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경영인으로써 자질을 함양하거나, 시장이나 관련기술, 경쟁업체 등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통해 구체적

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농기업체들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문의한 결과, 이들은 창업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금조달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36.4%)하였으며,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24.7%), 기업경영관련 전문지식의 부족(14.3%), 창업관련 정보의 부족(10.4%) 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중·소도시나 대도시 지역의 업체들에 비해 전문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창업관련 정보 등이 부족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사업계획 수립단계의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

단위: 업체수, %

당 면 문 제	소 재 지 별			
	전 체	대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자금조달처를 구하기 어려움	28(36.4)	10(35.7)	7(25.0)	11(39.3)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움	19(24.7)	4(21.0)	3(15.8)	12(63.2)
기업경영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사업전략수립이 어려움	11(14.3)	2(18.2)	4(36.4)	5(45.4)
창업절차, 세제 등 창업관련정보 부족	8(10.4)	2(25.0)	1(12.5)	5(62.5)
시장정보 등 관련정보 부족	7(9.1)	2(28.6)	2(28.6)	3(42.8)
기 타	4(5.2)	1(25.0)	1(25.0)	2(50.0)
합 계	77(100.0)			

주: 중복응답임.

또한 ‘사업계획수립 시 정보수집 방법’을 문의한 결과, 관련업종에 관한 전문지식은 31.1%가 전문학술지를 통하여 얻고 있으며, 소비자 선호도나 시장가격, 시장규모 등 시장정보는 26%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창업관련 정보(창업방법, 절차, 세제 등)와 자금조달이나 인력충원 등에 관한 정보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수집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벤처농기업체들은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기관을 가장 많이 방문(24.5%)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검색(19.3%)과 신문이나 방송(15.8%)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벤처농기업이 사업계획수립 시 정보수집방법

단위: 업체수, %

정보의 종류	정 보 수 집 방 법								계
	수집 않음	신문 방송	전문 학술지	전화 문의	인터넷 검색	기관 방문	컨설팅 의뢰	기타	
관련업종 전문지식	2 (1.9)	13 (12.3)	33 (31.1)	3 (2.8)	23 (21.7)	24 (22.6)	3 (2.8)	5 (4.7)	106 (100.0)
기업경영 관련 지식	1 (1.0)	19 (18.6)	18 (17.6)	8 (7.8)	15 (14.7)	22 (21.6)	13 (12.7)	6 (5.9)	102 (100.0)
시장정보	2 (2.0)	24 (24.0)	7 (7.0)	11 (11.0)	26 (26.0)	23 (23.0)	1 (1.0)	6 (6.0)	100 (100.0)
창업관련 정보	4 (4.4)	11 (12.2)	9 (10.0)	13 (14.4)	14 (15.6)	26 (28.9)	11 (12.2)	2 (2.2)	90 (100.0)
자금, 인력 등 관련정보	3 (3.2)	11 (11.6)	5 (5.3)	15 (15.8)	17 (17.9)	26 (27.4)	11 (11.6)	7 (7.4)	95 (100.0)
합 계	12 (2.4)	78 (15.8)	72 (14.6)	50 (10.1)	95 (19.3)	121 (24.5)	39 (7.9)	26 (5.3)	493 (100.0)

주: 중복응답임.

3.3.2. 《창업단계》의 당면문제

《창업단계》는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첫 번째 과정으로 기업발전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로 인식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은 물론 조직을 갖추고 자금과 전문인력 및 생산설비를 확보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출하를 준비하는 등 투자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이 기간이 대개 창업 후 2~3년 정도 소요(<그림 3-2> 참조)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성장 및 발전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창업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문의한 결과, ‘창업자금 조달’(28.9%)과 ‘판매망 구축’(23.7%)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규제사항(15.8%)이나 복잡한 행정절차(11.4%)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의 업체들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업체들에 비해 ‘창업자금 조달’이나 ‘판매망 구축’, ‘각종 규제사항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창업단계의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

단위: 업체수, %

당 면 문 제	전 체	소 재 지 별		
		대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창업자금 조달	33(28.9)	8(24.2)	7(21.2)	18(54.6)
판매망 구축	27(23.7)	7(25.9)	8(29.6)	12(44.5)
시설/공장 설치 등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	18(15.8)	1(5.5)	5(27.8)	12(66.7)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한 복잡한 행정절차	13(11.4)	4(30.8)	3(23.1)	6(46.1)
전문인력 확보	11(9.6)	3(27.3)	2(18.2)	6(54.5)
조직구성	10(8.8)	4(40.0)	4(40.0)	2(20.0)
점포나 사무실 등의 입지선정	2(1.8)	1(50.0)	1(50.0)	0(0.0)
합 계	114(100.0)			

주: 중복응답임.

표 3-30. 벤처농기업의 창업자금 조달방법

단위: 업체수, %

자 금 조 달 방 법	전 체	우 선 순 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자기 자금	25(24.7)	19(50.0)	3(8.3)	3(11.1)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22(21.8)	6(15.8)	9(25.0)	7(25.9)
금융기관(은행 등) 담보대출	21(20.8)	1(2.6)	12(33.3)	8(29.6)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14(13.9)	9(23.7)	2(5.6)	3(11.1)
중진공,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창업자금	14(13.9)	3(7.9)	9(25.0)	2(7.4)
사 채	3(3.0)	0(0.0)	0(0.0)	3(11.1)
기 타	2(2.0)	0(0.0)	1(2.8)	1(3.7)
합 계	101(100.0)	38(100.0)	36(100.0)	27(100.0)

주: 중복응답임.

<표 3-29>와 같이 벤처농기업체들의 창업자금 조달방법을 보면,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의 정책자금(21.8%)이나 은행의 담보대출(20.8%)을 통해 창업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자금(또는 중진공의 창업자금)이나 은행의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2순위나 3순위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벤처농기업체들은 먼저 자기자금이나 가족·친구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조달한 후 정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3.3. 《성장·발전단계》의 당면문제

《성장·발전단계》는 본격적인 매출증가 및 이익이 실현되는 단계로 창업 후 매출이 시작되어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 시설이나 인력확충,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 단계이다.

《성장·발전단계》에 접어든 업체들은 ‘시설 및 운영자금의 부족’(30.7%)을 겪고 있으며, 20.2%의 업체들은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벤처농기업체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여 제품홍보나 시장정보 수집능력이 취약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농협의 유통망 활용, 마케팅자금지원, 해외수출을 위한 시장정보 및 관련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정부차원의 수출 알선 등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14%는 ‘복잡한 행정절차나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공 및 유통업체의 경우 식품가공에 대한 보건복지부·농림부·국세청 등

표 3-31. 벤처농기업의 기업활동에 따른 당면문제

단위: 업체수, %

당 면 문 제	전 체	소 재 지 별		
		대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35(30.7)	10(28.6)	9(25.7)	16(45.7)
판로확대 문제	23(20.2)	5(21.7)	8(34.8)	10(43.5)
복잡한 행정절차나 각종 규제	16(14.0)	4(25.0)	4(25.0)	8(50.0)
전문인력 부족	14(12.3)	5(35.7)	3(21.4)	6(42.9)
기술 및 경영능력 부족	7(6.1)	1(14.2)	3(42.9)	3(42.9)
시장정보 및 관련정보 부족	10(8.8)	3(30.0)	1(10.0)	6(60.0)
신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9(7.9)	2(22.2)	2(22.2)	5(55.6)
합 계	114(100.0)			

주: 중복응답임.

부처간의 관련법령 적용의 시각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성식품의 원료를 제한하거나, 제품홍보를 위한 직거래장터나 판촉 행사시 행정규제가 많아 해당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부분의 벤처농기업체들의 경우 전문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12.3%)을 겪고 있어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성공 가능한 기술개발로 이어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 외 ‘시장정보나 관련정보가 부족’(8.7%)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이나 판로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7.8%)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벤처농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업체 중 27개 업체(69.2%)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32. 벤처농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수혜 여부

단위: 업체수, %

지 원 기 관	정 책 사 업 명	지 원 받 은 업 체 수		
		계	벤처인증	벤처비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4(8.3)	4(12.1)	0(0.0)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개선자금	3(6.3)	3(9.1)	0(0.0)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자금	5(10.4)	4(12.1)	1(6.7)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	3(6.3)	3(9.1)	0(0.0)
시·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10(20.8)	6(18.2)	4(26.7)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11(22.9)	8(24.2)	3(20.0)
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4.2)	1(3.0)	1(6.7)
농림부	농공단지육성사업	1(2.1)	0(0.0)	1(6.7)
그 외	정부정책자금	9(18.8)	4(12.2)	5(33.3)
합	계	48(100.0)	33(100.0)	15(100.0)

주: 중복응답임.

한편 이 들 업체가 지원 받은 48개 사업을 업체의 성격별로 살펴 보면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이 33개 사업을 지원 받은 데 비해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15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인증기업으로 지정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지원내용을 문의한 결과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22.9%)과 시·도에서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20.8%)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자금(10.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8.3%)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벤처농기업체들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업체 중 7개 업체(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분야의 유일한 벤처캐피탈인 ‘농업전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 받은 업체는 단 1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물론 농업전문투자조합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검토하여 향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벤처농기업체들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이나, 벤처캐피탈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부딪히는 문제점은 <표 3-34>와 같다.

표 3-33. 벤처농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 여부

단위: 업체수, %

투 자 기 관	투 자 여 부			
	투자받음	투자받지 못함	투자유치 계획 중	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	2(5.1)	36(92.3)	1(2.6)	39(100.0)
개인투자자(엔젤)	4(10.3)	34(87.2)	1(2.6)	39(100.0)
농업전문투자조합(농림부)	1(2.6)	37(94.8)	1(2.6)	39(100.0)
금융기관	2(5.1)	35(89.8)	2(5.1)	39(100.0)
합 계	7(18.0)	27(69.2)	5(12.8)	39(100.0)

즉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격조건이 까다롭고(32.7%),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24.5%), 자금신청을 미리 포기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정책담당자나 투자자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22.4%), 농업분야가 벤처기업창업보육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18.4%)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표 3-34. 정부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문제점

단위: 업체수, %	
자 금 조 달 시 문 제 점	업체수 (비율)
자격조건이 까다로움	16(32.7)
복잡한 신청(행정) 절차	12(24.5)
정책담당자나 투자자들의 농업부문에 대한 이해 부족	11(22.4)
정책/투자 지원대상에 농업부문이 제외되어 있음	9(18.4)
기 타	1(2.0)
합 계	49(100.0)

주: 중복응답임.

제 4 장

벤처농기업의 성공요인 및 애로사항 분석

앞장의 실태분석 결과 농업관련산업분야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벤처기업이 존립,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벤처농기업이 가진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실제 이들 벤처농기업의 실태는 어떠하며,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흔히 성공한 농업벤처라고 알려지는 업체의 경우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벤처농업 또는 벤처농기업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중 일부업체를 사례 조사하여 성공요인과 애로사항을 살펴 보았다.

1. 벤처농기업의 종류와 성격

제2장에서 개념적으로 벤처농기업의 유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농림업 및 관련산업 분야의 벤처기업(I)과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

부가가치 상품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은 받지 못한 농업관련산업체(Ⅱ), 그리고 비록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사업체 형태를 갖추지 못한 농가(신지식농업인 개념과 유사)나 농업법인체(Ⅲ)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벤처기업(Ⅰ)을 제외하고는 법적, 제도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어떤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렵다.

더구나 새로이 도입한 ‘벤처농기업’이란 개념이 농림부나 농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존의 ‘벤처농업’의 개념과도 일치하기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벤처농업, 또는 벤처농기업의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들 개념은 각기 어떻게 다르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흔히 기업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주체와 업종, 수익모델, 기업형태, 사업규모, 그리고 벤처기업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신규 창업연도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먼저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위해 농림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정책인 ‘농업전문투자조합(2001.12)’의 투자대상을 보면 어떠한 업체를 정책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²⁵ 즉 여기에는 유전공학·효소공학 등 생명공학분야와 생물비료 및 생물농약·첨단농기계 등 농업투입재분야 등 고도의 기술집적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표 5-13 참조). 따라서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01

²⁵ 물론 이에 앞서 1998년부터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해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이는 농림부가 독자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부가 협조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년 8월에 개소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9개의 농업생명과학분야에 특화한 업체들이 이와 같은 개념에 부응하는 업체이고, 농림부는 2002년 초까지 이를 ‘벤처농업’으로 파악해 왔던 것이다(부록Ⅳ - 농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참조).

1998년 이후 전국이 벤처열풍에 휩싸이면서 농업계에서도 이제까지의 ‘물적 기반의 양적 확대’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의 콘텐츠를 질적으로 바꿈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위 ‘신지식농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농림부는 1998년부터 신지식농업인을 지정하였는데 2001년에는 2004년까지 500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농림부홈페이지, 2001)’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2000년 초부터 농업분야에도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서 농업계에서는 자생적으로 ‘벤처농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몇몇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농업벤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알려진다(부록Ⅱ - 벤처농업사례업체 내역 참조).

예를 들어 『농수축산신문사』에서 개최한 벤처농업설명회(2000. 4. 24)에서는 장생도라지와 청매실농원, 본정, 화인민창 등 10개 업체가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도라지, 인삼, 한약재, 버섯, 난 등 특수 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업종으로 대부분 기업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 후 농수축산신문과 경남농업기술원이 개최한 벤처농업설명회(2000. 5. 29)에서는 6개 업체를 사례로 소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장생도라지와 화인민창이 포함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품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 후 벤처농업포럼에서는 2000년 9월과 12월에 두 차례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청매실농원, 장생도라지, 파낙스골드 등 10개 업체를 성공사례로 소개하였으며 업종이나 기업형태 등은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2002년 초 농림부는 <표 5-13>의 농업전문투자대상과는 전혀 다른,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지식농업인의 개념과 아주 유사한 ‘벤처농업’이란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농림부는 벤처농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지원, 농업벤처투자박람회와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등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농림부가 이해한 농업벤처에는 이들 사업에 포함된 업체를 통해 농림부가 이해한 농업벤처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먼저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업체를 보면 <부록 IV>와 같다. 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에는 곡물가공과 장류 등 식품·농산물전자상거래·활성탄 및 목초액 제조·친환경비료와 특수토양 등 농자재산업 등 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첨단농산업창업보육센터에는 친환경농산물유통·상황버섯 및 생열귀 가공 등 식품·관상조류프랜차이즈 등 9개의 입주업체와 유기농 야콘재배·친환경매실가공·허브가공 등 6개 비 입주업체를 보육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에는 미생물제제·기능성신소재·당/산도센서개발·천연물이용코팅비료개발·기능성물질추출개발 등 9개 입주업체와, 농업관련센서개발·광합성세균자가배양장치·기능성화장품 등 9개 비 입주업체를 보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업체란 점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농업전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차이가 있다. 이밖에 농업벤처투자박람회 및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에 참가한 업체도 이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농업’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벤처농업, 또는 벤처농기업에는 어떤 종류의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농림부는 이상에서 소개한 대

부분의 사업형태를 ‘벤처농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업종에 있어서는 농림생산업과 농업투입재산업·농림가공 및 유통산업·농림업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 농업관련산업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며, 기술수준에 있어서는 High-tech/첨단기술벤처와 Medium-tech/아이디어 농업벤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벤처농기업이란 기본적으로 농업관련산업분야에 있어서 ①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체로 가계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②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틈새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고수익-고위험이 따르며, ③ 신규창업 중소기업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면 기본요건만 갖춘다면 업종이나 사업아이템이 무엇이든 관계없으며, 사업주체나 지역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야 하지만 창업한지 3~5년 이내의 신생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벤처농기업의 정책대상과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더라도 업체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성격과 당면문제가 각기 다른 만큼 정책대상을 유형화하여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벤처농기업의 성공요인

흔히 전통산업이라고 알려진 농업분야에서도 과연 성공한 벤처기업이 있는가? 있다면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농업관련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차별화된 경영전략 등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벤처농기업의 존립요건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비록 성공사례의 분석대상 벤처농기업들이 타 산업분야 벤처기업의 성공사례와 같이 아직까지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들이 농업생산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창업이나 사업화에 성공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이 나아가 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벤처농기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표 4-1>과 같이 벤처농기업의 성공유형을 구분하였다. ①, ② 유형의 경우 2002년 9월 농림부에서 실시한 ‘제1회 지식농업실현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²⁶ ③ 유형은 벤처농업포럼이나 매일경제신문사 등의 성공사례로 소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²⁷

표 4-1. 벤처농기업의 유형별 성공 사례분석 대상

성 공 유 형	분석대상 업체	
	업체명(대표자명)	주요 사업아이템
① 꾸준한 연구개발 및 제품 차별화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한아름농장(최근학)	길러 먹는 도심형 채소밭 상품화
②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사업화	e사이버팜(홍승욱)	인터넷을 통한 영농체험 및 전자상거래
③ 농산물 가공을 통한 사업화	장생도라지(이영춘)	도라지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

²⁶ 이들 업체의 대한 사례분석은 업체 대표자의 양해를 구하여 ‘제1회 지식농업실현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농림부 개최, 2002.10)’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하였다.

²⁷ (주)장생도라지의 성공사례 분석은 ‘벤처농업설명회, 농수축산신문, 2000.4’ 및 ‘벤처농업 미래가 보인다(4), 매일경제신문 연재’ 내용을 참고하였다.

2.1. 꾸준한 연구개발 및 제품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한아름 농장(대표 최근학, 52세)은 도심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공간 및 창가, 옥상, 학교와 직장사무실 등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고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심 가정용 채소밭, 즉 수경재배 세트(스티로폼 용기, 채소묘, 숯, 양액)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창업 과정에 있다.

이 사업 아이템의 특징은 기존의 수경재배 세트와 비교하여 가격이나 환경오염문제 등에서 분명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수경재배 세트의 경우, 재배기가 비싸며 배양액 교체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재배가 까다로웠다. 즉, 기존의 제품은 전원을 이용한 순환식 수경재배기기와 용기만 제품화하였으며, 채소묘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아름 농장에서 개발한 수경재배세트는 원가가 6,000원 정도이다. 또한 담액식 재배방식으로 인해 손쉽게 재배할 수 있으며, 설치 후 15~20일 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작물에 따라 70일에서 150일까지 재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농업생산 현장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대표자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학력은 고졸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폐양액 재활용기술 개발’ 등 3건의 농업인기술개발과제(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부 시행), ‘참숯을 활용한 폐양액 및 양액배지 살균소독 기술개발’ 등 자체 연구개발 3건 등 총 14건의 기술개발 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세계농업기술상(농촌진흥청), 1999년과 2001년 벤처농업기술상(아이디어부문, 농민신문사)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표 4-2. 한아름농장의 창업 성공요인

성 공 요 인	특 징
대표자의 특성	- 총 16건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
제품의 차별화	- 기존 제품과의 가격 및 재배방식, 환경문제 등 차별화 시도
판 매 전 략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판매전략 - 다양한 경로의 홍보 및 판촉전략 - 제품의 이미지 차별화 시도

이와 같은 대표자의 기술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아이템)가 성공적으로 사업화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사업화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와 이미지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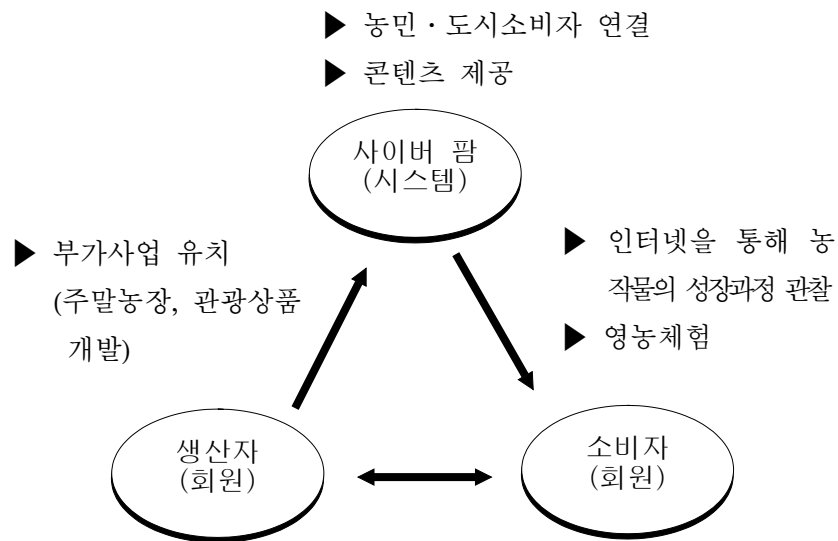
판매전략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의 기능과 홍보 등을 강화하고, 채소밭 상품을 골판지 포장화 하여 전자상거래용 제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TV 홈쇼핑이나 농산물직판장 등을 통한 홍보 및 판매촉진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직접 길러 먹는 안전먹거리 채소밭’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이미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2.2.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사업화

e-사이버팜(대표 홍승욱)의 사업아이템은 회원제를 통한 소비자들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작물분양 및 농산물직거래, on-line과 off-line이 연계된 농장체험학습이나 주말농장 운영 등 다양한 분야와의 네

그림 4-1. e-사이버팜의 사업개요도



트위크를 통하여 농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농가소득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e-사이버팜을 통해 농작물을 분양 받은 소비자(회원)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농작물에 대한 성장과정을 동영상과 e-mail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농장체험학습 등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엄선된 무공해 유기농업의 친환경농장(회원)들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주말농장이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e-사이버팜은 현재 쌀농장, 포도농장, 배농장, 고추농장 등 4개 농장을 개별분양과 패키지분양, 그리고 선물권 등의 형태로 분양하고 있으며, 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02년 현재 이들 회원들에게 판매될 농산물 매출액을 3억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e-사이버팜의 성공요인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방식인 독특한 비즈니스모델(특허출원: 제58846호)이다.

또한 회원 생산농가들이 재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 대형 쇼핑몰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CJ39쇼핑, 삼성물, 삼성카드 등과 제휴 중에 있다.

그리고 기존고객에 대한 CRM(고객관계관리: 고객의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활동 및 기존 가입회원을 통한 신규회원 추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와 제휴하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구전(口傳)마케팅을 전개하고 개별상품 및 패키지 선물권, e-mail 선물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 외 인터넷을 이용한 도시민의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그린투어리즘을 실현하고 있으며, 농업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여 잠재고객을 확보하는 등의 전략을 펴고 있다.

표 4-3. e-사이버팜의 성공요인

성 공 요 인	특 징
비즈니스모델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농장체험이나 그린투어리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 실현
다양한 판매전략	- 대형 쇼핑몰, 삼성카드 등과 제휴하여 농산물 판매 - 기존고객에 대한 CRM활동 및 기존 회원을 통한 신규회원 추천제 도입 -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구전마케팅 활동(삼성경제연구소와 제휴) - 개별상품 및 패키지선물권, e-mail선물권 등의 개발을 통해 고객만족 실현

2.3. 농산물가공을 통한 사업화

앞에서 다루었던 2개 업체와는 달리 (주)장생도라지(대표 이영춘)는 1995년 「성호 다년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1999년에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해에 벤처기업인증업체로 지정되는 등 농업분야 벤처기업으로서는 선구자적인 업체이다.

이 업체는 창업자의 ‘다년생 도라지 재배법(특허 제045791호, 1991년 11월)’에 대한 끈질긴 연구 결과 일반도라지를 ‘황토 옮겨심기’라는 특수관리기법을 통해 20년 이상의 다년생 도라지재배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벤처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20년 이상 대기업에서 기업관리 경험을 가진 이영춘 씨가 대표를 맡게 되면서부터 이다.

(주)장생도라지는 20년 이상 된 도라지를 원료로 생약제와 농축액, 한방차, 목캔디 등 1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누, 목욕용품 등 한방 미용품 시장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 때 외환위기 직후 최대의 부도위기를 맞이하였으나 당시 10억 원에 불과하던 연간매출액이 지난해에는 33억 원으로 급성장하였고, 올해는 4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요인이 <표 4-4>와 같은 경영전략이었다. 즉 (주)장생도라지는 매출액의 20%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여 9개의 국내외 특허등록 및 출원하였고 3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도라지 추출제품을 비롯해 분말환, 기능성 캔디 등 서양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장생도라지를 이용한 한방미용품, 도라지 추출물을 이용한 의약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00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기도 하였다.

또한 재래식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표준화된 공정체계를 구축하고 ISO9001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식경영에도 주력하였다.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고객 및 외국 바이어들의 깊은 신뢰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전략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우선 국내에 25개 영업점을 설치하고 대형백화점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8개의 영업점을 설치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약 100만 달러 어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장생도라지의 사업화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도라지는 지리산 일대 약15만평, 250여 농가에서 계약 재배되며 농가에 지급되는 생산비(재배비용)만 연간 5억5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도라지는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개간지 등 유휴지를 활용하여 재배되기 때문에 일반작물에 비해 2~3배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표 4-4. 장생도라지의 성공요인

성 공 요 인	특 징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 매출액의 20%이상 연구비에 투자 -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성 식품과 약용식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물산업으로 전환
지식경영	- 재래식 경영탈피, 선진경영시스템 도입 - 표준화된 공정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효율적인 판매전략	- 국내 25개 영업점 설치, 대형백화점 판매 - 24시간 배송체제와 실시간 상담체제 구축 - 미국, 일본, 홍콩 등 8개 영업점 설치, 해외시장 구축

3. 벤처농기업의 애로사항

벤처농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례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중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하였으며, 창업과정 및 사업과정에서의 당면문제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의 보육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정리하였다.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자금부족과 기술(혹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개발 미흡, 판로 부족, 창업보육 공간 협소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3.1. 사례업체(1)

3.1.1. 사업개요

사례업체(1)의 대표자는 창업 전 유통분야에서 약 10년의 실무경력과 IT업체에서 총무이사를 지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전자상거래와 농산물 통합관리 솔루션(SCM)개발을 사업화 하였다.

농산물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최상의 상품을 생산하는 전문농장을 양성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 설립된 이 업체는 창업자본금 1억 원, 종업원 7명(연구개발: 4명, 사무: 3명)이며, 2002년 말까지 1억5천만 원의 매출액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3.1.2. 사업내용

이 업체의 주요 사업아이템으로는 쇼핑몰 운영과 솔루션개발, 생

산자와 소비자간의 커뮤니티 구축 등이다.

쇼핑몰은 지역특산물 위주의 상품으로 구성하고 상품 입점농가(업체)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2002년 현재 150여종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40여 개의 농가(업체)가 입점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20여 건의 무료홈페이지와 쇼핑몰을 구축해 주고 있다.

또한 취급상품의 효율적인 수주관리(주문/배송 및 판매관리), 생산관리(생산/재고 및 품질관리), 수요예측(소비패턴, 유동량 분석) 등의 효율화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QR(quick response) System을 자체개발 하여(1억7천3백 만원 투자) 2003년 4월 중에 개발완료 할 예정이다. 농산물공급망 통합관리(SCM) 솔루션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벤처형 중소기업기술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 10월부터 2년 동안 1억4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개발 중에 있다.

3.1.3. 당면문제

이 업체는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창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에 신청 해 보았지만, 서류접수과정에서부터 농산업관련 업체로서 한계를 절실히 체험하였다. 즉, 많은 창업자들이 상담 및 서류접수를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질문과 함께 거절하여 창업자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IT분야와 관련 있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업체로 신청, 선정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의 보증서를 교부 받아 창업자금을 마련하였다.

사업과정에서는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판매망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판매망 확보를 위해 검색사이트에 홍보하고,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특성에 맞는 e-마케팅을 전개하기가 어려우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도우미를 활용한 농산물 무료시식·시음 등을 하고 있으며, 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각 단체·기업체·아파트단지 등에 배포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으나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효과적인 판촉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운송비(택배비)가 너무 비싸 실제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낮기 때문에 사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 업체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기술혁신 능력평가를 받고 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받았는데 기술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지 못하였다.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 그것이 무슨 벤처냐”고 항의하기도 하였지만 “주어진 항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한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게 되면서, 생산자(단체)에 관한 자료나 각종 정보 제공, 기자재 및 공동이용시설의 제공 등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입주공간이 협소하여 필요한 인력 확충이나 기자재 설치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공간을 업체의 특성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3.2. 사례업체(2)

3.2.1. 사업개요

사례업체(2)의 대표자는 출판사를 운영하며 학교에 도서를 납품하던 중 학교급식의 영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발아현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장세순 박사의 특허권(발명특허 0247686 : 현미를 발

아시키는 법)을 구입하여 2002년에 경기도 여주에 공장과 본사를 설립하고 발아현미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3.2.2. 사업내용

주요 사업아이템은 현미의 가공이며, 핵심기술은 여주산 벼를 수매하여 찰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 현미를 생산하는 것이다. 한국 및 미국발명특허에 등록되어 있는 현미발아기술에 의해 개발한 발아현미는 농협유통양곡본부를 통하여 일반 시중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의 6개(서울, 부산, 울산, 광주, 전주, 대구) 도시에 직영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발아현미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주스, 젤리, 떡국, 차, 죽 등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전략도 함께 수립하고 있다.

3.2.3. 당면문제

창업과정에서도 자금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사업과정에서도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발아현미의 효능을 입증하거나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판매망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판매는 큰 어려움 없이 유통되고 있으나 학교급식을 위한 입고가 매우 까다롭다. 현재 학교급식용으로 월 10톤을 납품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 시·도교육청에서의 조건이 엄격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발아현미의 효능과 제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제품의 다양화나 차별적 유통에 한계가 있어 판매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홍보나 해당 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다.

향후 농업분야의 벤처인증기관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지정된다면 지금보다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3. 사례업체(3)

3.3.1. 사업개요

이 업체는 1989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서 된장·간장 등 장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00년 7월에 자본금 12억 원의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이 업체는 원료의 조달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환경친화적이며 전통문화에 기반한 방식을 따름으로써 환경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깨우고 고품질의 장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삼고 있는 전통식품전문업체로서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농한기 소득까지 창출하고 있다.

3.3.2. 사업내용

인근지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해콩을 전통방식에 의해 담그는 것이 사업의 핵심 아이템이며, 생산된 제품을 TV 홈쇼핑·전화주문·현지판매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B2C형태의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학교 등 단체급식을 대상으로 식자재 B2B로 확대하여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며, 직영식당을 운영하고 물류의 거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프랜차이즈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3.3.3. 당면문제

1989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 6월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담보의 부족 등 신용능력의 부재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또한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해콩(가마당 22만 원, 묵은 콩의 경우는 가마당 15만 원)만을 원료로 사용(올해의 콩 소요량은 약 2,000가마로 예상)하기 때문에 원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연간 12,000명의 인원이 현지를 방문하고 있으며, 전화 및 인터넷 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함으로써 임대료가 저렴하고 많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3.4. 사례업체(4)

3.4.1. 사업개요

1991년부터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산칼슘 비료를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품은 용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산칼슘 제조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균주를 혼합한 인산칼슘 비료의 제조방법 및 장치(특허출원, 1999.6)’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 한 것이다.

3.4.2. 사업내용

이 업체는 농작물의 균형생장을 촉진하여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을

높이는 인산칼슘 비료를 완전가용성으로 만들어 작물의 흡수율을 높이는 균주 혼합 인산칼슘 비료 제조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농가는 인산칼슘 비료제조기를 통해 수용액 인산칼슘 및 각종 미생물(토착 미생물, 유산균, 누룩균 등)의 혼합체인 ‘인칼균’을 제조·배양함으로써 생물체에 흡수율을 높여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비료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3.4.3. 당면문제

처음에는 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 매년 1억 원씩 투자(총 5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였으며, 실험실이 없어 재배포장에서 연구하였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없어지게 되고 정작 사업을 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했을 때는 담보가 없어 결국 1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02. 5월에 개최한 ‘중소·벤처창업박람회’에 참가하여 3,600개 참가업체 중 ‘지식·기술 집약적인 신산업창업업체’로 선정되어 투자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부여받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받았으나, 비슷한 시기에 동일기관에 경영자금을 신청한 결과 지원 불가통보를 받았다.

또한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였으나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인증 받지 못하였다.

시설자금이 부족하여 공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산칼슘 제조기는 OEM방식으로 조립 제조하고 있다. 또한 자금부족으로 인해 인력조달이 어려워 정규인력 1명과 자원봉사자(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 연합회 사무총장) 1명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가 직접 현장을 다니며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판매처는 작목반 위주로 45대 정도 보급되어 있으며, 2003년에는 6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판로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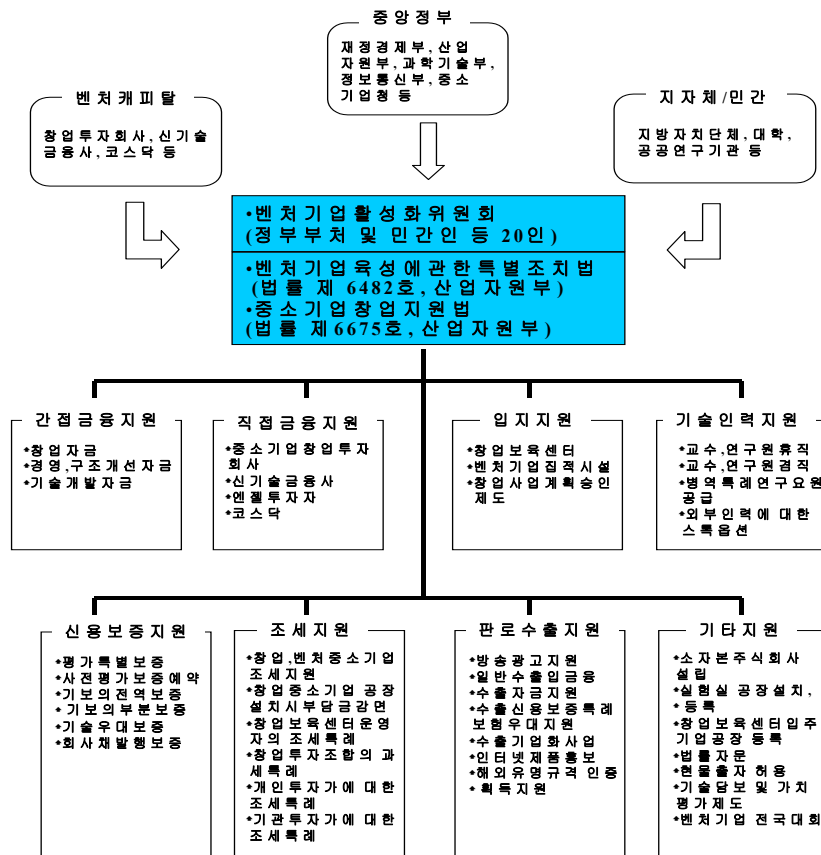
벤처농기업 관련제도 및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

벤처농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 왔는가? 벤처농기업도 크게는 벤처기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농림부가 별도의 벤처농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입초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관련제도와 정책을 살펴본 후 농림부의 벤처농기업육성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를 검토하였다.

1. 벤처기업 관련제도 및 정책

과거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기술혁신, 정보혁명 등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창업하면서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적 성장, 구조조정 이후 선진국형 산업구조 정착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정책이 도입되었다.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 지원 내역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벤처기업관련제도와 주요 지원정책



정부는 1997년 8월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482호, 2001.5.24개정)’을 제정하였다. 1998년 2월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총괄정책 부서로서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국’을 설치하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되 부처간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벤처기업정책협의회’ 및 ‘벤처기업활성화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 <표 5-1>과 같이 자금, 입지, 인력, 조세, 판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1.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중소기업청)

지원종류	주요지원내용
창업지원	• 창업자금의 지원 • 대학생창업동아리 운영, 창업경연대회, 창업스쿨개최 •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임직원 겸직 및 휴직, 실험실공장등록 허용 • 벤처기업창업자본금 인하(일반법인 5천만원, 벤처기업 2천만원)
벤처투자지원	• 벤처투자재원의 지속적인 확대(총 5,252억원 출자) • 연기금의 벤처기업투자 및 투자조합출자 확대 • Secondary Market 조성 및 확대 • 정부의 간접출자 방식 도입 • 유한회사 형태의 새로운 벤처캐피탈 제도 도입
입지지원	• 창업보육센터 지원확대(2002년 275개)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지정, 운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전국 20개)에 대한 지원 강화 • BI졸업을 위한 post-BI 건립지원(인천, 광주, 춘천과 공동)
조세지원	•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6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2년간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면제, 5년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50%감면) •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투자주식양도차익비과세, 출자금액 30%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비과세) • 엔젤 및 엔젤조합(투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30% 소득공제)
기술/인력지원	• 스톡옵션제도 실시 및 대상확대 • 병력특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판로지원	• TV광고시 규정요금의 70% 감면(한국방송공사) • 공공부문 물품조달을 인터넷벤처기업을 통해 추진(e-procurement)

1.1. 창업지원 정책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신상품, 신기술 등을 사업화 하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년 미만의 창업자에게 업체 당 연간 10억 원 이내의 창업자금(startup financing)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융자(연 5.9%)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창업자금은 1999년에 2,442개 업체에 7,57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02년 6월 현재에는 703개 업체에 대해 1,558억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미래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창업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현재 전국 222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518개 동아리(학생 수 12,000명)가 활동 중에 있다. 대학(원)생 창업경연대회 등을 통해 창업동아리가 개발중인 사업아이템을 공모·평가하여 우수 아이টে에 대해서는 초기개발비를 지원하여 사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창업현장(벤처기업) 견학프로그램과 해외 선진벤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5-2.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6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지원실적	2,442	7,575	1,032	2,115	1,274	2,600	730	1,558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002. 6.

표 5-3.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현황

구 분	'97~'98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지원동아리수 (지원예산)	76 (5억원)	50 (6억원)	81 (12억원)	51 (12억원)	40 (13억원)	298 (48억원)
선진벤처 해외 연수 지원	1회/12명	1회/12명	2회/24명	2회/29명	2회/25명	8회/102명
벤처창업현장연수	-	500명	907명	900명	1,300명	3,607명
벤처창업스쿨교육	711명	864명	957명	1,080명	277명	3,889명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002. 6.

2002년 현재까지 298개 우수동아리에 대해 4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선진벤처 해외연수는 8회에 걸쳐 102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벤처창업 현장연수는 3,607명, 벤처창업스쿨교육은 모두 3,889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²⁸ 사업타당성 검토나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인·허가절차 대행용역을 받아 창업하는 경우 1건당 용역대금 또는 절차대행 수수료를(50% 이내) 지원하고 있다. 즉, 사업타당성 검토의 경우 2,000천 원(벤처기업 2,500천 원), 공장설립 절차대행은 2,500천 원(벤처기업 3,000천 원), 경영 및 기술지도는 2,000천 원(벤처기업 2,500천 원)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6,822건에 대해 177억 원의 창업용역대금을 지원하였다.

²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수립, 경영·기술지도, 자금의 알선, 창업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전국에 약 143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교수·연구원들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²⁹ 교수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의 겸직(‘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6월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 교수 및 연구원 벤처기업이 각각 646개와 1,053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실험실공장등록(법 제18조의2)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공장등록(법 제18조의 3)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기업체등록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던 자본금규모를 벤처기업(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완화하였다. 즉 최저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법 제10조의2)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1.2. 벤처투자지원 정책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기업투자펀드에 출자하고 있다. 2002년 8월 현재까지 모두 217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5,252억 원을 출자하여 17,662억 원의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2002년 창업투자조합 출자 예산(1,500억 원) 중 잔액(797억 원)을 활용하여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추가로 결성하여 부품소재나 바이오 분야 등 첨단기술분야와 지방기업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²⁹ ‘교수·연구원창업’이란 교수 또는 연구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내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는 것을 말한다.

표 5-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창업투자조합 출자 실적

단위: 개, 억원

구 분	'87~'98	1999	2000	2001	2002.8	계
조 합 수	68	5	75	48	21	217
출자금액	812	271	2,246	1,220	703	5,252
결성규모액	4,193	632	6,726	4,020	2,091	17,662

자료: 주현, 전계서, 2002 및 중소기업청, 산업자원위원회 요구자료, 2002. 9.

또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기금, 보험, 금고 등의 재원을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형 자산운용 기관 포트폴리오의 일정부분(3~5%)을 벤처투자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

중소기업청은 500억 원 규모의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secondary fund)'를 조성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 투자자산의 회수를 위한 코스닥 이외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였다.³⁰ 또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직접 출자방식(전액 예산집행 방식) 이외에 정부의 재정출자 방식으로 Fund of Fund에 대한 간접출자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³¹ 또한 펀드매니저 중심의 벤처캐피탈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의 새로운 벤처캐피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³⁰ 중소기업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2. 11

³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형태로 2003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KEIF(korea entrepreneurship investment fund)를 설립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다산벤처를 통해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 입지지원 정책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立地)지원정책에는 창업보육센터지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 등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창업보육사업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중소기업청에서는 2002년 현재 293개의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여 3,623개 업체에 대해 창업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을 위한 post-BI 건립을 지원(인천, 광주, 춘천 등 3개 지자체와 공동추진)하고 있다.

표 5-5. 정부부처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2002년)

소 관 부 처	사 업 명	운 영 실 태			입주업체
		계	가동	설립중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293	260	33	3,623
정보통신부	S/W기술센터	48	48	-	643
과학기술부	기술창업보육센터	1	1	-	150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지원센터	2	2	-	124
합 계		344	311	33	4,540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002. 6.

표 5-6.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6	계
지 정	24	50	102	31	14	221
취 소	16	22	32	5	-	75
현 재	8	28	70	26	14	146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002. 6.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은 교통, 정보·통신,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된 도심의 민간빌딩 등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지원하여 벤처기업에게 제공토록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입지공급을 원활히 하고, 창업 및 사업화 비용을 절감시키는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3층 이상 건물의 일정구역(1,500m² 이상)에 6개 이상 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146개(지정 221개, 취소 75개)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해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취득세·등록세 등은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토세는 50%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주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벤처기업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 24개(2002년 기준)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용장비, 초고속통신망, 지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확충이나 기반시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2001년에 12개 지구에 300억원 지원)하거나,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지방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1.4. 조세지원 정책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6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2년간 등록세·취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면제, 5년간 종합토지세·재산세 50%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표 5-7> 참조).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

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통장·증서·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출자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며, 벤처

표 5-7.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구 분	관련법률	조 세 지 원 내 용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인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통장·증서·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지방세법 제280조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100% 감면 - 대도시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 증가 배제
취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280조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 감면 - 대도시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 증가 배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세(등록세·취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액(세액감면액의 20%)을 면제
재산세 종합 토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5배 증가 배제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주식교환(SWAP)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1.5. 인력지원 정책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연구·기술 및 경영인력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연구요원제도 개선,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 옵션제도 도입 및 교수·연구원의 임·직원채용지원제도(교수 등의 겸직허용)등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병역특례연구요원제도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기술인력(석사 이상 학위취득자)을 벤처기업에게 공급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이러한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기존의 업체 당 석사 3인 이상에서 석사 2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병역특례전문기관 지정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였다.

표 5-8.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배정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대기업	1,362 (43.2)	1,108 (36.9)	900 (25.9)	395 (13.2)	519 (15.6)
중소·벤처기업	830 (26.4)	943 (31.5)	1,396 (40.2)	1,751 (58.4)	1,960 (59.0)
국·공립 연구기관 등	958 (30.4)	949 (31.6)	1,179 (33.9)	854 (28.4)	845 (25.4)
합 계	3,150 (100.0)	3,000 (100.0)	3,475 (100.0)	3,000 (100.0)	3,324 (100.0)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002. 6.

또한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2년) 이내에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옮겨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체가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을 수월하게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8>에서 같이 중소기업에 배정된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은 1998년 26.4%에서 2002년에는 59%로 증가하였다.

벤처기업에 우수한 연구 및 경영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스톡옵션 대상을 당해 법인 임·직원 이외에 교수·연구원·회계사·변호사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 법인으로 확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하였으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인력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고급연구인력의 벤처기업 경영 및 기술개발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수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겸임·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1.6. 판로지원 정책

정부는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 제품 중 KT, NT, EM 제품 등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해³² 정

³² ①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국산신기술인정제도) :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신기술에 부여한 마크
 ② NT(New Technology, 신기술인정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신기술)을 상품화한 경우 이를 정부(기술표준원)가 신기술 개발 제품임을 인정하는 제도
 ③ 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and Materials, 자본재 국산개발 우수품질인증제도) : 기계, 기구, 소재의 자본재 중 그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

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하도록 하고 있다.

<표 5-9>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는 2001년도 총 구매액(67조 원) 중 62.6%(42조 원)를 중소기업에서 구매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함께 TV 광고 시 규정요금의 70%를 감면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주요 해외거점(한국벤처지원센터(미국), 한국 IT벤처지원센터(일본) 등) 및 민간거점(종합상사, 연구원 해외센터 등)을 활용하여 세계 주요 지역에 해외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표 5-9.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01년도 실적			2002년 계획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국 가 기 관	29.0	16.7	57.6	31.7	17.7	56.0
지방자치단체	16.3	14.8	90.9	16.6	14.9	89.8
정부투자기관	12.1	5.8	48.2	9.8	4.8	49.6
특 별 법 인	9.3	4.4	46.9	9.3	4.1	43.4
합 계	66.7	41.7	62.6	67.4	41.5	61.7

자료: 중소기업청, 2002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공고 제2002-46, 2002. 4.

2. 농림부의 벤처농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음식·숙박업 등 일부

사치향락을 조장하거나 비생산적인 업종을 제외한 일체의 업종이 벤처기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관련 산업분야도 벤처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의 특성상 일반 벤처기업육성 정책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농업벤처', 또는 '벤처농업'이란 별도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농림부는 1998년부터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말에는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후 2002년 초부터는 '벤처농업'이란 별도의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1. 농림기술개발 연구지원

농림부는 농촌진흥청과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해 1994년부터 첨단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개발, 그리고 1998년부터는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획연구과제 및 농업인 개발과제가 있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표 5-10>과 같다.

한편,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의 산·학·연 협동연구로 추진되어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나 기술이전 등의 형태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복덕방(농림기술사이버시장)을 통해 연구결과물의 사업화(자본과 경영알선)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협동연구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이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 기술 개발, 친환경농업 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5-10.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사업구분	지 원 대 상 기 술 분 야	지원한도	추진형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영농, 영림 현장에서 농민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기술 등 개발	3년/2억원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의 산·학·연 협동연구
첨단기술개발과제	• 생명공학,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기술을 개발하여 농림업의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제고하는 기술	3년/5억원	
기획연구과제	•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일관기술 개발과제	3년/10억원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사업화의 가능성이 크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실용성이 높은 기술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기술개발, 친환경 농업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등	3년/3억원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동연구
농업인 개발과제	• 농업인에게 필요한 특수농법 및 신기술 개발 과제	2년/3천만원	농업인 중심의 산·학·연 협동연구

표 5-11.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지원실적

단위: 과제수, 억원

사 업 구 분	1994~1997		1998		1999		2000		2001		계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현장애로기술개발	555	502.6	377	105	362	94.3	383	116.5	374	109.6	1,356	928
첨단기술개발	383	689.2	350	261	403	295.1	401	271.4	434	307.7	772	1,824.4
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	-	-	11	6.8	26	15	38	20.7	63	34.8	86	77.31
합 계	938	1,191.8	738	372.8	791	404.4	822	408.6	871	452.1	2,367	2,829.7

주: 농업인개발과제와 기획과제는 각각 현장애로기술과제와 첨단기술 개발과제에 포함됨.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비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총 2,367과제에 대해 2천8백억 원을 지원하였다. 벤처형 중소기업개발과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86과제에 대해 77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되었으나, 총 과제수의 3.6%, 총 연구비의 2.7%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2.2.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자금지원

농림부는 농업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제1호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2002년에도 200억 원 규모의 농업투자전문조합을 추가로 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1호 조합인 ‘MAF 무한 AgroBio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농림부 출자금액 33억 원, 민간자본 출자금액 67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규모로 결성되어, 업무집행조합 무한기술투자(주)에 의해 주식인수, 전환사채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2월 유전공학 서비스 전문업체인 ‘g-TAC 바이오 메디칼’에

표 5-12. 농업전문투자조합 구성 현황

구 분	1호 조합	2호 조합	3호 조합
조 합 명	MAF 무한 AgroBio 벤처투자조합	-	-
결성연도	2001. 12. 20	추진중	추진중
결성금액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정부출자액	33억원	33억원	33억원
투자 분야	농업 및 바이오	농업 및 바이오	농업 및 바이오
운용 회사	무한기술투자	-	-

자료: 농림부, 2001년도(제2차) 농업전문투자조합결성 제안요청서, 2001. 11.

대한 첫 번째 투자를 개시하였다. 앞으로 생명공학, 농업투입재분야, 식품분야 등 농업분야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의학·의약분야, 환경생물공학분야, 생물화학공업분야 등 바이오 분야에 40% 이내를 투자할 계획이다.

표 5-13. 농업전문투자조합 투자대상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부기술 및 사업분야
농업분야	생명공학분야	○ 유전공학 기술 - 동식물유전자재조합분야 - 세포융합, 핵치환기술 ○ 단백질공학기술, 효소공학기술, 동식물세포배양기술, 발효공학기술, 수정란이식기술 등
	농업투입재분야	○ 비료(생물비료 등 포함), 농약(생물농약 등 포함), 사료(사료첨가제 포함), 사료자원이용효율제고기술개발, 종자생산과 육묘, 첨단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식품분야	○ 천연 및 기능성식품소재, 발효식품, 첨가물, 전통식품 및 건강식품, 대체감미료, 식품용효소분야기술
	수의분야	○ 동물약품, 동물백신, 동물질병진단키트 등 기자재
기타바이오분야	의학·의약분야	○ 동식물로부터 유용물질을 획득, 활용하는 원천기술 또는 동식물에 적용 가능한 생명공학기술을 원천기술로 사용하는 바이오 의약분야
	환경생물공학분야	○ 축산분뇨, 농업오폐수 등 처리기술, 미생물제제, Bio-remediation(생물학적 오염현장처리), 탈취제 등
	농산물유통분야	○ 농축산물전자상거래 분야 등
	생물화학공업분야	○ 농축산물이용 산업신소재개발기술, 향생제, 유기산, 아미노산, 향료 및 색소, 바이오폴리머, 생체재료 등
	생명공학지원사업분야	○ 세포배양, 생물반응기, 분리정제공정기술, 실험동물 및 안전성 실험동물의 계통유지기술, 품질검정기술, 실험동물대량생산기술, 환경 및 독성실험기술, Biochips, Nano-biotechnology 개발연구

자료: 농림부, 농업전문투자조합 운용 주요기준, 2001.11.

그러나 농업의 특성상 투자의 수익성이 낮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연 농업전문투자조합을 통한 농업부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3. 벤처농업육성 사업

2.3.1. 벤처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벤처창업보육사업은 기술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벤처농업의 창업과 보육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 등 보육여건은 우수하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대학,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에 센터운영비, 입주업체교육비, 설비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농업관련 창업보육센터는 3개가 있으며, 모두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창업보육사업자로 지정되어 시설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농림부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2002년에 개소하여 농업생산 및 유통, 농업관련산업 농기업체 등 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1업체 1인 전담컨설팅제도와 2002년 8월부터 4회에 걸쳐 벤처농기업 창업관련 전문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에 개소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는 농업생명과학분야에 특화하여 9개의 입주업체와 9개의 원격보육업체에 대해 1업체 1인 전담교수제를 실시하고, 각종 실험실이나 실험포,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월 삼성증권, 제일제당, 녹십자벤처투자, 삼일회계법인 등과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첨단농산업창업보육센터’는 2002년에

개소하여 8개의 입주업체와 6개의 비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공동운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산벤처나 무한기술투자(주)등과 연계하여 투자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농업전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비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원격창업보육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이들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관리비(창업보육센터 전문보육 매니저 보수 보조), 창업활동 지원비(법률, 회계, 경영, 마케팅 등 창업관련 교육), 통신망이용료(소속기관 공통망과 분리된 보육센터 전용회선), 설비 유지·보수료(전용망 등 A/S 비용), 기타 창업보육을 위한 자체개발사업 등에 대해 약 4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표 5-14 농업관련 창업보육센터 현황

구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칭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첨단농산업창업보육센터	농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
개소 일자	2002. 2	2002. 10	2001. 8
입주 업체	• 입주 : 9개 업체	• 입주 : 8개 업체 • 비 입주 : 6개업체	• 입주 : 9개 업체 • 원격 보육 : 9개 업체
지원 내용	• 시설 및 장비 지원 • 기술 및 경영지원 • 자료 및 정보지원 등	• 좌 동	• 좌 동
보육 분야	• 농업생산 및 농산물 유통분야 • 농업관련 산업 분야	• 좌 동	• 농업생명과학분야
특기 사항	• 1업체 1인 전담컨설팅 제도 • 전문강좌실시(4회)	•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성 • 운영위원 공동운영 형태	• 1업체 1인 전담자문교수제 • 삼성증권, 제일제당, 녹십자 벤처투자, 삼일회계법인 등과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

2.3.2. 농업벤처투자박람회 개최

농림부는 2002년 11월 20일 창업단계 및 유망 농업벤처기업가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엔젤 및 벤처캐피탈에 대해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농업벤처기업가, 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벤처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농업벤처투자박람회는 당초 참가신청을 한 12개 업체 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8개 업체에 대해 투자유치관련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방법에 대한 강연회를 실시하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상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5-15. 농업벤처투자박람회 참가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내 용	비 고
송광 설중매	서명선	토종매실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첨단농산업벤처창업보육센터 비입주
탐라야채마을 영농조합법인	최경숙	탐라오가피 바이오텍 기능성 음료개발	
(주)바이코시스	박재성	Sage-Green 생산시설 구축	
(주)세실	이원규	천적곤충을 이용한 농업해충의 생물적방제	
(주)에이피테크놀로지	신철수	제조업 단백질 의약품의 고효율 저비용 생산 공정 개발	농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 입주
알앤엘생명과학(주)	라정찬	동물용 의약품 마케팅 강화 및 기능성식품 출시	농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 입주
(주)엠팜	전수식	농산물전자상거래를 위한 솔루션 개발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
(주) 에이지플러스	김상기	미세은(銀)입자를 이용한 살균성 천연비료	농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 원격 입주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내부자료, 2002.

이러한 투자유치설명회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벤처캐피탈로 하여금 농업벤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벤처농기업체들의 투자유치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3.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벤처농업 분야에 있어서 창업 팀 구성과 농업인 등 예비창업자의

표 5-16.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참가 아이템

제안자	벤처창업아이템	비고
김혁	NSM무살균 버섯재배	장려상
김상기	천연미량요소복합비료 및 농약	
김상우	암사슴뿔 생산기술을 이용한 폐경기여성 골다공증 예방제품 생산	
라영수	에어튜브식 비닐하우스	
문상호	화훼종묘 생산(백합 및 거베라)	
박상훈	고분자 유기 응집제를 이용한 토양누수방지제 개발, 보급	
신원기	병구보다 큰 선전광고물(우리농산물)이 유입된 병	
이원규	천적곤충을 이용한 농업해충의 생물적 방제	장려상
이종노	허브의 천연향을 이용한 Air 충전식 공기청향 스프레이	
정경순	한방 양념육 및 양념소스	
최근학	도심 가정용 채소밭 상품화	우수상
최석기	신선버섯·산야채 생산, 즉석가공 및 체험마케팅 패키지사업	
홍승욱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농사짓는 eCyberFarm.com	최우수상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내부자료, 2002.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성공률 제고, 고부가가치 지식농업 육성 및 농업의 고도화, 첨단화를 위해 예비창업자(농업인, 학생, 교수, 연구원 등)로부터 창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농업분야 및 바이오 분야에 우수창업아이템 제안자를 선정하는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농업분야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한 창업과정을 지원하고 창업 후에는 농업벤처투자박람회 참가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2002년 7월에 개최된 제1회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에는 총 51편의 아이템이 출품되어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3개의 아이템(<표 5-16> 참조)이 1차로 선정된 후 정밀검토를 통해 최종 4개 업체가 우수한 창업아이템으로 선정되었다.

제1회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의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인 최근학 씨와 김혁 씨는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으로 개념(Ⅲ)의 벤처농가가 개념(Ⅱ)의 벤처농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4. 기타 벤처농기업육성 관련사업

벤처농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농림업의 창업이란 점에서 후계 농업인육성과 전업농 육성, 그리고 귀농자와 신지식농업인 지정 등이 있다. 또한 농가를 경영체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작목반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있으며 그 밖에도 농산물가공산업, 농촌특산단지, 관광농원 등의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지원사업들이 있다.

이들 사업의 목적이 ‘벤처농기업의 육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이 창업하는 벤처농기업체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이나 농정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업으로 포함하였다.

표 5-17. 농림부의 농기업육성 관련사업 추진실태

단위: 명, 개소

구 분		1997이전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개 별 농 가	신지식농업인	-	-	-	78	13	26	117
	후계농업인	88,643	8,526	7,862	4,819	4,674	3,270	117,794
	전업농	30,882	40,347	1,873	9,058	7,467	3,031	92,658
	신규귀농자 (40대 미만)	3,825	1,308	5,575	3,644	971	647	15,970
	소계(명)	123,350	50,181	15,310	17,599	13,125	6,974	226,539
경 영 체	작목반	84,253	24,091	20,540	20,602	20,919	17,747	17,747
	농업회사법인	1,419	1,595	1,670	1,670	1,670	1,627	1,627
	영농조합법인	3,487	4,214	4,711	4,711	4,711	6,288	6,288
관 련 사 업	농수산물가공산업*		1,030	34	10	7	8	1,089
	농촌특산단지	664	92	31	22	8	14	681
	관광농원	322	60	24	0	0	1	353
	농촌여성일감맞기	47	10	10	18	20	21	126

주: *는 1997년부터의 사업실적임.

2.4.1. 신지식농업인 지정

농림부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지식농업을 주도할 신지식농업인 양성과 지식농업의 확산 및 육성기반조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말 신지식인으로 6명을 추천한 이래 2002년까지 132명(2002년에 15명 추가)의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하였다.

신지식농업인은 농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정도(창의성), 습득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정도 또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실천성),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창출 정도)와 전통 문화,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부가가치 창

출성),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³³

선정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해서는 선도농업인으로 지정하여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농어촌발전 선도농업인 신용보증준칙 개정, 2001.3.5)하고, 농업경영종합자금 신용평가 및 농업경영 컨설팅 시 우선권 부여 등의 간접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신지식농업인의 생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지원과 해외선진농업·식품박람회 참관 지원으로 신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지식농업인의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이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위한 정책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단순한 정책홍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벤처농기업육성과 관련정책의 연계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4.2. 신규 귀농자 지원

농림부는 귀농자(특히 35세 미만의 귀농자)를 농업부문의 새로운 잠재적 창업자로 인식,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정착자금뿐만 아니라 귀농(歸農)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의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연간 2,000여명이 귀농하였으나, 1998년에는 6천 4백여 명, 1999년에는 4천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연간 약 천여명이 농업부문으로 전입하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의 젊은 층(53.7%)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5%에 불과하다. 1990년 이후 전체 귀농자들을 작물별로 살펴보면, 쌀농사 등

³³ 농림부,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 계획, 2001. 4.

표 5-18. 연도 및 연령별 귀농 실태

단위: 가구수

연 령	계	'90~ '94	'95	'96	'97	'98	'99	'00	'01	'02.6
29세 이하	1,762(8.7)	161	96	111	105	809	361	65	38	16
30~39세	9,098(45.0)	1,106	338	681	711	3,222	2,077	515	316	132
40~49세	5,427(26.9)	530	206	596	492	1,544	1,206	391	293	169
50~59세	2,862(14.2)	358	176	477	334	659	422	155	187	94
60세 이상	1,056(5.2)	208	106	195	199	175	52	28	46	47
합 계	20,205(100.0)	2,363	922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458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내부자료, 2002. 6.

경종 11,092(55%), 원예 2,679(13%), 축산 2,419(12%), 과수 1,845(9%) 등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4,598 가구의 귀농자에 대해 80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1년부터 35세 미만의 귀농자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지원대상(430명)에 포함하여 200여 억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였으며,³⁴ 2002년에는 1,100여명에게 550억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농 전 사전준비와 성공적 귀농정착(歸農定着)을 위해 농림부와 농협의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정보 등을 제공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상담소'를 설치하여 귀농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³⁴ 병역필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면제자, 여성으로서 35세 미만인 자 중 ① 농업계학교 졸업(예정자) 5년 미만인 자 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 ②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거나 복무중인 자 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 ③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규정(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1. 12)

밖에도 ‘전국귀농운동본부’, ‘더불어살기생명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를 통해 2001년에는 2,500명, 2002년에는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 관련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2장 2절에서 제시된 벤처농기업의 개념에 의해 농업분야 신규창업이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신규 귀농자를 벤처농업인 또는 벤처농기업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4.3. 농업법인육성사업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근대적인 가족농 구조를 가계와 경영의 분리, 경영규모확대, 상업적 경영마인드 도입 등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이 농업법인 육성사업이다.

그 동안 실적위주의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2001년 말 현재 농업법인 수는 총 7,915개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나, 사업준비중·휴업·출자자 개별운영 형태의 미 운영 사업체가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39.8%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법인의 총 출자자수는 60,649명(법인 당 19명)이며, 출자금은 5,760억 원(법인 당 184백만 원), 종사자수는 총 28,849명(사업체 당 9명)인데 출자자의 대부분이 농업인 (96.6%)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자금은 현금출자 78.7%, 현물출자 2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근 종사자는 17,820명으로 61.8%이며, 임시·일일종사자는 11,029명으로 38.2%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규모별로 보면 상근 종사자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는 1,806개(57.4%)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22개(0.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01년 12월말 현재 운영 중인 농업법인에게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4,549억 원이며, 이들 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 잔액은 5,383억 원이다. 법인 당 정부보조금

표 5-19. 농업법인사업체의 운영실태

단위: 개소, %

구 분	계	정상 운영	미 운 영			
			소 계	출자자 개별운영	사 업 준비중	휴 업
2000년	7,208	3,366	3,842	1,842	674	1,326
2001년	7,915	3,146	4,769	2,021	679	2,069
(구성비)	(100.0)	(39.8)	(60.2)	(25.5)	(8.6)	(26.1)
- 영농조합법인	6,288	2,348	3,940	1,571	643	1,726
(구 성 비)	(100.0)	(37.3)	(62.7)	(25.0)	(10.2)	(27.5)
- 농업회사법인	1,627	798	829	450	36	343
(구 성 비)	(100.0)	(49.0)	(51.0)	(27.7)	(2.2)	(21.1)

자료: 통계청, 2001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결과, 2002. 9.

은 231백만 원이며, 정부융자금은 304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³⁵

결국, 농가를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법인 육성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농업법인들의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60%가 넘는 법인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화 된 전문경영체가 양성되고,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과 가공 및 유통 등 농업관련산업에 참여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법인육성정책의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4.4.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한편 농산물가공이나 유통 등 농업관련산업체 중 농업인에 의해 운영되는 일부업체는 농림부의 정책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³⁵ 통계청, 2001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결과, 2002. 9

여기에는 전통식품육성과 산지일반가공 등 농산물가공사업, 농촌특산단지, 농촌휴양자원개발, 농촌여성 일감맞기 등의 사업이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의 경우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보조 및 융자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로는 농가 5호 이상이 공동 출자하는 공동조직,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등과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 그리고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등이며, 1989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1,081업체에게 2,76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은 농촌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까지 681개 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농원의 경우 2001년까지 모두 353개를 조성하여 1,23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휴양단지는 9개 지구에 대해 166억 원을 지원, 민박마을은 275개 지구에 대해 266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 외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여성인력 개발을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149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농가나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업과 겸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농가의 농외활동과 농외소득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즈니스로서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이들 사업이 시장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산업의 발전 없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가공·유통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벤처농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사업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벤처농기업 관련 정책의 문제

벤처농기업정책의 문제는 크게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농업부문 적용에 따른 문제와 농림부가 새로이 도입하는 소위 벤처농업육성사업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문제

벤처기업육성 관련정책은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여 지원시책의 적정성·시의성·효율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책간에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 지원정책이 중복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지출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복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지원정책이 시행기관마다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간에 사전·사후적으로 정책조정이 없이 추진됨으로써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입주업체 입장에서 볼 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표 5-1>과 같이 창업지원과 벤처

투자지원, 인력지원, 입지지원, 조세지원, 판로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정책의 대부분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 5-20.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과 평가분야

평 가 기 관	주 된 평 가 분 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분 야
기술산업보증기금	전 분 야
한국과학기술원	메카트로닉기술, 신소재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밀화학·공정기술, 신에너지기술, 항공·우주·해양기술, 교통기술, 환경·주택기술, 원천요소기술, 농업기술, 식품가공기술 등
한국과학기술 평가원	기계·설비기술, 원자력·자원·에너지기술, 대형복합기술, 생명공학기술, 소재·물질·공정기술, 공공복지기술, 원천요소기술 등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산업디자인분야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철강재료·비철금속·주조기술, 요업기술, 열·표면처리기술, 용접·금형기술, 산업기계기술, 계측·제어기기, 유·무선통신기술, 기초화학, 직물·염색가공기술, 환경제품기술, 섬유제품기술, 고분자재료 및 제품기술, 광응용기기기술, 조선 및 기자재기술, 열·유체기계기술 등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의약, 의료용구, 화장품, 식품 등보건산업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정보통신분야
한국벤처연구소	컨설팅, 인터넷(신유통, 무역, CP 등 인문사회지식 서비스 분야), 관광, 영상, 음반, 교육, 기타서비스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금속·고분자·세라믹 재료 및 부품, 컴퓨터 H/W·S/W 및 응용, 제어계측 및 자동화, 기계 요소, 환경 및 오염방지, 생체·인공촉매, 정밀 화학, 생물자원·유전자 등
산업기술정보원	화학·신소재, 생명과학, 금속·재료, 환경·에너지, 전기·전자, 기계 등
한국관광연구원	관광
게임종합지원센터	게임

자료: 중소기업청, 2002c.

농업부문의 창업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정책 적용대상 범위가 IT, BT산업, 신소재개발 등 첨단기술개발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서 농산물·식품가공·농용자재·관광산업 등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은 정책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한계가 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기술평가를 통한 인증이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중에는 농업이나 농업관련산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농업관련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많다(<표 5-20> 참조).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농업관련산업분야의 기업창업희망자가 기술경영지도나 각종 창업관련 정보를 입수하거나 창업보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 큰 어려움이 있다(<표 5-21> 참조). 또한 창업보육센터들의 보육역량이 충분히 양성되지 못

표 5-21. 연도별·권역별 창업보육센터 지정 현황(중소기업청)

단위: 개

연 도	수도권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대구 울산·경상	강원·제주	계
1997	3	3	2	3	1	12
1998	3	4	4	5	2	18
1999	39	19	17	32	5	112
2000	29	22	14	24	8	97
2001	14	6	4	10	5	39
2002	2	2	2	7	2	15
합 계	90	56	43	81	23	293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2002. 6.

표 5-22. 다산벤처의 업종별 투자실적(2001년 9월말)

단위: 업체수, 백만원, %

구 분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금속	광학	화학	바이오	계
업체수	14	17	4	3	3	7	48
투자금액 (비중)	6,190 (29)	11,465 (35)	1,820 (8)	4,145 (6)	1,180 (6)	2,200 (16)	27,000 (100.0)

자료: 산업연구원, 2002에서 재인용.

하여 저렴한 사업공간의 제공 및 일부 기자재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벤처농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다산벤처주식회사의 경우 2001년 9월말 기준 48개 업체에 27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전기, 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은 전무하다. 더구나 투자업체 중 지방업체도 겨우 31%에 불과하였다.

이는 농업이나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창업자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낮다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특성상 벤처투자회사의 자발적인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특성과 실태를 반영한 별도의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2. 벤처농기업육성사업의 문제

농림부는 2001년 12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2002년 5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동년 7월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개최, 동년 11월 농업벤처투자박람회 개최 등 일련의 벤처농기업육성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문제를 깊게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이들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적절한 정책수단과 추진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벤처농기업의 육성은 농림업의 신규창업, 농림업의 전문경영체 양성, 농업관련산업의 육성이란 점에서 귀농사업이나 신지식농업인 지정, 법인체 육성, 그리고 농산물 가공·유통 및 서비스산업육성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이들 사업과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하다.

농림부는 199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표 5-11> 및 <표 5-23>과 같이 현장애로기술과 첨단기술, 그리고 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을 위해 1994년~2001년 기간 중 약 2,830억 원의 예산으로 2,367과제를 수행하였으나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나 농가에

표 5-23.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 활용실적(2002년 4월 기준)

단위: 과제수

사업완료 연 도	기 술 활 용 내 역						산업재산권	
	계	산업체· 농가 이전활용	산 업 체 이전추진	교육지도 활 용	정책자료 활 용	활 용 추진중	출원 건수	등록 건수
1995	15	1	4	7	3	-	2	-
1996	78	18	23	17	20	-	36	18
1997	141	23	51	40	27	-	113	57
1998	239	44	98	63	19	15	187	103
1999	278	83	98	63	12	22	165	61
2000	355	94	114	43	6	98	179	45
2001	321	77	158	28	13	45	103	16
합 계	1,427 (100.0)	340 (23.8)	546 (38.3)	261 (18.3)	100 (7.0)	180 (12.6)	785 (55.0)	300 (21.0)

자료: 농림기술관리센터, 내부자료, 2002.

이전한 것은 약 340건에 불과하다. 이는 비록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업에 필요한 시설투자나 원료확보를 위해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전문기술이나 경영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인 부진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농림부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3개의 투자조합에 26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하여 농업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위험과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특성상 민간투자조합의 자발적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고 하나 이를 사업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농가구성원들의 겸업활동을 촉진하고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산물가공사업과 특산단지육성, 그리고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등의 관련산업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일변도의 육성정책으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하여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능력 제고와 새로운 정보제공 등이 취약한 실정이다.

더구나 농림부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농림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벤처농기업체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목표나 정책방향 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벤처농업의 개념과 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정대상만 하더라도 농기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중요성 및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의 개념을 경종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임업에 한정하여 다양한 관련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수

단에 있어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근대적인 영세소농과 전업농, 그리고 일부 가공 및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영농회사까지 평균적인 농가로 상정하고 하나의 ‘농정 틀’로 접근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농업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벤처농업의 창업보육사업은 ‘농촌인력과’에서, 그리고 각종 가공 및 유통사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은 ‘식품산업과’를 비롯한 각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제 6 장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방안

벤처농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나 전문경영체로 대체, 그리고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벤처농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는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1. 벤처농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농기업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 벤처농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분야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농기업을 기업형태와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I)와 비록 벤처기업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중소기업(II), 그리고 비록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사업은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기업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벤처농업(III)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들 벤처농기업의 유형별로 각기 대상과 정책목표를 달리하기 때문에 당면문제나 정책과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중소기업체들은 어떻게 하든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정부가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되며, 아직 농가에서 겸업형태로 운영되는 벤처농업의 경우 여하히 독립된 전문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일반 농기업과는 달리 벤처농기업체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여 틈새시장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1>과 같다. 먼저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권리화해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이나 국내외 시장상황과 경쟁업체의 실태는 물론 창업절차나 관련정책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창업희망자 스스로도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실천 가능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⁶

《창업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금과 전문인력, 생산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품을 생산, 이를 시장에 출하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³⁶ 일반적인 창업절차에 관해서는 <부록 III> 참조.

표 6-1. 벤처농기업의 창업단계별 당면문제

창업과정	단계별 목표	당면문제
사업계획 단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수립	○ 관심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시장정보 부족 ○ 창업절차, 세제, 기타 관련정책 등에 관한 정보부족 ○ 자금조달, 인력확보 등 사업전략수립의 어려움 ○ 전문경영인으로 자질함양 기회 부족
창업단계	자금과 전문인력, 설비를 확보하여 상품생산 및 시장출하	○ 창업자금 조달 문제 ○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구성 ○ 판매망 구축 ○ 사업자등록 등 복잡한 행정절차
성장·발전 단계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촉, 시설과 인력 확충, 신제품개발 등	○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 판로확대 문제 ○ 기술 및 경영능력 부족 ○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나친 규제 ○ 시장정보 및 관련정보 부족 ○ 신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판매망구축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와 판촉을 강화하고 시설과 인력 확충, 신제품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 및 운영자금부족과 판로확보 문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 및 경영능력 부족문제 등에 부딪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제5장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정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 산업의 속성상 구조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서 농업관련산

업분야의 벤처기업지정 및 육성이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에도 이와 같은 벤처농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단편적인 지적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김경덕 등(1998)은 농업 분야에서 벤처기업의 발전이 저조한 이유를 농업의 특수성상 벤처식 접근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벤처캐피털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벤처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할 수 있도록 농림기술관리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에 관한 정보와 전문인력 및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벤처농기업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 허용 및 규제완화 등 농업생산자조직 및 관련단체가 기업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의 투자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벤처캐피털’의 설립과 같이 벤처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금지원방식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밖에도 농업부문 벤처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체계의 확립을 위해 농업부문 테크노파크의 조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정기환(2000)은 농림업분야 벤처기업 지원의 문제점으로 ① 농림업분야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미흡, ② 농림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재원 부족, ③ 개발된 농림기술의 실용화 어려움, ④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이용의 어려움, ⑤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부재, ⑥ 농림업분야 기술을 평가할 기술평가기관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①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지원 확대, ②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육성 위한 투자기금 설립, ③ 농림업분야 창업보육기능 강화, ④ 농업생산 및 유통조직의 벤처기업

표 6-2. 벤처농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농림업분야 벤처기업 육성방안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지 원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확대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벤처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확대 ○ 과제당 연구비 지원규모 및 연구범위 확대
	개발된 기술 이전을 통한 벤처기업육성 강화	○ 농림기술관리센터의 기술판매 및 구매를 중개하는 기술복덕방 운영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료 면제 ○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상품화할 경우 추가적인 R&D 자금지원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육 성 위한 투자자금 설립	농림업신기술창 업투자조합 결성	○ 농림업신기술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농림업분야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지원을 강화
	농림기술관리 센터의 신기술 창업자금의 하나로 출자	○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연구개발자금을 순수 R&D 자금과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자금으로 이원화
농림업분야 창업보육기 능 강화	농림기술창업 보육센터 설립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농과대학, 각도 농업기술원 등에 업종별 창업보육센터 설립 - 전문인력교환, 정보 및 기술지원, 연구시설과 사무실의 공동이용
	농림분야 연구 자의 창업지원	○ 국공립대학 및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속원이 창업하고자 할 때 겸직 및 휴직 허용
농업생산 및 유통조직의 벤처기업 창업 지원	○ 영농조합 및 영농회사의 생산활동을 벤처기업 활동으로 범주화하여 농산물 상품화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영농조직을 경쟁력 있는 기업조직으로 개편 ○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을 개발했거나 기술을 이전받은 영농조직들이 벤처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기술 및 자금지원 - 각도 농업기술원 및 농과대학에 설립될 창업보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영농조직이 벤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농림기술평 가기관의 지 정	○ 농림업분야 기술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이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분야 기술평가기관 지정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기술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벤처기업인증에 필요한 기술평가기능 담당	

자료: 정기환, 농림업분야 벤처기업 실태와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방안(2000) 요약.

창업 지원, ⑤ 농림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표 6-2>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에서 농림부는 2001년 말 농업전문투자조합을 설치하고 2002년 4월부터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원과 농업벤처투자박람회 개최, 그리고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등 벤처농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대상이 되는 벤처농업, 또는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들 벤처농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목표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며 정책대상의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제3장 및 4장의 실태와 문제 분석을 통해 부딪히는 절박한 문제는 과연 벤처농기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농업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벤처농기업체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가 추진하는 벤처농업육성이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더구나 농림부가 추진한 농업벤처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투자박람회가 실제 벤처농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농정차원의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목표와 대상, 수단 등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까지 단계별로 부딪히는 문제 즉 ① 아이디어의 발굴과 구체화를 위한 연구개발, ② 전문경영체로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③ 창업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④ 창업보육사업의 확대, ⑤ 자금과 판로부족 등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그리고 ⑥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농업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벤처농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농기업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제5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목표와 대상이 불분명하여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첫 번째 의문은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이 과연 필요한가?”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점이다. 왜냐하면 농업은 자본규모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산재한 농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정책으로는 이를 지원·육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분야는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률이 높은 반면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관련산업은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의 선택여지가 없는 영세소농의 생계와 농촌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표 6-3. 벤처농기업체의 사업주체 및 새로운 사업영역

사 업 영 역	개별농가	농가공동 (영농조합 등)	기업체
농축수산물의 생산	◎	○	
농축수산물의 가공	△	○	◎
농축수산물의 유통 및 서비스		○	◎
농용자재 생산 및 유통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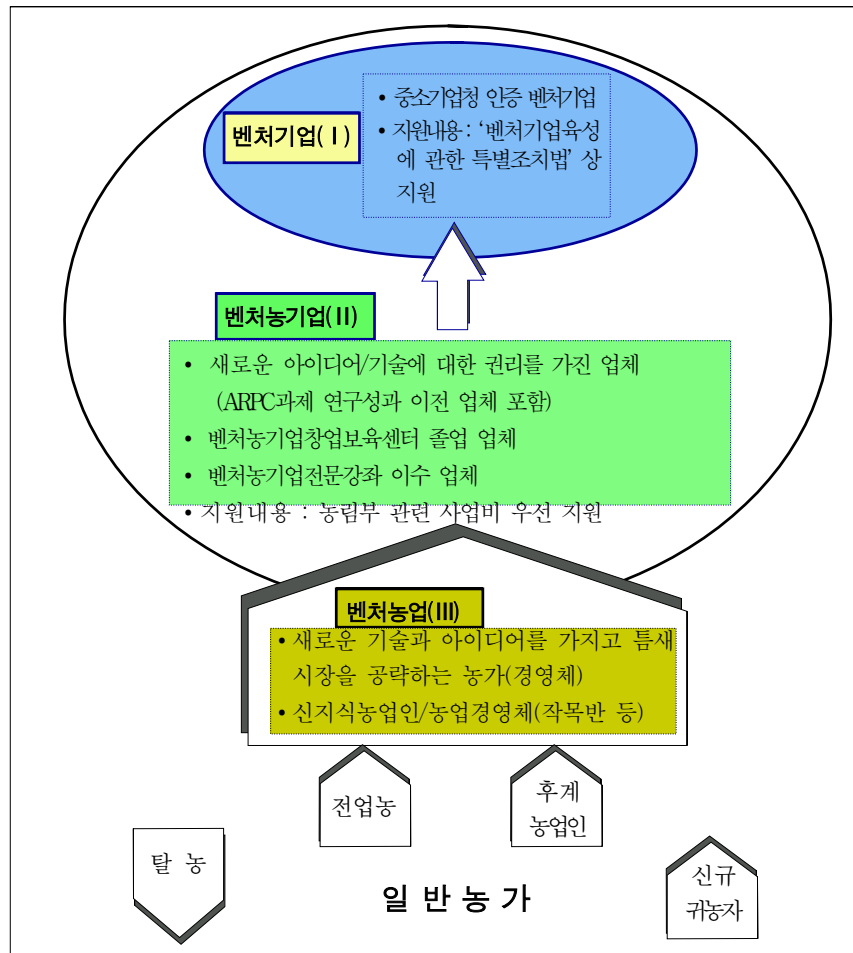
◎ 주업(주도적 참여), ○ 겸업(부분적 참여), △ 부업(미미한 참여).

특히 벤처농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농업의 질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과 정책대상, 정책수단을 정비하여 농정차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전통농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 할 수 있는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표 6-3>과 같이 농업을 단순한 농업생산에서 가공, 유통 및 관련서비스업을 전체적으로 결합한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의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가를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가구가 아니라 영농법인과 회사법인, 나아가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가게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체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농업은 농업관련산업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가는 농기업으로, 그리고 농업인은 전문경영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의 정책방향은 정책대상을 그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벤처농기업의 유형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표 2-4>에서 규정한 개념에 따라 벤처인증기업(I)과 사업체로 등록된 농업관련산업체(II), 그리고 사업체

그림 6-1. 벤처기업, 벤처농기업 및 신지식농업인의 관계



등록을 하지 않은 벤처농업에 종사하는 농가(III)로 대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모두가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업관련산업분야에서 틈새시장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유형(I) 및 유형(II)는 사업체 등록을 한 신생 중소기업이고, 유형(III)

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농가 또는 개별사업자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농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대상으로써 유형(Ⅲ)의 벤처농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관련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지식농업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³⁷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형(Ⅲ)에 대해서는 신지식농업인 지정사업과 연계하고,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해 연구개발을 알선하고, 창업보육과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유형(Ⅱ)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보다 많은 자금과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제까지 일부 농산물가공업만을 제외한 이들의 대부분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벤처농기업이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농정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유형(Ⅱ)의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농기업’으로 인증하여 농림부가 운영하는 관련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과 같이 신지식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 등 유형(Ⅲ)의 벤처농가를 유형(Ⅱ)의 벤처농기업으로, 그리고 이를 다시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벤처기업(유형 I)으로 육성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벤

³⁷ 일부에서 신지식농업인과 벤처농업의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양자 모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실제 벤처농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알려진 장생도라지와 청매실농장이 각기 1999년에 지정한 신지식농업인일 뿐만 아니라 2002년 7월에 개최한 제1회 벤처창업경연대회 입상자중 최근혁씨(2001년) 및 김혁씨(1999년)도 신지식농업인으로 지정 받은 사람이다.

처농기업육성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벤처기업육성정책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소위 농정차원의 벤처기업육성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정책방향은 창업단계별로도 다양한 문제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책수단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같은 성격의 벤처농기업체라고 하더라도 사업계획단계에 있는 업체와 창업단계에 있는 업체, 그리고 성장·발전단계에 있는 업체가 다양한 문제가 각기 다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 하고 이를 경영능력이나 자본과 결합하여 사업화 하는 것이 바로 창업과정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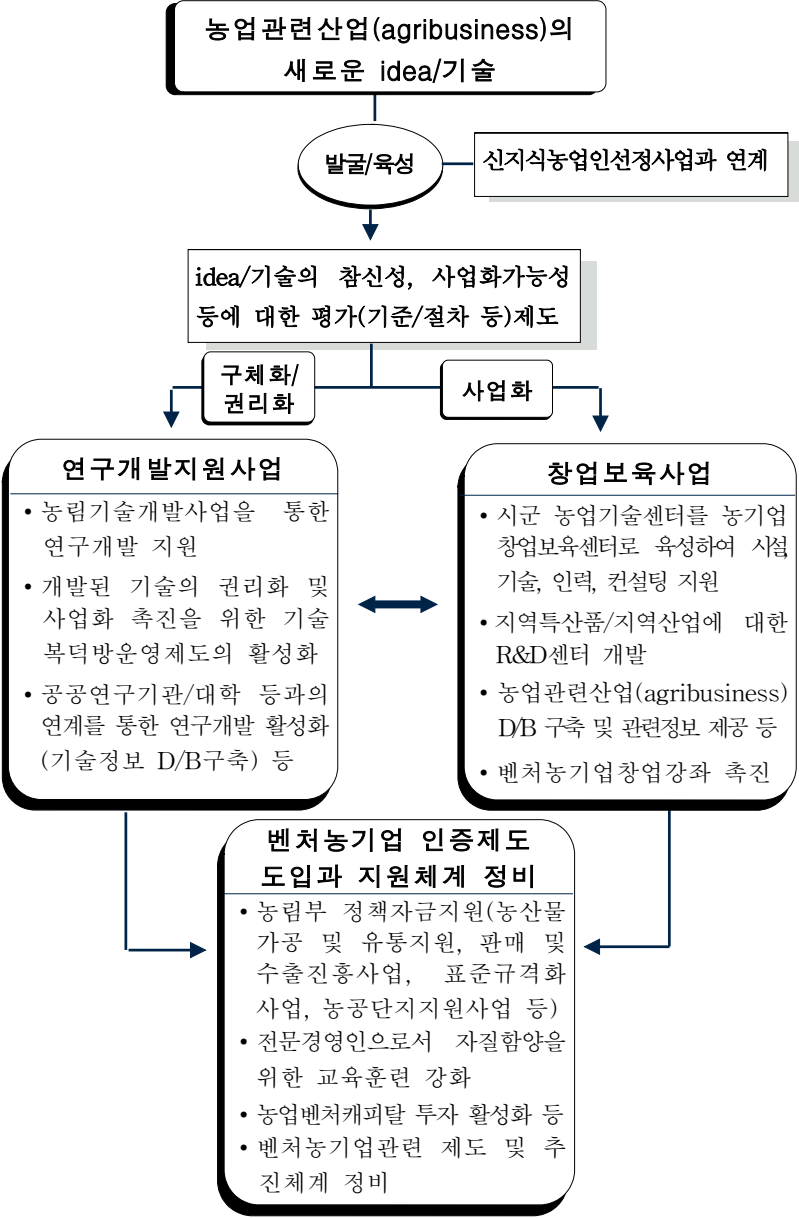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기술 및 경영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설비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등을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확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벤처농기업 활성화 방안

Ⅰ 벤처농기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연구개발사업의 촉진

벤처농기업 창업희망자가 가진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가

그림 6-2. 벤처농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틀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즉, 신지식농업인의 지정과 벤처창업동아리나 벤처농업연구회의 운영, 그리고 벤처농기업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제4장에서 살펴 본 몇 가지의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벤처농기업의 성패는 인삼, 한약재, 허브, 난, 버섯 등 고부가가치 기능성 건강식품 등 틈새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양식(2000)에 의하면 “새로운 농가소득자원 101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충하초나 형광누에 등 새롭게 태어나는 양잠업, 한방농축산물, 토종농축산물, 산나물과 건강식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향기산업, 새로운 용도개발 농축산물, 돌연변이를 이용한 신품종개발, 약재농산물, 산업곤충, 기능성농산물, 이색채소, 관상용농축산물 등을 제시하고 있다.³⁸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림기술관리센터 및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가 가진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발굴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연구결과 의권리화 및 사업화를 위해, 이를 등록하고,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³⁹ 이를 위해서는 2004년에 종료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해 다소 생소한 감은 있으나 <그림 6-3>에서 한산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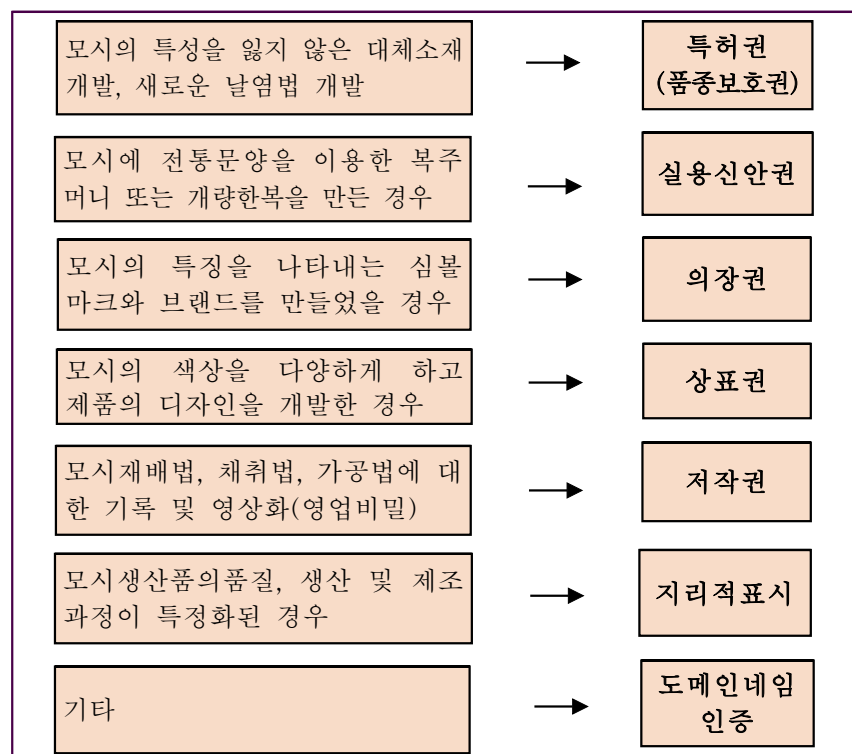
³⁸ 김양식, 틈새농업과 벤처농업, 농민신문사, 1998

³⁹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존속기간: 20년), 실용신안권(존속기간: 15년), 의장권(존속기간: 10년), 상표권(존속기간: 10년, 10년 연장가능)이 있다.

의 예를 보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 도메인네임인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권리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권리화된 기술과 아이디어, 또는 사업모형(business model)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창업을 준비중인 업체들의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자금부족을 들고 있으나 산업의 속성 상 벤처캐피털을 유치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림 6-3. 한산모시를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화 사례



자료: 황중환, 벤처농업의 지적재산 관리전략, 벤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강좌 IV, 2002. 11. 26.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농기업 창업희망자 중 등록된 권리가 있으면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관련사업의 자금지원을 알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벤처농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특정한 기술이나 아이디어, 사업모형이 있으면 이 권리를 가진 자를 ‘벤처농기업’으로 인증하고,⁴⁰ 이들에게 농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련사업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창업단계의 자금부족 문제 등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벤처기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으로써 기업가 정신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농업인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 특정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든지, 농산물의 규격화 및 표준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컴퓨터 이용능력, 외국어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경영인 스스로 생존전략을 터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경우 벤처농업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농업을 시도하는 시·군 단위의 자율적인 연구모임의 학습조직으로 ‘벤처농업연구클럽’을 결성(1999.12.2)하여 농업인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벤처농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⁴¹ 전라남도는 이에 힘입어 현

⁴⁰ 이 밖에도 벤처농기업창업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연구결과를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⁴¹ 참여대상은 현재 벤처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을 희망하는 자, 발명 특허보유자나 특허출원 중인 농업인, 지역 내 대학교수·농업관련학교·농업기술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전문요원·농업관련단체 회원 등이 될 수 있는데, 조직은 빈번한 모임과 정보교류를 위해 1일 생활권을 중

재 64개의 벤처농업(전남농업벤처연구클럽연합회, 전남벤처농업인들, 2002년 12)을 육성하고 있다.

표 6-4. 관련기관의 벤처창업교실 운영 현황

주관기관	강좌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기 타
한국 벤처 농업포럼	한국벤처 농업대학	경영, 마케팅, 사업전략, 재무, 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	벤처농업인	- 년 1~2회 심포 지엄 개최 - 수료증 발급
경북농업 기술원	경북벤처 농업대학	한국농업의 정책, 농산물 가공·기술·유통·판매, 지역특산물 홍보 등	벤처농업인	- 현장교육 : 6회 - 수료증 발급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 전문강좌	사업계획서·세무· 회계·조직관리, 경영 컨설팅, 성공사례 등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벤처 농기업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 월1회 벤천농기업 전문강좌 개최
한국기술 벤처재단	전문창업 강좌	마케팅, 사업전략, 재무, 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벤처지원정책, 코스닥 등록 절차 등	충청지역 창업 보육센터, 창업 자 및 예정자	- 년 2회 실시
기술신용 보증기금	기보벤처 창업교실	창업적성 및 아이템, 창업실무, 세무, 회계, 기술평가, 신용보증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의 분야)	- 자금 등에 대한 보증 - 기술협력알선 - 경영·기술 컨설팅

심으로 하는 시·군 단위로 10~15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역
할은 벤처농업정신 함양을 위한 벤처농업 투어, 벤처농업인 초청강연,
현장애로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지역소득개발사업 개발을 위한 개인
및 공동연구과제 수행, 개인 및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포 및
실험실 운영 등이며 2000년 현재 전라남도에서 운영비 약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농민신문사, 농가소득 높이기 펜타곤 작전, 2000.5).

또한 벤처농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나 창업희망자, 기타 농업관련사업자(농산물가공공장, 미곡종합처리장, 관광농원 등) 등을 대상으로 기술 및 경영에 대한 전문강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 전문가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전반에 필요한 부기기장, 경영분석 진단 및 컨설팅, 성공이나 실패사례 소개 및 분석 등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벤처농기업 창업강좌(agribusiness venture academy)’를 보완, 벤처농기업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관련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의 책임자나 농림기술센터의 기술을 이전 받아 벤처기업으로 창업하고자하는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하고,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치면 인증서를 수여하여 벤처농기업육성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벤처농기업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제공

그 동안 농촌진흥청과 시·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생산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전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으로 농업생산기술의 전달체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더욱 심각한 것은 시장정보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비해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민간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수출을 위해서는 목표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어떠한 업체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수출에 관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농산물수출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관련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지원수

단으로는 농업관련산업체를 제대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그동안 일부 농업인에 의해 운영되는 가공사업과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유통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관련산업이 소위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벤처농기업정책은 이들 농업관련산업체의 실태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벤처농기업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관련산업 D/B(data base) 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으로 농기업체 스스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정보수집이나 시장수요조사, 특허출원이나 기타 법률자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사례, 농업발명가협회, 신지식인 동호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화와 벤처농기업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인력 부족과 경영능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 산학연(産學研)시스템의 활성화로 벤처농기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산농산물이나 자연경관, 관광문화자원 등과 결합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역산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지역의 부존자원에 기초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관련산업계와 지방대학, 농업기술센터 등이 공동으로 연구 및 경영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것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기업창업보육사업의 확대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농기

업체의 사업현장이라 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창업희망자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 등을 손쉽게 얻기 어렵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재한 논·밭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현장에서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특산품목이나 지역산업에 대한 R&D와 정보제공, 컨설팅기능을 담당하는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로 개발하고, 지역 내 농업인과 주민들의 창업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⁴² 마찬가지로 국·공립연구소, 지방대학 등에 직접 벤처농업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벤처농기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농기업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등의 시설지원이나 농업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활성화 등 이들 업체가 창업보육 후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벤처농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및 농림부의 관련사업과 연계강화

농림부와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과 농산물가공 및 유통지원, 판매 및 수출진흥,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 등과 연계한 벤처농기업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림 6-2>와 같이 기술수준이나 아이디어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벤처농기업으로 인증 받은 농가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

⁴² 예를 들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의 복분자시험장에서는 지역특산물(복분자)의 생산량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고품질의 복분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주스, 꿀, 국수, 과립차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음.

표 6-5. 농림부의 주요 농업관련산업 지원 시책

사 업 명	주 요 사 업 내 용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을 발굴,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 -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대형농기계, 컴퓨터구입, 축사시설, 가축입식, 초지조성, 폐수처리시설 지원
농촌가공 산업 육성사업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체의 시설비지원 - 포장개선 및 홍보 등 운영비 지원
농촌특산 단지육성	농촌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농촌특산품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 - 지역의 대표성과 전통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 개발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 지정된 농원내의 과수, 가축 등 다년생 작목입식 지원 - 농원의 부대편의시설의 설치, PC구입 및 도로 등 기반조성사업지원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운영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괄처리함으로써 수확후 관리비용절감, 미질향상, 쌀유통구조 개선 - 미곡종합처리장 건축, 기계설비, 품질검사장비 등 의 구입비 지원
농산물 표준규격 화사업	물류의 표준화, 기계화로 농산물 경쟁력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 - 포장, 시설장비를 표준규격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팔레트를 이용한 출하체계와 냉장유통체계 구축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건실한 조합에 유통종합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산지유통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소비지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출하선도금, 원료구입자금,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매취사업자금 지원 - 산지유통시설의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지원
농산물수 출진흥사업	수출농업기반구축과 함께 신규수출시장개척 및 다변화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진흥여건 조성 -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 - 박람회참가비용 및 수출지원 - 우수바이어초청, 시장개척단파견, 주요농산물의 광고비용 지원

물가공 및 유통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벤처농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및 운영자금부족 문제와 판로확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는 벤처농기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벤처농기업에 관한 공공기관의 강좌를 이수하거나 농림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혹은 농업관련산업분야의 특허나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가진 자로써 벤처농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농림부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벤처농기업’으로 인증하면 유형(Ⅱ)의 벤처농기업 정책대상자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01년까지 완료된 농림기술개발과제 1,427과제 중 340과제(23.8%)가 산업체 및 농가에 이전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38.3%는 산업체 이전을 추진중이고, 785과제(55.0%)가 산업재산권을 출원중이며 이중 300과제는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개발된 연구결과물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복덕방운영제도의 활성화와 농기업창업보육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농기업체 중 우량업체는 심사과정을 거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되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가 이 분야의 기술과 사업방식(business model)을 평가할 수 있는 농기업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정책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캐피탈투자 투자증명서를 받거나, ② 연구개발투자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으로 지방중소기업청의 확인이 필요하며, ③ 벤처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③의 경우 농업부문에 대한 이해와 전문

성을 갖춘 평가기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관련산업부문의 창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벤처농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벤처농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농림부의 정책사업 중 농업관련산업 육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들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계농업인육성과 전업농육성 사업은 물론 <표 6-5>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농산물가공 및 유통지원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에 해당분야의 인증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한다면 기존의 정책 틀 속에서도 벤처농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⑥ 벤처농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법과 제도 정비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그리고 정책수단이 확립된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도 농림부가 벤처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벤처농기업육성에 대한 비전과 정책의 틀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2장에서 논의한 벤처농기업이 가진 정책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과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 및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농정체계에서 흡수해야 한다. 즉, 나비, 반딧불, 귀뚜라미 등 곤충사육은 물론 지렁이, 꿩, 타조, 오소리 등 새로운 동식물의 사육까지 농정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환경보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인공번식 품란의 수출(약 400만 달러)금지를 해제하며,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농

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나 영농법인 등이 농산물가공, 유통 및 관광서비스업 등 농업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농업으로 인정해야 한다.⁴³

또한 기능성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공전’상의 식품원료사용 범위를 조상 대대로 음용 해 온 한약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농산물이나 식품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유용성 표시에 대한 기준을 현실성 있게 설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을 다양한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지식과 함께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술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시설규제나 제조방법, 생산자의 직접유통 금지 등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인들이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민주와 민속주에 대한 대폭적인 조세감면 등의 농업관련산업 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비농업인들의 농업관련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도시자본이나 기술이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즉,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제한하거나 관광농원사업자의 자격요건을 농업인에 한정하고, 농산물가공업체나 농업법인의 대표를 농업인에 한정하는 법령을 재검토하여 벤처농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⁴⁴

마지막으로 농림부에 벤처농기업을 포함한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농업관련산업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과제이다. 그동안 이들 관련사업은 환경농업과(연구개발)를 비롯하여 농촌인력과(벤처농업육성), 식품산업과(가공사업), 채소특작과

⁴³ 이동필 등, 농업, 가축 및 농용시설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 방안, 2001. 9 참조.

⁴⁴ 이동필 외,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농림부문 규제정비 구상, 2001. 8.

(인삼, 버섯, 한약재), 축산국(축산물 가공·유통) 등에서 나누어 관리하였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벤처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가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은 그 구분이 모호하고 정책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농업생산 및 가공·유통, 농용자재 등 농업관련산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벤처농기업육성을 위한 전체적인 구상을 결여한 채 정부 부처간 벤처관련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부처 내에서도 유사한 사업과 충분한 조율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관련정책, 그리고 벤처농기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인증을 받은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을 비롯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업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얻고 있는 농가(농업계에서는 이를 ‘벤처농업’이라고 함) 등 서로 성격이 상이한 다양한 경영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인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과 정책대상을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차 자료와 설

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시작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농기업을 이해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 고수익 -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신생기업”을 뜻한다. 벤처농기업도 이와 같은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① 업종에 있어서는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농업관련산업의 전 분야를 포함한다는 점, ② 창업연도나 기업규모에 있어서 창업초기에 있는 신생(新生)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되 농가나 농업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③ 사업주체에 있어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 농업인과 기타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 농림부가 사용하는 ‘벤처농업’과 내용에 있어서 다르지 않지만 농업관련산업에 참여하는 전문경영체를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벤처농기업’이란 용어로 정리하였다.

(2) 벤처농기업에는 사업형태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증 받은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유형 I)과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중소기업(유형 II), 그리고 기업체가 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벤처농업(유형 III)의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업체의 성격이나 창업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벤처농기업이 있을 수 있으며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점 해결이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벤처농기업육성이 갖는 의미로는 ① 다양한 농외사업 및 농외 취업 기회와 창출로 농외소득을 개발하고, ② 전통적인 농가를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경영체로 육성하며, ③ 벤처농기업을 통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④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들 수 있다. 즉 벤처농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관련산업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상업적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기업형태의 창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이농(離農)과 고령화로 급격히 줄어드는 농가를 전문경영체로 대체하고 농업생산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관련산업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부가가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482호)’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입지, 기술인력, 조세, 판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정책이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유사 지원정책이 중복 추진되고, 시책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지출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벤처기업육성정책이 IT, BT산업, 신소재개발 등 첨단기술개발분야에 치중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평가기관 13개 중에 농업이나 농업관련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으며, 275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서울과 수도권, 기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농기업 분야의 창업희망자가 기술경영지도나 창업 관련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5) 농업부문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부는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1998)과 농업투자전문조합결성(2001) 등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농림부는 유형 (I)에 맞추어 벤처농기업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02년 초부터는 기존의 정책대상에 유형 (II) 및 유형 (III)을 추가하여 ① 벤처농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원, ② 농업벤처

투자박람회 개최, ③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가 이제까지 농업생산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주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농업관련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정책에 포함하였다는 사실은 높이 살 만하지만 자칫하면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목표나, 정책대상, 그리고 정책수단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6) 2002년 6월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10,182개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수산업 및 광업분야의 벤처기업은 27개(0.2%)에 불과하다. 농업의 범위를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관련산업분야로 확대할 경우 304개(3.0%) 업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농업관련산업분야가 벤처기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벤처농기업체의 업종은 식품가공(39.8%), 농기계 및 농자재(16.8%), 환경 및 신소재(16.8%), 생명공학(16.4%)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시기별로는 1990년 이전과 1990~1997년 기간의 창업이 각기 4.9% 및 20.1%인데 비해 1998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붐에 힘입어 창업한 업체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방법별로는 기술평가기업(50.7%), 신기술개발사업(34.9%), 벤처캐피탈투자기업(10.5%), 연구개발투자기업(3.9%)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벤처기업에 비해 신기술개발기업이 많은 반면 연구개발투자기업이나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벤처기업의 경우 72.7%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데 비해 농업관련산업체는 41.8%만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소도시 21.7%, 읍·면 지역 39.5% 등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7) 벤처농기업체의 경영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형태는 주식회사가 56.4%, 개인사업체가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에 있어서는 농산물가공

및 유통업 52.4%, 농업생산 23.8%, 투입자재산업 21.4%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자본금 규모별로는 1~3억 원 36.8%, 0.5~1억 원 29.0%, 0.5억 원 미만이 13.2%이며, 종업원 수는 평균 14.9명, 그중 연구개발 인력은 2.8명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한 벤처농기업체들이 당면한 문제는 시장 및 관련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나친 규제,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판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사업계획단계》의 경우 창업관련정보와 기업경영전문지식 부족을,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 창업자금조달, 판매망 구축 등의 어려움을, 그리고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부족과 판로확대문제, 지나친 행정규제 등을 당면문제로 들고 있다.

(8) 벤처농기업이 가진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수집·발표하는 2차 자료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량적인 실태조사에 의해 벤처농기업의 성공요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한 벤처농기업체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성공요인과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공요인으로 ①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 ②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신상품의 개발, ③ 제품의 가격, 생산방식 및 이미지 등의 차별화, ④ 회원제도입이나 네트워크 구축, 고객관계관리(CRM: consumer relation management) 활동,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등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⑤ 대형쇼핑몰과 연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판매전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애로사항으로는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의 어려움, 창업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한, 자금과 판로부족, 창업보육기회의 한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만 농업관련산업분야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어렵다는 점을 당면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9) 벤처농기업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농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농정차원의 정책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부문은 자본규모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산재한 농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률이 높은 반면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벤처농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업의 질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과 정책대상, 정책수단을 정비하여 농정차원에서 벤처농기업을 육성하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형(Ⅰ)에 대해서는 신지식농업인 지정,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한 연구개발, 창업보육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유형(Ⅱ)에 대해서는 벤처농기업체로 인증하여 농정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부담이 큰 신규창업업체 등 벤처농기업은 창업단계별로 당면한 문제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책수단이 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기술 및 경영능력 훈련을 하고,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설비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며,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확보 및 시장정보제공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대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방안으로는 ① 아이디어의 발굴과 구체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② 사업자를 벤처기업가 정신을 갖춘 전문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③ 창업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④ 농촌지역의 특징을 살린 창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창업보육사업의 확대, ⑤ 벤처농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⑥ 자금과 판로부족 등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및 기존의 농정차원의 유사사업과 연계성 강화, 그리고 ⑦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농업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관련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한 우리 농업에 있어서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농업관련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분명 새로운 희망이자 도전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을 전문경영체 형태의 지식산업으로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 벤처농기업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벤처농기업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벤처농기업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초기연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탄식을 하는 이 때 다양한 벤처농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과연 무엇이 이들을 성공에 이르게 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미래 우리농업과 농촌의 존립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부록 I

농림부의 벤처농업 유사사업 지원요건

1.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자율)

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

구 분	내 용
근거법	○ 농업·농촌기본법 제33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
목적	○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원료농산물의 대량구입처 확보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시설비(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주류제조면허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일반업체 ○ 운영비(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 농림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은 업체
자격 조건	○ 가공공장 시설부지 확보 :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 ○ 담보물 확보 :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 의견서 첨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저 1억원 이상 출자된 법인
지원 내용	○ 융자조건 - 시설비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주류면허추천·명인·신지식인 지정 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0%, (일반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5% - 운영비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주류면허추천·명인·신지식인 지정 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0%, (일반업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5%
사업 주관 기관	○ 시설비 : 시·도지사 ○ 운영비 : 시장·군수

나. 농촌특산단지 육성

구 분	내 용
근거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목적	○ 농촌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농촌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지원 대상	○ 특산단지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비농업인 (단, 비농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업인 참여)
자격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 용자 -시설비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 -운영비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연리 5%(단, 비농업인 : 5.5%)
사업 주관 기관	○ 시장·군수

2. 농공단지 육성사업

구 분	내 용
근거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
목적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공영개발 농공단지 및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 지정대상지역: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촌”지역의 시·읍 및 시·읍과 연결한 면지역으로 함 ○ 지정제외지역 : 경기도, 광역시,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계 속)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 등) 보조 및 융자(년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지원
사업 주관 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 농 림 부 장 관 : 농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장 관 :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그 관리

3. 농촌관광휴양자원(관광농원) 개발사업

구 분	내 용
근거법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및 제67조
목적	○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 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도모
지원 대상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산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법인, 작목반, 농업인 - 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자기 소유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로서 3호이상 공동참여 -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설립후 1년이상 경과 및 출자규모가 3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지정된 농원내의 과수·가축등 다년생 작목입식 - 농원의 부대·편의시설 설치, PC구입 및 도로등 기반조성사업 ○ 융자조건 : 연리 5.5%, 5년거치 5년균분상환
사 업 주 관기관	○ 시장·군수

4.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자율)

구 분	내 용
근거법	○ 농업·농촌기본법 제 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목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지원 대상	○ 신규후계농업인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 40세미만인 자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병역필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면제자, 여성 - 35세미만인 자중 ① 농업계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②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③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 지원(융자:자부담금중 60%(사업비의 30%)이내인 자금)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 영농 등)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계 속)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높은 30천원, 낮은 35천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농지는 지원불가.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용자조건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용자기간: 국고용자 10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 - 금리: 신규후계농업인자금 연리 5.0%,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연리 4.0%
사업주관 기관	○ 시장, 군수

5.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율)

구 분	내 용
근거법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목적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괄처리함으로써 수확후 관리 비용절감·미질향상 및 쌀유통구조 개선
지원 대상	○ 신규 미곡종합처리장(RPC)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의 생산자단체 및 양곡도정업체 ○ 위성 건조·저장시설(위성시설) ○ 건조·저장시설 증설(증설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계 속)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 창고개조시설(창고개조)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 - 원료수집경합이 없는 지역에서 창고를 개조하고자 하는자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미곡종합처리장 건축, 건조·저장기계설비, 품질검사장비 등 부대장비(부지구입비 및 가공(도정 등)기계설비 제외) - 벼(보리포함) 건조·저장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 양곡창고를 개조하여 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계·부대장비, 시설개선 및 개조비 ○ 용자조건 : 연리5%, 3년거치후 7년상환
사업주 관 기관	○ 시장·군수

6. 농산물 표준규격화 사업(자율): 농산물 물류표준화

구 분	내 용
근거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7조(표준장비 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목적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
지원 대상	○ 생산자조직 : 농업농촌기본법제4조1항·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협유통(주), 정부지원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 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표준출하규격’ 및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ULS에 맞도록 정비 -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와 냉장유통체계구축 ○ 용자조건 : 연 5%, 3년거치 7년상환
사업주 관 기관	○ 시, 도

7.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율):산지유통전문조직

구 분	내 용
근거법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다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목적	○ 협동조합을 비롯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건실한 조합(영농조합법인 포함)에 중기·저리의 유통종합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으로 소비지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지원 대상	○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50억원 이상이거나 향후 3년 이내 1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려는 계획을 갖춘 조합에 신청자격 부여 - 최근 3년간 연속 적자조합과 2000, 2001년 협동조합유통활성화 자금 지원 조합 중 사업포기 조합은 제외 - 향후 3년 이내 1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 : 3년간 평균실적 또는 3년째의 실적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공동계산을 위한 출하선도금, 공동규격출하를 위한 출하선도금 - 산지유통센터(또는 산지공판장·가공공장) 원료구입 자금 -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채소수급안정사업 품목제외) - 매취사업자금 -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 - 직거래 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 기타 일반출하선도금 등 ○ 융자조건 : 융자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지원금리 3.0%
사업 주관 기관	○ 농협중앙회

8.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구 분	내 용
근거법	○ 농업·농촌기본법 제 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목적	○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농업기반 구축과 함께 신규 수출시장개척 및 다변화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진흥 여건 조성 ○ 농산물 수출업체의 대외수출경쟁력 제고 및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 기능 강화
지원 대상	○ 국제농업박람회 - 농산물 및 가공식품, 농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대형유통업체직거래체제구축 - 우리농산물의 주수출국 및 수출가능지역의 우수바이어 또는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 우수 농산물 수출업체, 단체 등 수출농업인 - 해외유력시장의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한국농산물의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수출업체 및 한국 농산식품을 수입하여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현지 유통업체 ○ 수출홍보사업 ○ 수출활성화사업 ○ 해외시장정보조사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박람회 참가비용 및 수출지원(단, 참가업체 전시물품 통관, 운송비용 등은 참가업체 부담) - 우수바이어 초청: 국내체류비, 왕복항공료, 구매상담회 개최비용 등 지원수출홍보사업 - 시장개척단 파견: 참가업체 항공료, 상담장 임차비, 상품홍보 등 - 김치, 신선농산물, 화훼 등 주요 수출품목 위주로 우리 농산물의 주 수출국에 광고 실시 - 매장임차비, 행사장 사용료, 홍보비, 현지 운송비 등 지원 ○ 융자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지원금리 3.0%
사업 주관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9. 축산물 품질향상(공공): 육가공업체 시설지원

구 분	내 용
근거법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정책의 강구)
목적	○ 육가공업체에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 돈육생산 ○ 주요 수입국들의 원산지표시 및 품질강화 대비 국내산 돈육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지원 대상	○ 고품질 및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시설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자 또는 기존업체중 시설증축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자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물 신축 및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생산장비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사업 주관 기관	○ 시, 도지사

부록 II

벤처농업 사례 업체 내역

구 분		사 례 업 체	비 고
각종 심포지엄 및 전문강좌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마음밭 농원(이철학;그린투어리즘) 보성삼배랑(이찬식;삼배가공) 원평허브농원(이종노;허브생산 및 전자상거래) 참다래유통사업단(정운천;유통) 진주상황버섯(최용주;버섯생산)	창업보육센터 전문강좌 (2002.8~ 2002.11)
	한국농업 전문학교	e사이버팜(홍승욱;사이버그린투어리즘) 풍년농산(나준순;쌀가공) 농부가(길덕환;농산물 전자상거래)	창업보육센터 심포지엄 (2002.7.16)
	벤처농업 포럼	청매실농원(홍쌍리;매실가공) 본정(이종태;인삼초쥔릿가공) 오키드바이오텍(나애실;호접란종묘생산·유통) 파낙스골드(정순태;황칠나무 가공)	심포지엄 (2000.9.20)
		고려키토산(주은형;키토산비료 생산) 일조생물산업(이성구;상황버섯생산·유통)	
		청매실농원, 본정인삼(전준일;매실·인삼가공) 장생도라지(이영춘;도라지 생산·가공) 파낙스골드(정순태;황칠나무 가공) 머시토피아(이현욱;버섯생산·유통)	심포지엄 (2000.12.12)
	농수축산 신문	청매실농원(홍쌍리;매실가공) 본정(이종태;인삼초쥔릿가공) 포천버섯개발(주)(정덕균;버섯생산·가공유통) (주)한국농산물유통(사유지;유통) (주)화인민창(정태문;저온저장고·단말기 제조) (주)21세기축산물신유통(유통) 문수농산(김문수;부산물가공) 장생도라지(이영춘;도라지 생산·가공) 오키드 코리아(나애실;호접란종묘생산·유통) 우리생약(한약재 유통)	벤처농업 설명회 (2000.4.24)

구 분		사 례 업 체	비 고
각종 심포지 엄 및 전문강 좌	농수축산 신문, 경남농업 기술원	장생도라지(이영춘;도라지 생산·가공) 초원식품(서정득;김치유통) (주)화인민창(정태문;저온저장고·단말기 제조) 오키드바이오텍(나애실;호접란종묘생산·유통) 하이난벤처햄(돈육가공) (주)장춘(김종인;유기질비료 생산)	벤처농업 설명회 (2000.5.29)
언론 매체	매일경제	e사이버팜(홍승욱;사이버그린투어리즘) 풍년농산(나준순;쌀가공) 본정(이종태;인삼초컬릿가공) 장생도라지(이영춘;도라지 생산·가공) 가야곡왕주(이용훈;주류제조) 꽃샘종합식품(이상갑;양봉가공·유통) (주)대관령(이재달;버섯재배·유통) 월출농원(조호현;친환경농법 배생산) 통영관상조류농원(설재홍;조류임대·관리) 한우리영농조합(이은옥;버섯재배·유통) 정우농장(서정철;돈육생산·유통) 세림현미(고종환;현미식용유생산) e고향(농림수산정보센터;전자상거래) 진주상항버섯(최용인;버섯재배·유통) 학사농장(강용;엽채류생산·유통) 농부가(길덕환;농산물 전자상거래) 토고미마을(한상열;브랜드쌀 생산·유통) 송광설중매(서명선;매실생산) 유기농원(고효숙;친환경 단감생산·가공) 나주배술-봉황농협(심재승;배가공·주류제조) 버드내친환경(한상민;엽채류생산·유통) 김영표버섯농가(김영표;버섯생산·유통)	영농성공 사례
선행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 원	(주)하림(김홍국;양계,축산물가공·유통) (주)도드람(돈육가공·유통, 사료생산) 쥐눈이 콩장유(발효식품생산 및 지역부산물 상품화)	‘농업부문 벤처기업 육성방향’, 김경덕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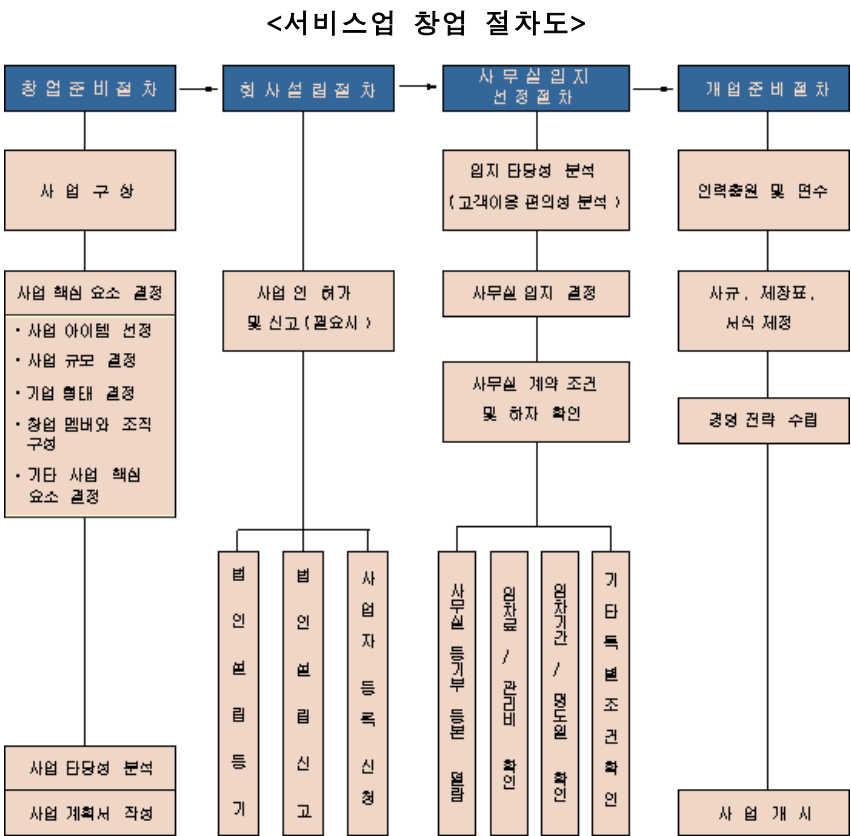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업 체	비 고
선행 연구	시와 사람 ,이경수 외 일쌍산업(조규섭;벌씨밭아기 제조·유통) 고려전통식품(기순도;장류생산·유통) 진흥농장(이용현;MS농법 생산) 정원산업(장철호;맥류가공) 토속향기촌(배권세;허브 생산·유통) 강산농원(김영민;건강식품 생산·유통) 한백꽃뜨락(나문심;야생화생산·유통) 봇재다원(임홍준;차 생산·유통) 생자연(오희숙;부각 생산·유통) 보성삼배랑(이찬식;삼배 생산·유통) 현대영농조합법인(노인옥;양과음료생산) 새벽농원(백성준;친환경 생산) 검디양공예(신행님;숯 가공) (주)황기모아(류숙;자연황토염색) 허브나라(정인;허브 생산·유통) 옥당홍화씨(정기용;홍화씨 가공) 연정농원(정연균;청정농산물 생산) 세지농수산영농조합법인(김원자;토하젓 생산) 물들이 마을(허정희;천연염색) 보광어성초영농조합법인(서두석; 어성초가공음료 생산) 까치마을(이연호;동충하초 가공) 갯끈동부(조동영;갯끈동부 생산) 새터농장(이정옥;친환경 농업) 추성고을(양대수;주류제조) 청매실농원(홍쌍리;매실가공) 백양영농조합법인(차후덕;술잎가공) (주)함초(박동인;함초가공)	「벤처, 벤 처농업인」

부록 III

벤처 창업절차 및 벤처기업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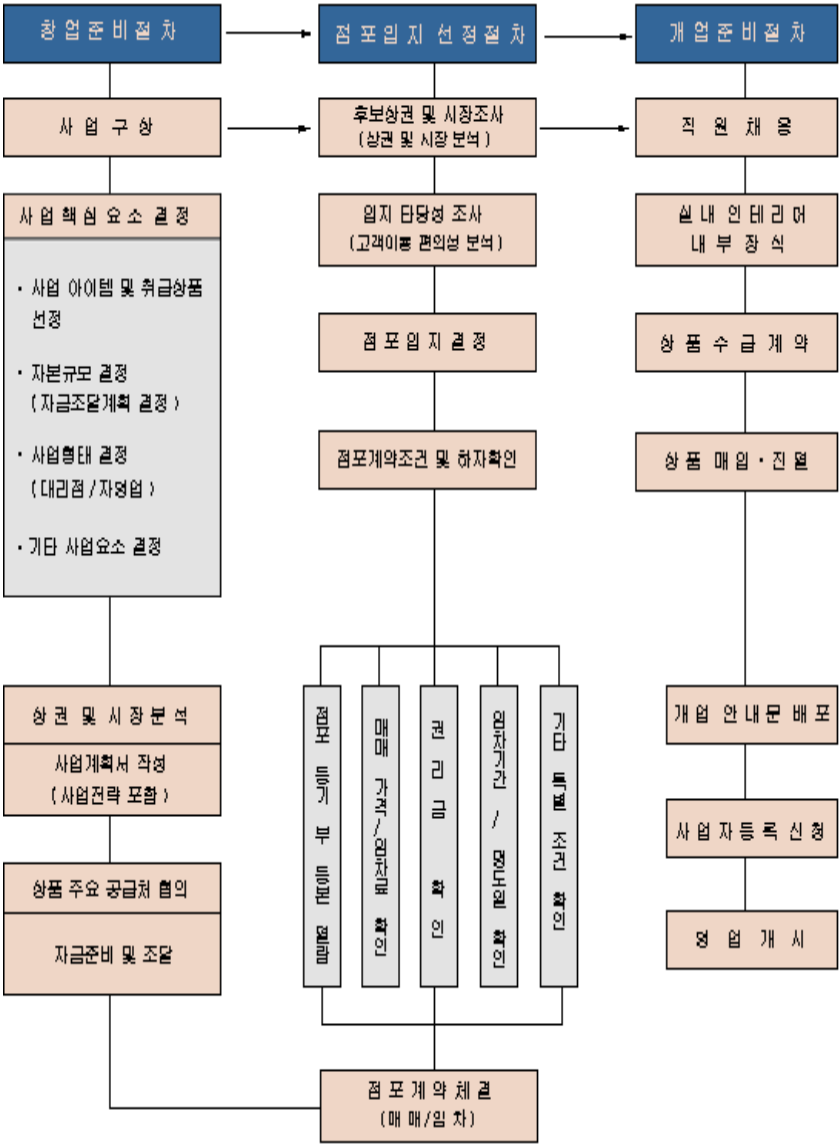
1. 벤처 창업절차

■ 업종별 창업절차



任德祥 任德祥 任德祥 任德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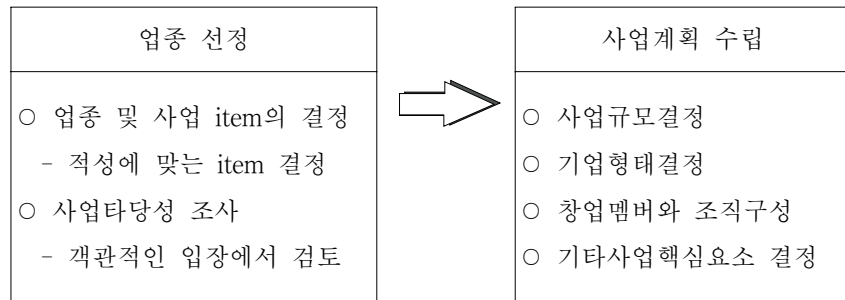
<도·소매업 창업 절차도>



■ 창업절차 5단계

1단계: 업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규모, 기업형태,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장 설립이 필요한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규모 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관계법령에 맞추어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는 창업자가 공장설립 시 많은 애로를 겪는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처, 시·군·구청 또는 중소기업 담당 회사에 직접 방문, 전화 또는 민원문서를 통하여 상담하면 된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내용

- ① 당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종명·분류번호
- ②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규모 : 공장건축면적 및 공장용지면적
- ③ 제조시설 중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
- ④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⑤ 기술도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⑥ 세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⑦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⑧ 첨단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⑨ 개별법상의 사업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

2단계: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은 국가기간 산업 육성분야, 지방공단은 지역개발분야,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개발분야 등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자유입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자유입지일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군청의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지적공부’ 또는 해당 시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장단점 비교 >

구 분	자 유 입 지	계 획 입 지
장 점	○ 적시, 적소 입지선정 가능 ○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 공장설립 절차 간소 ○ 기반시설 공유 및 집적경제 효과 ○ 공장설립시 소요기간 단기
단 점	○ 입지 및 개발절차 복잡 ○ 용도전용의 애로 ○ 주민과의 마찰 가능(장기간 소요)	○ 적시·적소 선택 불가능 ○ 높은 분양가

나. 공장설립 승인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 입지 인 공단 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에서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 하고자 할 때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유 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은 ‘공업 배치법’ 상 공장 설립 승인과 ‘창업 지원법’ 상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이 있는데, 창업 사업 계획을 통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절차(30,000㎡이상)까지도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때의 공장 건축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 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 시설의 건축 면적만을 의미한다.

☞ 공장설립승인 필요 유무

- ① 계획입지(공단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필요 없음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계획입지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도 필요 없음)
- ② 자유입지(‘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 공장설치 허용지역)에서는 공장설립승인 필요
 - 공장설립승인절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절차{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절차 {창업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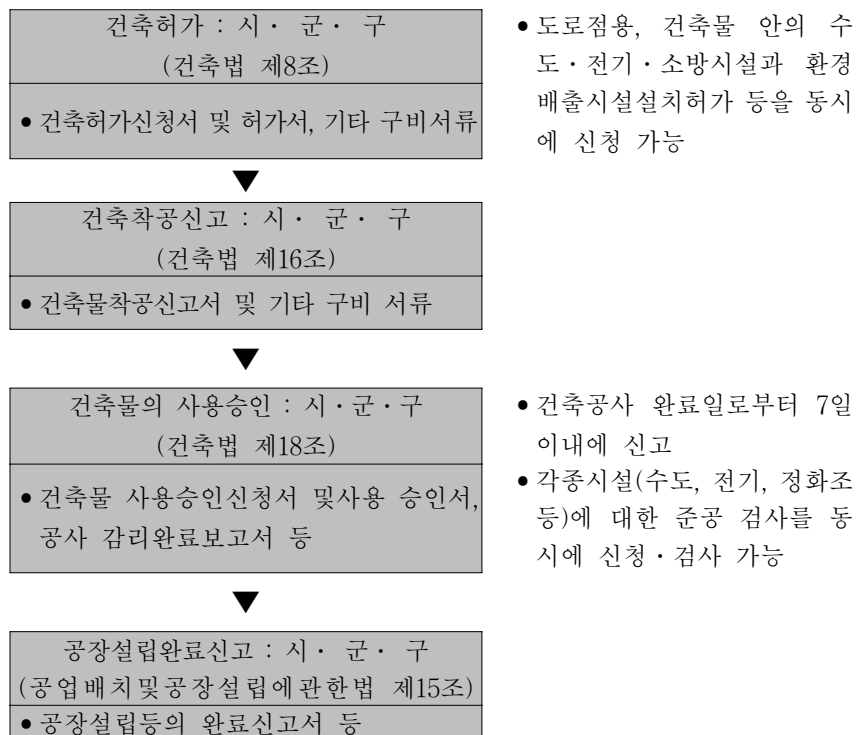
<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절차 >

구 분	자 유 입 지	계 획 입 지
1. 부지 선정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 지역	-
2. 입지검토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유무 파악 •공장입지 파악(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29개 법률 검토)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 문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지계약 •부동산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	-
4.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사항검토(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건물배치도, 구적도 작성 •지형도 준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법인에 한함)
5.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 지역경제과 1차 검토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30일 소요	-
6.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승인(시·군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농지과, 산림과, 건축과, 면사무소)	-
7. 대체농지, 입지조성비 및 각종 부담금납부	•승인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조성비, 각종 국유지점용료 등 납부	-
8. 공장건축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공장 건축 완료보고	-

4단계: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위한 개발 행위 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조성을 완료한 후, 각 개별 법에서 정한 준공 검사 등 개발 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장건축 단계도 >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 허가 시 한꺼번에 모든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신고 및 최종 건축 완료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 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검사가 가능하다. 공장 건축물이 완료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 등록증을 교부한다. 또한, 환경 배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창업의 절차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

○ 소기업의 개념

- 업종: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에서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산업설비 청소업, 패션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영화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 면적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
 - * 건축면적은 수도권은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이나 수도권외는 제조 시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 상시종업원 수 : 50인 이하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30인 이하)

○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증으로 봄

5단계: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절 차	구 비 서 류	법 적 근 거
부동산등기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 기소)	○신청서 ○등기원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대리인 신청시 권한 증빙서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부동산등기법제40조
취업규칙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근로기준법 제96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신고서 ○건물평면도 ○기계, 설비배치도면 ○설비의 표시도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 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시·도)	○신고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관계신고 (지방노동청(사무소))	○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조

※ 구체적인 내용은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참조

2. 벤처기업 확인방법

■ 벤처확인절차 안내

<중소기업청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 벤처넷(<http://venture.smba.go.kr>)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혁신능력평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혁신능력 자가진단 후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요건은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자사의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혁신능력 자가진단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지실사 및 유형별 요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업은 현지실사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유형별로 증빙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유형별 확인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 유형별 확인요건

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제출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 벤처캐피탈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 등이 증명한 투자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확인요건

창업 후 7년 이내에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총액이

-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
(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나. 연구개발 투자기업

▷ 제출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본 1부

▷ 확인요건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율(별표 2호) 이상인 기업(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

다. 신기술 개발기업

▷ 제출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 신기술관련 서류
 - 특허/실용신안권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내) 또는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 (별지 제 5호 서식)
 - 신기술 사업에 의한 경우 : 개별 신기술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 (별지 제8호 서식)
 - 이전기술을 사업화한 경우 :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등이 증명한 서류 (별지 제8-1호 서식)

▷ 확인요건

특허/실용신안권, 신기술개발사업 및 이전받은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수출액의 경우 25%)이상인 기업(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 총매출액 기준

- 산정기간이 4분기인 경우 9,600만원 이상
- 산정기간이 2분기인 경우 4,800만원 이상

라. 기술 평가기업

▷ 제출서류

- 창업준비 중인 기업
 - 벤처기업확인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원본
 - 기술사업계획서
- 기타 벤처평가 기업
 - 벤처기업확인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평가서 원본
 -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안내

혁신능력평가를 마친 후, 벤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신규신청 기업은 반드시 벤처확인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신청서를 작성하신, 신규신청 기업과 신청서를 열람, 수정하신 기존 벤처기업은 아래의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기업 정보(확인신청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벤처넷(<http://venture.smba.go.kr>) 참조

벤처기업증명서발급 및 관련기관

구 분	담 당 기 관	전 화(02)	팩 스(02)
고도기술사업	산자부자본재산업총괄과	500-2443-6	503-9471
산업기반기술	산자부산업기술개발과	500-2472	507-2155
자본재시제품	산자부자본재산업총괄과	500-2443-6	503-9471
에너지기술	산자부자원기술과	503-2795~6	504-5001
대체에너지기술	산자부자원기술과	503-9652	503-2440
첨단제품기술	산자부산업기술개발과	500-2472	507-2155
청정생산기술	산자부산업입지환경과	500-2368	503-9462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6	042-472-3289
우수신기술인증(NT)	기술표준원요소기계과	509-7271~6	507-1923
기계류품질인증(EM)	"	"	"
진기통신기술	정통부산업기술과	750-2388	750-2396
정보통신개발	"	"	"
소프트웨어개발	"	"	"
신기술인정사업(IT)	"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	"	"
영상물창작신기술	문화관광부영상진흥과	3704-9630	3704-9639
게임·음반산업	문화관광부게임음반과	3704-9640	3704-9649
관광산업	문화관광부관광개발과	3704-9720	3704-9729
신기술(제품)이용사업	과기부기술개발지원과	504-7632	503-7658
특정연구개발	과기부연구개발기획과	504-6858	504-6857
중점연구개발	과기부연구개발기획과	504-6858	504-6857
원자력연구개발	과기부원자력정책과	503-7646	507-0558
기초과학연구사업	과기부기초과학지원과	504-2361	503-2226
환경기술개발	환경부환경기술과	504-9241	507-6114
농림특정연구사업	농림부정보화담당관실	500-2630-1	507-3961
수산특정연구사업	해양부어업기술인력과	3148-6863	3148-6866
건설신기술	건교부건설관리과	504-9026-7	503-2070
건설기술연구개발	건교부기술정책과	500-4070-1	504-6127
특허권, 실용신안권	특허청발명진흥과	042-481-5172	472-3464
특허안내	발명진흥회기술사업화알선센터	1077-242	557-6989
창투사(조합) 관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6000-7980	6000-7993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185-8810	508-4578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3149-0100	3149-0340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521-9451-8	597-2945
경영기술지도사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508-0489	-

부록 IV

농산업관련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현황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업체명	대표자	사업내용	연락처	비고
(주) 크리포	박완서	활성탄·목초 제조	02-967-6462	입주 업체
(주) 미력	이상호	곡물가공	02-3295-1321	
영일팜(주)	정재환	인칼균배양기 제조	02-3295-4045	
(주)엠팜	전수식	전자상거래	02-3295-4048	
상우바이오텍(주)	주용섭	부산물비료설비 제작	02-3295-4056	
(주)세원바이오텍	김홍재	친환경비료 생산	02-3295-4068	
(주)에코젠	박현철	토지개량, 잔디, 특수토양	02-3295-4082	
(주)메주와 쉐리스트	도완녀	전통식품생산	02-3295-2710	

2. 한국농업전문학교 첨단농산업 창업보육센터

업체명	대표자	사업내용	연락처	비고
에코바이오텍(주)	구자준	무독성 산화칼슘제조	031-226-8838	입주 업체
생열귀산업화연구소	김영래	생열귀 가공식품제조	031-225-5024	
J&B	김종칠	초화종자 개발	031-225-1481	
예비창업	박동하	감 가공식품 개발	031-225-5948	
버드타운	설재홍	관상조류 프렌차이즈	031-223-3537	
대신원예	전선희	도자기활용 화훼상품개발	031-225-5854	
화성시영농조합법인	정창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031-335-6696	
예비창업	최용주	상황버섯 가공식품개발	031-221-2166	
자연과 더불어	강승찬	애완곤충 사육	031-848-7815	비 입주 업체
그린셀	강용구	지하수이용 냉난방기 개발	02-2611-7106	
예비창업	김창환	유기농 야콘재배	054-638-9602	
송광설중매	서명선	친환경 매실재배가공	053-254-8688	
(주)허비너스	이중노	허브가공	031-294-0088	
그린 3.8	최춘선	토양비료생산	031-358-8926	

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

업체명	대표자	사업내용	연락처	비고
(주)내츄로바이오텍	안용준	미생물제제 기능성신소재	031-452-0521	입주 업체
(주)생명과 기술	노상하	당·산도 센서 개발	031-292-0349	
R&L생명과학	라정찬	기능성물질 추출 개발	031-291-1843	
(주)라이스젠	김영진	특수미개발 및 배양	031-584-6353	
(주)바이로박트	박순덕	발효유산균 추출 및 활용	02-736-5077	
(주)바이오캠코리아	김상희	천연물이용 코팅, 비료개발	031-292-3323	
(주)P&F바이오텍	김근환	형질변환신물질·비료개발	031-298-3845	
(주)사이젠 하베스트	이희설	다수확성 작물개발	02-3442-6744	
(주)AP테크놀로지	신철수	재조합 단백질 생산공정	031-296-8969	
수퍼농산	정연옥	친환경비료 개발	043-844-0266	원격 업체
(주)NM시스템즈	김상민	각종농업관련센서개발	02-597-4300	
썬테크(주)	오과칠	축분재활용시스템 개발	019-9113-5970	
바이오베스트(주)	이석원	광합성세균 자가배양장치	031-901-6960	
(주)DP바이오텍	천성권	기능성식품·화장품 등	02-823-0790	
(주)AG플러스	김상기	비료 및 기능성 화장품	02-485-1948	
(주)월드페밀리푸드	조수재	두부 및 콩나물 재배장치	031-768-7693	
동화특수산업	김석천	목재손질과 대체장치 개발	031-479-2940	
(주)에피넷	한용규	병충해재해예측장치 개발	031-451-6232	

ABSTRACT

Current Situation and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Agribusiness Venture in Korea

Promotion for the development of agribusiness venture has been emphasized to enhance value added in agriculture through increasing efficiency of the agricultural system, and to vitalize farm and rural economy through increasing non-farm income of the farm household in Korea. However, policy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agribusiness venture have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used policy target, goal, and measurements to meet policy implications.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 (i) to establish concept of the agribusiness venture and identify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of agribusiness venture in Korea, (ii) to identify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agribusiness venture in terms of policy programs and business itself, (iii) to suggest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agribusiness venture. Followings are summaries of the major findings.

(1) Concept of the venture business implies that “new businesses get high returns with new technology and idea, with high risk”, in general. The concept of agribusiness venture includes all the agriculture related businesses without considering size, ownership, and type of business. This is expanded concept compared with the 'agricultural venture(venture farm)' in terms of the range and type of business. However, there are three different types of agribusiness venture; Government approved venture

businesses in agribusiness sector(Type I), agribusiness firms which are not approved as venture yet(Type II), and farm(or farmer) which are looking for high value- added products with new idea and technology(Type III).

(2) Government enacted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in 1997, and provided various incentives such as low rate capital loan, cheap business site, technical advice, tax reduction, etc. for the approved venture business. However, there are inefficiency problems because these programs are introduced by the various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se programs have obvious limitation to promote agribusiness because there are no speciality for this sector in the approval process, and limited number of business incubator in rural area.

(3)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introduced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agribusiness venture such as providing research fund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small & medium industry (1998), establishing agribusiness specialized investment cooperatives (2001), supporting for the management of agribusiness venture incubator (2002), and organizing agribusiness venture investment exhibition and business contest(2002). Although the MAF improved in terms of policy category, there are questions what is the goal and who are the target group because the MAF does not have maste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gribusiness venture.

(4) Number of agricultural venture business is 27 which is 0.2% of total government approved venture business 10,182 in 2002. If we expand the category of agriculture into agribusiness, this number goes 304, or 3.0% of the total venture business. In this case, agribusiness venture consist of food processing(39.8%), farm machinery and agricultural inputs(16.8%), environmental and new materials(16.8%), and bio-technology(16.4%), etc. Compared with other venture business, agribusiness venture has less share of R&D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venture, larger share of rural area located venture.

(5)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key factors of the success agribusiness are as follows : ① R&D investment to develop new idea and technology, ② development of high valued-added new products which meet for the consumer's preference, ③ differ-entiation in terms of price, production process, and image, etc., ④ specific business model such as membership system, net-working, consumer relation management, link with green tourism, etc., ⑤ introduction of the various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electronic commerce and direct market with large shopping mall.

While faced problems of the agribusiness venture are differed from the stage of development. For example, agribusiness in the planning stage faced lack of information and special knowledge, startup financing and marketing strategies in the starting stage, and market share in the growth stage venture business. To solve these problems with government support, most potential agribusiness venture want to get government venture approval.

(6) There are three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agribusiness venture. First,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agribusiness venture should be prepared. Since agricultural sector has quite different characteristics, special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agribusiness venture are necessary. Second, agribusiness venture program should be designed for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target group. Especially, government concerns are necessary for supporting R&D and business incubator to develop new idea of the starting business, while enforcing linkage with existing government support system through introducing venture approval system for the (Type II). Third, promotional strategies for agribusiness venture should be designed based on the stage of development. For example, providing inform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are critical in the planing stage, while capital, appropriate worker, and market are important in the opening stage.

Following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agribusiness venture are suggested ; ① R&D for the development of venture idea, ② education and training to cultivate entrepreneurship, ③ providing technology and information to help reasonable decision making, ④ establishing agribusiness incubator at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n rural area, ⑤ introducing government approval system for the agribusiness venture, ⑥ enforcing linkages with related policy programs of the MAF to solve agribusiness venture's problems such as lack of capital and market, etc. ⑦ reforming government regulation and related system to promote various business in niche market.

Researcher: Lee Dong-Phil, Kim Jong-Sun, Chun Il-Song
E-mail address: ldphil@krei.re.kr

참 고 문 헌

- 기술신용보증기금. 2002. 『2002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 김경덕 등. 1998. 『농업부문 벤처기업 육성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양식. 1997.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농정발전기획단 (미발표).
- _____. 1998. 『틈새농업과 벤처농업』. 농민신문사.
- _____. 1999.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산·연 연계』. 산업연구원.
- _____. 1999.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 _____. 2000. 11. 『디지털시대 한국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세미나.
- _____. 2000. 5. 『벤처농업설명회자료집』 Vol 2.
- _____. 2000. 9. 20. 『우리나라 벤처농업의 현황과 과제』. 벤처농업심포지움: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_____. 2000. 『농가소득 높이기 펜타곤 전략』. 농민신문사.
- _____. 2000. 『벤처백서』.
- _____. 2001. 5. “벤처산업 현황과 지원시책.” 국제산업협력재단 초청 간담회 자료.
- _____. 2001. 『2000년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결과』.
- _____. 2001a.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 _____. 2001a. 『새천년을 이끌어 갈 신지식 농업인』.
- _____. 2001b.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
- _____. 2001b.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 _____. 2001b. 『농촌지역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1c. “농업전문투자조합 운용 주요기준.”
- _____. 2001c. 『벤처비즈니스 Q&A』.
- _____. 2001d. 『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_____. 2001d. 『창업지원가이드』.
- _____. 2002b. “농림기술개발 사업현황”. 내부자료.
- _____. 2002b. “신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제도.”
- _____. 2002b. 『2002 농가경제통계』.
- _____. 2002c. “2002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공고 제2002-46).”
- _____. 2002d.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_____. 2002d.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제도개선 방안”
- _____. 2002e.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서면답변 제출자료.”
- _____. 각 연도. 『농림업주요통계』.
- 김용환 등. 2000. 『홍릉벤처밸리@코리아벤처밸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벤처밸리추진팀.
- 김이태 등. 2000. 『벤처창업경영론』. 한울출판사.
- 김재호. 2000. 9. 20. 『벤처농업의 필요성과 육성방향』. 벤처농업심포지
움: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농경과 원예사. 1997. “농업분야 벤처기업 발전전략.” 『농경과 원예』.
- 농림기술관리센터. 2002a. “농림기술분류표.”
- 농림부. 2002a. “2002년 주요업무계획.”
- 농수축산신문. 2000. 4. 『벤처농업설명회자료집』 Vol 1.
- 농협중앙회. 1999. 『관광농원안내』.
- 디지털에그로. 2001. 『농업닷컴』.
- 매일경제신문. 2001. 10. 31. ~ 현재. “벤처농업 미래가 보인다(연재).”
- 민승규. 2000.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벤처농업』. 삼성경제연구소.
- 박수철. 2000. 『벤처기업의 경영지원전략』. 한국생산성본부.
- 배광선 등. 2000.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 백낙기 등. 1999. 『중소·벤처기업 발전비전과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 백형기. 1999.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전략』. 미래와 경영.
- 벤처농업포럼. 2000. 9.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벤처농업
심포지엄자료.
- 산업자원부. 20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482호.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1. 『중소·벤처기업지원 이렇게 합니다』.
- 시그마경영전략자문(주). 2002. 『중소사업자를 위한 창업과 경영정보』
- 유승우 등. 1999. 『농촌지역특산물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이경수 등. 2002. 『벤처벤처 농업인』. 시와 사람.
- 이동필 등. 2001a. 『농업, 가축 및 농용시설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
정정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2002. 4.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경북 벤처농업특강자료집
- 이병기. 2002.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이장우 등. 1998.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산업자원부.
- 정기환. 2000. 4.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실태와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방
안.”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방안』. 토론회 자
료집.
- 주 현 등. 2001. 『지방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주 현. 2002. 『현단계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과제』.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청. 2002a. “중소기업관련통계.”
- 통계청. 2002.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 한국농업전문학교. 2002. 7. “벤처농업의 가능성과 성공조건.”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년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벤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강좌』. 자료
집(Ⅰ). (Ⅱ). (Ⅲ). (Ⅳ).

황의식. 1997. “벤처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벤처캐피탈 형성이 필요하다.” 『새농민』.

www.venturenet.net(벤처넷)

www.kova.or.kr(벤처기업협회)

www.vaf21.com(벤처농업포럼)

www.changupnet.go.kr(창업넷)

www.bizonk.or.kr(중소기업진흥공단)

www.smba.go.kr(중소기업청)

www.maf.go.kr(농림부)

연구보고 R450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2. 12.

발 행 2002.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2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ISBN 89-89225-39-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